

언론중재

2003년 가을호

2003년도 정기세미나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기고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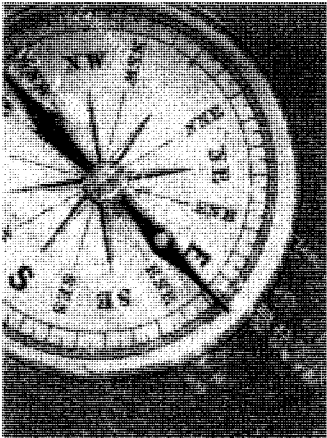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2003. 가을

차 례



계간/2003년 가을호 • 제23권 • 제3호/통권88호
 인쇄/2003년 9월 25일 • 발행/2003년 9월 30일
 등록/1981년10월14일 등록번호/바-682
 발행인/박 영 식 • 편집인/최 정
 인쇄인/이 병 식
 발행/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25
 (프레스센터빌딩15층)
 전 호:732-6031~5, 732-6011~3, 725-0050,
 730-9498, 2001-7627
 FAX:730-9420, 730-5487, 732-7585
 www.pac.or.kr
 석자.편집/태성인쇄기획
 인쇄/(주)제이디씨텍
 표지디자인/천춘수

정기세미나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5 •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 장호순
	27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 양삼승
	50 • 종합토론
기고/연사	68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 • 박용상
연구논문	87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 손동권
지방토론회	104 •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 • 권혁남
언론보도의 인권	110 • 보도와 인권 : "SBS 뉴스추적" • 김덕모
위원칼럼	118 • 글, 글 쓰는 사람 • 노향기
해외동향	120
자료	124 • 언론중재신청사례 132 •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144 •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158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언론과 법	162
위원회소식	167
언론법제정현황	169
지상중기	170 • On-Line 중재상담실

* 본지는 잡지윤리심정강령을 준수한다.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당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방송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2003년 언론중재위원회 구성내역

- 발표자 (2)
 -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양삼승 (법무법인 한우 대표 변호사)
- 사회자 (1)
 - 박영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사 (20)
 - 강무성 (서울방송 콘텐츠 운영팀 차장)
 - 김 백 (YTN 사회부장)
 - 김기훈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김명현 (경남일보 사회부 차장)
 - 김석만 (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김영일 (충청일보 사회부장)
 - 김완기 (강원민방 정경팀장)
 - 김철호 (문화방송 해설위원)
 - 김택환 (중앙일보 기획위원)
 - 김현대 (한겨레 사회부 차장)
 - 남호철 (국민일보 사회부 수석기자)
 - 송정록 (강원도민일보 사회부 차장)
- 중재위원 (18)
 - 이병선 (문화일보 사회부 차장)
 - 이은호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 이철재 (광주일보 논설위원)
 - 이준구 (한국방송 사회부 차장)
 - 정영식 (강릉문화방송 보도부장)
 - 조규승 (문화방송 법무자주권부 차장)
 - 채희창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
 - 홍정표 (중인일보 사회부 차장)
 - 박영식 (위원장)
 - 이병훈 (부위원장)
 - 송정재 (부위원장)
 - 이경일 (서울 중재위원)
 - 최광일 (서울 중재위원)
 - 노항기 (서울 중재위원)
 - 신동식 (서울 중재위원)
 - 김재덕 (서울 중재위원)
 - 주동환 (서울 중재위원)
 - 김복규 (대구 중재위원)
- 조규상 (대전 중재위원)
- 한영달 (강원 중재위원)
- 지규현 (강원 중재위원)
- 우종인 (충북 중재위원)
- 오두범 (충북 중재위원)
- 장공자 (충북 중재위원)
- 이영조 (전북 중재위원)
- 임경숙 (경남 중재위원)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2)
 - 김한근 (사무처 과장)
 - 신항진 (사무처 차기관)
- 사무처 (12)
 - 최 정 (사무총장)
 - 임병국 (기획실장)
 - 오정국 (전문위원)
 - 황정근 (조사연구팀장)
 - 정희성 (조사연구팀 차장)
 - 여중국 (중재심의팀 차장) 외 직원 6명

〈제1주제〉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1. 머리말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억대의 소송은 다반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사건 알선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기자 4명에게 실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¹⁾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소위 “양길승 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장 호 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동아일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청와대의 소송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고 사실을 통해 주장했다.²⁾ 중앙일보는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내세웠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권력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는 고도의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과도한 소송을 통해 언론에 압박을 가하고, 언론의 비판기능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

-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언론학 박사
- 한국 언론재단 연구위원
- 한국언론학회 이사, 한국언론법학회 이사
- 현 대전중재위원

1) 대전지법 2003.6.20. 2002고단4563.

2) 동아일보, 2003년 8월 15일자.

면 이 나라의 언론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항변했다.³⁾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 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피해구제 기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경우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대신 신속하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도 사전금지청구,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⁴⁾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였다.⁵⁾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면서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잦아진 것이다.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판결하면서 상충하는 두 가지 법익, 즉 언론자유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⁶⁾

대법원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권도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권리들이 서로 상충될 때 그 해결은 어떠한 권리가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⁷⁾

그러나 법원은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법 제 310조에 규정된 소위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부리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물론 언론의 비판,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3) 중앙일보, 2003년 8월 15일자.

4) 언론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혹은 자격정지의 벌을 받게 된다.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공언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09조는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다루면서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764조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참조,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2001년.

6)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파165).

7)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1990년대 부터 명예훼손 소송 건수 크게 늘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⁸⁾

2. 언론피해 관련 소송 추세

일제치하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언론본연의 기능이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기사로 인해 개인의 신용과 명예가 짓밟히고 사생활을 유린당해도 감히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언론이 권력 그 자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은 해방 이후 1980년까지 총 8건, 1981년부터 1987년까지 5건에 불과했다. 한편 5공정권은 언론기본법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적극 활용되지는 못했다. 5공 기간동안 언론중재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40-5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명예훼손 소송 건수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 32, 1997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60건으로 급증했다.⁹⁾ 언론중재위원회 제

소되는 사건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의 황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권력과 언론간의 역학관계가 바뀐 탓도 있었다. 과거와 같은 언론의 통제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권력집단 역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군사정권 시절 익숙해진 무책임한 보도관행을 버리지 못한 채, 미확인 보도를 남발, 소송을 자초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명예훼손 소송 건수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건수는 연 600건 내외로 머물고 있다.

표 1.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관련 판례 (1990.1.1~2000.12.31)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재판소	합계
1990	12	1	-	13
1991	9	1	2	11
1992	15	5	-	20
1993	15	14	-	29
1994	17	9	-	26
1995	26	3	-	29
1996	40	3	3	46
1997	24	2	1	27
1998	43	-	1	44
1999	19	-	3	32
2000	10	-	-	10
합계	239	38	10	287

출처,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관례연구』, 2001년, p.132.

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3다36622).

9) 참조, 차용범,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 한국언론학보, 2001년 봄호, pp. 387-421.

표 2.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 및 유형
(1981. 3. 31. ~ 2003. 6. 30.)

연 도	신청건수	명예 및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기 타
1981	44	23	15	6
1982	50	41	9	
1983	71	58	13	
1984	54	39	12	3
1985	59	44	15	
1986	49	25	24	
1987	47	39	8	
1988	55	36	19	
1989	121	87	34	
1990	159	136	23	
1991	220	192	28	
1992	381	313	68	
1993	423	307	114	2
1994	541	421	118	2
1995	528	443	73	12
1996	556	428	105	23
1997	490	466	17	7
1998	602	577	19	6
1999	641	619	9	13
2000	607	581	12	14
2001	659	643	9	7
2002	511	493	10	8
2003	314	294	4	16
계	7,182 (100.0%)	6,305 (87.8%)	758 (10.6%)	119 (1.7%)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3.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1) 최근의 명예훼손 소송 사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들은 주로 유명인, 공직자나 언론사들이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근년에는 검사 등 사법 공직자의 명예훼손 승소사례가 크게 늘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002년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1999년 5건, 2000년 1건, 2001년 5건 등 총 11건에 이른다”며 “소송을 제기한 검사 수는 91명으로 전체 검사의 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백13억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¹⁰⁾ (표3)

언론사들은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이 권력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하자, 한겨레마저 사설을 통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언론사들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적극 명예훼손을 제기해왔다. 2001년 들어 소위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간의 상호 비판 기사가 늘어나면서 부터였다.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2000년

10) 경향신문, 2002년 10월 1일자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언론사들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적극 명예훼손을 제기해

표 3. 검찰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례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중재위결과	출처
2002.10.25	김태정 전 검찰총장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이용호 게이트' 관련 원고가 수사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	10억	서울지법	3천만원 배상	중재불성립	2001가합8240
2002.10.10	김○○검사 외 20명	MBC 서○○	이종기 변호사 수입비리 사건과 관련 허위보도	11억	서울고법	1억원 배상	-	2001나42662
2002.02.07	서울지검 검사 10인	한겨레	검찰의 소속직원 수리함의 사건 관련 보도	22억	서울고법	원고패소	-	2000나31320
2001.10.27	검사 20명 (대검찰청)	조선일보	법무부와 서울지검 검사들 상당수가 정치권에 줄을 댄다고 보도	10억	서울지법	-	-	대한매일
2001.07.26	조영선 검사 (수원지검)	MBC 이용마	검찰수사 비판	5억	서울고법	6천만원 배상	-	2000나25745
2001.04.19	이훈규 검사 (서울지검) 외 11명	조선일보 정중현	검찰의 감청의혹 관련보도	3억	서울고법	2억4천만원 배상	-	2000나9859
2000.07.12	군법무관	경향신문	방무비리 수사관련 군 검찰관계자의 비리 의혹보도		서울지법	2천5백만원 배상	-	99가합90005

이후 언론사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사례는 17건에 달했다.¹¹⁾

한편 법원은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송사보다는 상호비판의 관행을 통해 해결하라고 언론사들에게 주문했다. 서울지법은 중앙일보사가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에서 일부의 명예훼손만을 인정하면서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언론사들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은 줄어들지 않았다.¹²⁾ (표4)

11) 사건 집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국내언론관계관감집」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검색 사이트인 <KINDS>, 그리고 언론관련 전문 주간지인 <미디어오늘>을 통해 수집한 결과이다.

12) 동아일보, 2001년 4월 12일자.

표 4. 언론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사례

2000년, 7건

일 시	원 고	피 고	보 도 내 용	배상요구액	법 원	재판결과	출 처	중재위결정
2000.12.28	동아일보	한겨레21	사주관련 보도	3억			미디어오늘	
2000.12.28	어수시청 출입기자 8명	오마이뉴스	주재기자 비판기사		여수경찰서		미디어오늘	
2000.11.23	동아일보	한겨레	언론폭발 비판기사				미디어오늘	
2000.11.23	조선일보	한겨레	언론폭발 비판기사				미디어오늘	
2000.09.21	매일경제	김대호 (동아일보)	지역감정 관련 보도				미디어오늘	
2000.08.03	한국일보	월간말 한겨레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의 불법도박 의혹보도	소취하	미디어오늘			
2000.01.06	조희준 (국민일보)	미디어오늘 언론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국세청 고발 관련	190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년, 18건

일 시	원 고	피 고	보 도 내 용	배상요구액	법 원	재판결과	출 처	중재위결정
2001.10.03	동아일보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서울지검		조선일보	
2001.09.27	동아일보 외	한겨레	지하철 1호선 건설시 노선관련	10억			조선일보	
2001.09.20	스포츠투데이	(안티사이트 운영자)이모씨	음란화의 일등공신등으로 묘사	7천 5백	서울지법	원고패소	동아일보	
2001.06.07	김영신/조현국 (KBS)	KBS노보 이용택 위원장외 3명	노보에 허위사실 적시	2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06.06	한겨레	심규철 의원 조선일보	심총해부 언론권력 사리즈 관련	30억	서울지법		대한매일	
2001.06.06	한겨레	월간조선 권영해	원고를 로동신문의 서울지국이라고 비하	20억			대한매일	
2001.05.03	조갑제 (월간조선)	월간 말 오연호 기자	원고가 안기부로부터 3억 수고비 수수의혹		서울지법	각각 200만원 지급 원고일부승소	미디어오늘	
2001.04.19	중앙일보	대한매일	홍석현 사장의 탈세 보도	10억	서울지법	원고일부승소	미디어오늘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중재위결정
2001.04.19	MBC	월간조선 박관용 의원	문화방송 사장 임명 관련	4억			국민일보	
2001.04.07	조선일보	한겨레	심층해부 언론권력 기사에서 조선일보 비판	70억	서울지법		조선일보	
2001.04.01	한겨레	조선일보	정부와 언론의 유착의혹제기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03.29	한겨레	월간조선 권영해 박일룡	출판물에 의한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03.29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비판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03.22	한겨레	박관용의원등 언론저지장악 특위 22명	정부와 언론의 유착의혹제기	50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03.17	동아일보	MBC	일방적인 비방보도	3억	서울지법		문화일보	
2001.03.17	한겨레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등 22명	정부와 언론의 유착의혹제기	50억	서울지법		문화일보	
2001.03.15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사주 상속 관련 보도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01.03	동아일보	한겨레2	사목매각 관련 보도	3억	중앙일보			중재불성립 결정

2002년, 13건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중재위결정
2002.12.24	남성우 (KBS)	한국노단	원고를 주사파라고 비방한 글 게재		대법원	위자료 천만원 지급 원고 일부승소	2000다14613	
2002.11.14	총청리뷰	청주지검장외 2명의 검사	의도적인 보복수사와 광고탄압	1억 5천	대검찰청		미디어 오늘	
2002.11.13	조선일보	한겨레	대북지원 보도 관련	1억	서울지법		한겨레	
2002.11.13	조선일보	사사저널	군 의문사 관련 보도	1억	서울지법		한겨레	
2002.10.31	조선일보	조선일보없는 아름다운세상	친일신문 유신독재의 나팔수로묘사		남대문 경찰서		미디어오늘	
2002.10.11	KBS	MBC	뉴스투데이 보도내용 관련	1억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가합474	중장도도결정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일 시	원 고	피 고	보 도 내 용	배상요구액	법 원	재판결과	출 처	중재위결정
2002.09.13	조선일보	MBC	의문사 진상위원회 발표 관련보도	3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2.08.08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비방기사 게재	4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2.07.25	MBC	월간조선	MBC를 국민에게 버림받을 뉴스로 묘사	배포금지 가처분	서울지법	원고패소	미디어오늘	중재불성립결정
2002.05.22	CBS 광주방송	박태영 전남지사 경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원고의 명의를 도용		광주지법		대한매일	
2002.05.02	(전세계일보 회장) 이상희 외	세계일보 노조 조민성 외 2명	노조의 노보와 대자보 내용관련	2억		원고패소		미디어오늘
2002.04.11	동아일보	MBC	주식매입관련	3억원	서울지법	정정보도	미디어오늘	중재불성립 결정
2002.01.03	조선일보	MBC	안티조선 운동 관련 조선일보 비판보도	30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3년, 7월 31일 기준, 9건

일 시	원 고	피 고	보 도 내 용	배상요구액	법 원	재판결과	출 처	중재위결정
2003.07.16	19개 종합일간지 사진부장단외	MBC	항응을 받고 광고성 사진 게재			소송예정	미디어오늘	
2003.06.10	조선일보	조아세 대표와 일부 회원	조선일보 절독운동				조선일보	
2003.03.21	장명국 (내일신문)	월간말	노조결성 탄압	2억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61345	중재신청 취하
2003.03.13	남해신문	동아일보	김두관 행자부장관 관련	1억	서울지법		미디어 오늘	
2003.03.06	(스포츠조선) 노조	스포츠조선	현 위원장의 성추문설	사내공고		고소예정	미디어오늘	
2003.03.05	조선일보	김주연 김종배	조선일보의 오보		서울지법	각각 징역6개월, 10월의 실형 선고	조선일보	
2003.02.14	KBS	조선일보	재해방송 미비 비판	2억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45626	중재불성립 결정
2003.01.09	우중창 (월간조선)	월간 말 오연호 기자 정치한 기자	원고를 변태성욕자인 것처럼 표현	2억	서울고법	원고패소	2001나66484	
2003.01.01	조선일보	네티즌 홍재희씨 등 5명	인터넷게시판에 조선일보 비방		남대문 경찰서		미디어오늘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있어 공인과 사인의 구별이 필요함을 인정

2)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사법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 안이라면 명예를 훼손한다하더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판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형사처벌을 하려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공인이나 공익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¹³⁾

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인과 사인의 구별이 필요함도 인정했다. “공적인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판결했다.¹⁴⁾ 또 언론보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었다.¹⁵⁾

그러나 하급법원은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¹⁶⁾ 서울지법은 검사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에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뿌리깊은 불신감을 심어 준 데 일조한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등을 강조했다.¹⁷⁾

최근에 결정된 대전지법의 명예훼손 판결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다. 2003년 6월 20일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기 변호사가 마치 대전 지역 판사 및 검사와 뒷거래를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다.¹⁸⁾ 이종기 변호사는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을 대가로 일부 대전지검 직원, 대전지역 경찰관들에게 64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보도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보도의 중심 내용, 즉 판검사가 이종기 변호사

13)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14)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2.12.24.선고 2000다14613판결.

15)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5.11.10.선고 94도1942판결, 1996.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16) 대법원 1998. 5. 8. (97다34563).

17) 서울지방법원 2000. 6. 7. (99가합88873); 서울지방법원 2000. 2. 2. (99가합77460).

18) 대전지법 2003. 6. 20. 2002고단4563.

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에 오보라고 판시했다. 허위 보도를 했으므로 보도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문화방송 기자들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하루 정도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보도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근거로 사용되던 “신속한 언론보도”가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신속한 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사의 특성상 완벽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¹⁹⁾

4.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

1) 최근의 사생활 침해 소송 사례

언론보도가 개인의 사적 비밀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 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민법 제 764조에 따라 배상의 의무도 주어진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된다. 대

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²⁰⁾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는 규명할 필요없이 공익성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즉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입증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유형을 영미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침입 (intrusion)으로 언론이 취재를 하기위해 사적 공간에 허락없이 들어가 촬영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는 공표 (public disclosure)로 개인의 사적인 사항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해를 낳는 공표 (false light)로 사실이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도용 (appropriation)하는 행위이다.²¹⁾

한국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사례가 드물다. 한편 법원은 언론자유보다는 사생활보호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주로 범죄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판례가 가장 많고,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면 혹은 음성을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

19) 서울고등법원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사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0. 8. 24. (99나11986).

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21) 황성기,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문제>, 2003년 7월 3일, 한국언론법학회: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년, pp. 105-136.

언론매체가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범죄자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것은 초상권 침해

다는 이유로 손해배상하라는 약간의 판례가 존재한다.²²⁾ 범죄피의자의 초상권을 인정한 1998년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면서 언론매체가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범죄자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침해라고 판결했다.²³⁾

대법원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²⁴⁾ 서울 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세부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생활 비밀보장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범의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사의 세부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²⁵⁾

2000년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법원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지하철 성추행범의 신원을 노출시킨 방송사

표5.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 사례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2002.12.16	권노갑	조선일보	원고의 모습을 승낙 없이 촬영 보도	30억원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2가합13985
2001.12.16	박○○	학원사 외 2개 언론사	범죄혐의 내용 보도	1억1천만원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25387
2001.05.17	모대학 음대교수	SBS	불법 과외교습 혐의로 체포장면 보도		서울지법	천만원 배상	99나66474
2000.10.11	함○○	대한매일 외 4개 언론사	0양 비디오 사건과 관련보도	4억4천만원	서울지법	3천5백만원 배상	99가합109817
2000.10.11	지○○	SBS	약속과 달리 원고의 신분 노출	5천만원	서울지법	7백만원 배상	2000가합4673
2000.07.04	김○○	KBS	원고의 승낙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복제해 배포	3천만원	서울지법	2백만원 배상	99나83698
2000.03.09	손○○	SBS	원고의 승낙 없이 전화통화 내용 방송	1억4천만원	서울고법	5백만원 배상	99나43440

22) 서울지법 1995. 9. 27. 95카합3138,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97나14240,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97나43156, 대법원 1998. 9. 4. 96다1132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2. 98가합16857,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99나19001.

23)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24)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에 대해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한 대학교수가 과외 교습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²⁶⁾ 또한 전화통화 내용을 승낙없이 녹음하고 이를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 “음성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²⁷⁾

2000년 서울지법은 소위 “O양의 비디오”에 등장한 남자가 대한매일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일부 기사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며 총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들은 “O양의 비디오”에 관한 보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또한 컴퓨터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비디오에 대한 고발보도라며 공익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²⁸⁾ 법원은 해당언론사의 일부 기사에 비록 공익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사들을 읽는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대리만족,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궁금증 고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²⁹⁾

서울지법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체포된 법원 직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도 드러나게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

했다. 법원은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그 보도내용이 어디까지나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경우에만 공익성이 있다 할 것이며,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익성이 있다 할 수 없다.”³⁰⁾

최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관련 소위 “몰래 카메라” 화면 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몰래 카메라” 즉 취재대상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개인을 촬영해 대중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판결은 많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비교적 “몰래 카메라”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³¹⁾ 1997년 서울지방법원은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를 몰래 촬영해 방송한 보도와 관련된 판결에서,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밀한 촬영자체가 사생활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

26) 서울지방법원 2000.10.11. 99가합109817; 세계일보 2001년 1월 6일자.

27) 서울고등법원 2000. 3. 9. 99나43440

28) 서울지법 2000.10.11.(99가합109817)

29)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99가합109817)

30) 서울지법 2000.10.11. (200가합4673)

31) 서울지법 1997.9.3. 96가합82966.

법원은 은밀하게 촬영된 화면이라도
공익성이 입증되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을 밝혔다.³²⁾

법원은 은밀하게 촬영한 화면이라도 공익성이 입증되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전 국회의원 권노갑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02년 3월 6일자에 권노갑 씨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함께, 그가 측근들과 자택 거실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권노갑 씨는 조선일보가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그 측근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³³⁾

2)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자유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은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적은 편이고, 언론자유와 논쟁을 크게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회질서 혹은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완벽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그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의 소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을 수색할 수도 있다. 또 공직자의 경우 그들의 공직 수행여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그래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법적인 경계선을 긋는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첫째, 공개된 내용이 사적 영역의 것인지, 둘째, 개인의 동의 하에 사적 영역의 공개가 이루어졌는지, 셋째,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구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에서, 신속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자기도 모르게 넘나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사생활의 비밀 공표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원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뉴스 가치가 있는(newsworthy)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거듭 판결해왔다. 공익성 여부를 아예 묻지 않는 것이다. 뉴스

32)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몰래 카메라의 사용에 대해 위법성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정정보도를 기각했다.

33) 서울지방법원 2002년 12. 6. (2002가합13985)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공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³⁴⁾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판결은 공공성을 위법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언론의 자유보다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적 행위나 공인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역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5. 사전금지 청구

1) 사전방영금지 및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사례

언론피해 구제 수단으로 1990년대 후반들어 자주 사용된 것이 방영금지 혹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사전금지청구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 714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박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절차에 따라 방영금지나 배포금지 결정을 법원이 내릴 수 있다.³⁵⁾ 비록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일단 보도가 행해지고 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인격권의 침해들 사후에 원상회복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법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 방영금지나 배포 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행위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³⁶⁾ 대법원 역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³⁷⁾

사전금지 청구는 인쇄매체보다는 방송매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도 사전판매배포 금지 신청이 제기었다. 1996년 5월 한국광고주협회는 자신들이 실시한 "인쇄매체 수용자조사"에 대한 <미디어 오늘>의 보도를 막기 위해 "신문기사 인쇄 배포 금지 등 가처분 명령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이를 공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신문은 비록 시사보도의 목적일지라도 저작물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며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³⁸⁾ 1998년 11월 서울지법은 최장집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월간조선 11월호 발행-관

34)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Vision Press, 2001, pp. 255-274.

35)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생김」,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년, pp. 219-242.

36) 헌법재판소 2001.8.30. 2000헌바36.

37) 대법원 1996.4.12. 93다40614, 40621.

38) 미디어 오늘, 1996년 5월 22일자.

사전금지 청구는 인쇄매체보다는 방송매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표6.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사례

판 결 / 결 정 일	방송일 (예정)	신 청 인	대 상	프 로 그 램	구체적 아이템
서울지법남부 1994.3.18. 94카합90	항 후	홍승연 (방송작가)	SBS	TV 드라마	"일과 사랑"
서울지법남부 1995.10.24. 95카합3860	항 후	김광휘 (방송작가)	MBC	TV 드라마	"제4공화국"
서울지법남부 1997.8.27. 97카합4485, 서울고법 1997.10.29. 97라169	항 후	이병호 (변호사)	KBS,MBC,SBS	TV토론회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토론회개최
서울지법남부 1998.7.4. 98카합1639	1998.4.5.	김홍도 (목사)외	MBC외	시사매거진 2580	길없는목자, 금란교회김홍도목사
서울지법남부 1998.7.16.98카합3552	항 후	김홍도 (목사)외	MBC	시사매거진 2580	길없는목자 금란교회김홍도목사
서울지법남부 1998.12.1. 98카합6460	1998.12.1.	오동섭 (변호사)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MBC	PD수첩	변호사, 돈인가, 정의인가
서울지법남부 1999.3.9. 99카합640	1999.3.9.	김봉임 (교수)외	MBC	PD수첩	유전교수, 무전강사
서울지법남부 1999.3.16. 99카합451, 서울고법 1999.5.20. 99라108	1999.3.20. (2.27예정)	김영중 (국제크리스천연합 신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덧인가 MS
서울지법 1999.4.6. 98카합6479, 서울고법 1999.10.12. 99라130	항 후	신커뮤니케이션코리아 신상옥 (영화감독)	MBC	북한영화	사랑사랑내사랑 불가사리
서울지법남부 1999.5.11.99카합1131, 서울고법 2000.4.20. 99나27783	1999.5.11.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MBC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목사
서울지법남부 1999.6.3. 99카합1455	1999.6.3.	천부교전도관후흥협회	MBC	다큐멘터리 기획프로그램(정치, 경제,사회,문화조명)	한국100년.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2000년은없다, 후세무민종말론
서울지법 1999.2.20. 98카합4070, 서울고법 1999.5.27. 99라82, 대법원 1999.8.25. 99다3397	1998.11.24	하정호 (종교가)	MBC외	PD수첩	세계정교를아십니까
서울지법남부 1999.7.15. 99카합1924	1999.7.15.	세계복음선교협회	KBS	추적60분	시한부종말론
서울지법남부 1999.8.3. 99카합1943	1999.8.10.	김수국 (사인)	MBC	PD수첩	고시에 인생(?)을 건다
서울지법남부 2000.2.11. 2000카합291	2000.2.12.	윤태식 (사업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미스터리- 누가 수지감을 죽였나
서울지법남부 2000.6.9. 2000카합1423	2000.6.11.	학교법인태양학원	MBC	시사매거진2580	어떤 사학재단
서울지법남부 2000.7.4. 2000카합1689	2000.7.4.	학교법인한홍학원	MBC	PD수첩	사립학교바로세우기
서울지법남부 2001.5.11 2001카합1099	2001.5.11.	서울강남구청	SBS	SBS 뉴스추적	환락1번지 강남 뇌물커넥션
서울지법남부 2001.7.28. 2001카합1627	2001.7.28.	김기순(아가동산대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후5년

판 결 / 결 정 일	방송일 (예정)	신 청 인	대 상	프 로 그 램	구체적 아이템
서울지법남부 2001.11.7. 2001카합1549	2001.7.15.	(주)그래미	MBC	시사매거진2580	숙취해소음료비고
서울지법남부 2001.11.9. 2001카합2445	2001.11.10.	이임출 외 (사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어느토요일밤의죽음 넘겨진살인미스터리
서울지법남부 2002.2.14. 2002카합254	2002.2.14.	대순진리회외	MBC	PD수첩	도를 찾아떠난 아내
서울지법남부 2002.3.28. 2002카합370	항 후	김수현 (작가)	MBC	TV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서울지법남부 2002.5.20. 2002카합926	2002.5.13. - 5.27.	이문욱(시장후보) 외	KBS	TV토론프로그램	서울시장후보토론회
서울지법남부 2002.5.24. 2002카합959	2002.5.24. 2002.5.27.	이문욱(시장후보) 외	SBS	TV토론프로그램	서울시장후보토론회
서울지법남부 2002.6.4. 2002카합1038	2002.6.5.	김창한(시장후보) 외	MBC	TV토론프로그램	인천시장후보토론회
서울지법남부 2003.5.10. 2003카합1156	2003.5.10.	이정재 (사랑의보급자리 이사장)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선의 그늘- 구산동 결핵환자촌 이야기

매-배포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장집 교수는 월간 조선이 자신의 논문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판매 또는 배포를 할 수 없다며 배포금지를 명령했다.³⁹⁾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금지 청구는 방송프로그램이 대상이었다. 1994년 이후부터 2003년 5월까지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의 대상 프로그램은 27건으로, 주로 문화방송 <PD수첩>, <시사매거진2580>,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싶다>등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었다. 이중 10건에서 신청인의 요청이 수용되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방영금지 되었다.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종교인, 교수, 변호사 등이었다.⁴⁰⁾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적용된 법적 기준은 장차 발생할 피해에 대한 엄격한 입증, 즉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와,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만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문화방송 <PD수첩>은 1999년 4월 만민중앙교회 담임목사가 여신도들과 성적관계를 맺어왔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으며, 신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들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만민중앙교회의 사전방영금지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리의 이단성은 의견이고 도박사실 등은 사실적 증거가 있어 무방하지만, 성추문 부분은 객관적 입증이 없고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이와 같은 사전금지는 비록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닌

39) 서울지법 1998.11.11. 98카합3441.

40) 이승진, “방영금지가처분 제도와 언론자유: 현실과 쟁점.”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자료집,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년 6월 27일.

방송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만 사전금지가 가능

이 명백한 때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서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침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⁴¹⁾

한편 서울지법은 국제크리스찬연합이라는 종교단체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방영금지를 기각시켰다. 법원은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종교지도자가 그를 추종하는 여신도들과 집단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사회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해주었다. 특히 허락없이 촬영한 장면도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다. 방송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만 사전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⁴²⁾

그러나 법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의 입증보다는 언론보도내용의 진실 입증 여부를 사전금지의 기준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1년 7월 법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대법원에까지 이르는 공판절차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가동

산의 성격에 관하여도 판단 받았고 당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아가동산의 성격 및 그 실체, 아가동산에서의 신청인의 지위가 세상에 상세히 알려졌다”며 “그 이후 공익적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사실 발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방송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방송금지 판결이유를 밝혔다.⁴³⁾ 법원은 방송내용이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개인의 침해받는 인격권보다 “훨씬 강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03년 4월 27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결핵 환자촌의 진실”편이 방영금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방송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취재 내용이 담긴 테이프 전부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 하도록 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⁴⁴⁾

사전금지청구 제도의 문제점은 2000년 2월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관련 방영금지 청구에서 잘 드러났다.⁴⁵⁾ 당시 법원은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남편 윤태식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이 방영될 경우 자신이 아내의 살인범으로 인식됨으로써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인격권

41) 서울고등법원 2000.4.20. 99나27783.

42) 서울지법 1999. 3. 16. 99카합 451.

43) 서울지법 2001.7.28. 2001카합1627.

44) 서울지법 2003.5.10. 2003카합1156.

45) 서울지법 2000.2.11. 2000카합291.

의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편집초안을 볼 때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신청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엿보여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고, “몇 가지 정황 증거만으로 신청인을 살인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남편 윤씨의 혐의 부분이 삭제된 채 방송되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검찰에 의해 신청인 윤씨는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언론인들은 사전검열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대한 검열의 주체를 “행정권”만으로 한정시킨 것은 불합리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억제는 모두 사전검열이란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법의 이름을 빌린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의 “소신과 양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위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법원의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면 언론자유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 왜곡과 축소로 직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⁴⁶⁾ 또한 사전금지 제도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일부 힘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⁴⁷⁾

그러나 언론사들도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

도 했다. 문화방송은 월간조선 2002년 8월호에 실린 “버림받은 MBC뉴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유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⁴⁸⁾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출판 등의 금지를 당하는 언론기관은 다른 구제수단이 별로 없음에 반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는 사후에 반론보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으로 그 피해를 전보할 수 있고, 더욱이 신청인 자신도 공영방송사로서 피신청인 못지 않은 여론형성능력을 갖고 있어 자신에 대한 반론을 스스로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처분 절차를 통해 “출판이나 보도 등의 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하며 또 신청인이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문화방송 측에서 그러한 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판결했다.

2) 사전금지 청구와 언론자유

사전금지 청구제도에 대한 지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가 행해진 후에 반론권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금지 청구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⁴⁹⁾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금지 청구

46) 2001년 9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47) 정길화, “방송가처분 제도의 극복을 위한 시론.”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자료집,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년 6월 27일.

48) 서울지법 2002.7.26. 2002카합2193.

49) 안상운, “방송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21세기언론연구소, <방송개혁>, 2001년 가을호, pp. 310-335.

사전금지청구제도는 법적으로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전검열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전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기준이 사후구제 절차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고 사전금지청구의 특성을 감안한 “엄격한 책임주의” 법리가 적용되기도 한다.⁵⁰⁾ 사전 금지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부분 이러한 “엄격한 책임주의” 법리가 적용되었다.⁵¹⁾ 반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방영을 금지시킨 경우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된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⁵²⁾

또한 공인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도 혼선을 보였다. 신청인의 신분이 종교지도자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두 사건에서, 한 판결은 “공인이라고 해도 일반인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사전청구를 수용한 반면,⁵³⁾ 또다른 판결은 “공적 인물의 경우 통상인보다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며 사전청구를 기각했다.⁵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1931년 Near v. Minnesota 판결에서 과거 저질, 선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향후 신문제작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검열이라고 판결했다. 예외적으로, 전사의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

나 무장봉기 선동, 음란의설물 등에는 사전억제가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71년 미국 국방부는 월남전 기밀문서를 폭로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대해 보도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사전금지를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⁵⁵⁾

사전금지 청구제도가 설사 법적으로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검열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금지 청구 수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 사회기본질서나 공공양속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공성보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곤란한 손해”의 입증책임을 금지청구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도 고려해 금지청구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6. 반론보도청구권

1) 반론보도 청구사례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장치 중의

50) 이승선 (200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 법리의 문제점 고찰: 방영금지가처분 결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2002년 통권 제16-3호, pp. 364-396.

51) 서울지법 2002.2.14. 2002카합254.

52) 서울지법 2003.5.10. 2003카합1156.

53) 서울지법 1998.7.16. 98카합3552.

54) 서울지법 1999.2.20. 98카합4070.

55) Near v. Minnesota, 283 U.S. 691(1931); United States v. New York Times, 403 U.S. 713 (1971).

하나로 반론권이 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간법과 방송법은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을 두어, 언론에서 제기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⁵⁶⁾

언론중재제도는 반론권 보장을 통해 과실이나 고의 입증을 하지 않는 대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완하는 장치이다. 현행 정간법과 방송법상 보장된 반론보도 절차는 법적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우선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언론보도의 위법성 또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등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명예훼손 소송과는 다르게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취재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 유무도 묻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언론보도가 있었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면서 반론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⁵⁷⁾ 반론권은 거대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반론보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라고 옹호했다.⁵⁸⁾ 또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이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한다고 평가했다.⁵⁹⁾

현행 정간법과 통합방송법에 포함된 반론권 보장 조항은 5공 정권의 언론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언론기본법에서 유래된다.⁶⁰⁾ 그러나 제5공화국 정권치하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물론 당시 언론이 철저히 반론권을 보장해,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사유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감히 언론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소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건수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났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꺾였다.

이러한 추세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

56) 그러나 정정보도는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7) 헌법재판소 1991. 9. 16자 결정 (89헌마165).

58) 대법원 1996. 12. 23자 판결 (95다37278).

59) 대법원 1997. 10. 28. 97다28803.

60)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p. 6-16.

반론권은 20세기 들어 여론독점과 조작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인식

이 가능하다. 우선 언론에서 반론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반론보도 신청을 할만한 사유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언론중재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론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언론은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정으로도 가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동아일보도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언론사가 제기한 47건의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자주 지적되어 왔다. 우선 반론권 자체가 피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재위원회가 법정기구가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합의를 거부했을 경우 따당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언론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중재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고 언론사들과는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다. 중재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에 설만

한 사람들 보다 언론사의 입장을 이해할 언론인 출신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⁶¹⁾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1996년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재신청인의 82.5%, 피신청인의 95.1%가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⁶²⁾

2) 반론권과 언론자유

반론권은 20세기 들어 소수의 거대 대중매체들이 언론을 독점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에서 여론독점과 조작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 들어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매체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편차가 매우 크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권은 청구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언론인들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반론권의 지나친 보장은 비록 언론에 대한 억압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반론권의 남용이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반론권 행사가 명예훼손이나 사전금지 청구 제도처럼 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 반론권

61) 김창룡,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 21.

62)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1996년, p. 51.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20년 이상 존재해온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반론보도 제도가 한국언론의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책임성을 얼마나 제고해왔는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반론권의 법적 보장 여부가 언론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혁명 이후 난립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론권과 정정보도 청구권이 생겼고, 독일의 경우는 히틀러의 대중선동정치의 폐해를 겪은 후 반론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법들이 생겼다.⁶³⁾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반론권보다 편집권의 독립이 우선이라며 반론권이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 주의 반론권 보장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반론권 보장과 같은 언론의 윤리는 바람직한 목표이긴 하지만 헌법상으로 언론윤리를 강요할 수 없고, 다른 많은 윤리적인 덕목과 마찬가지로 입법화될 수 없다고 했다.⁶⁴⁾

한국의 반론권보장제도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억 원에 이르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반론보도를 강제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설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한 많은 재정 부담없이 사전단계에 효과적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한국적 현실

에서 반론권의 법적 보장은 아직 필요한 것이다. 단 그 기준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편집권의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사자에게는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입장주장의 기회를 주며,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반론권조항은 사회적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즉 기득권 세력자들의 여론주도권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접근이 용이한 사람일 수록 반론권을 강제하는 정도는 약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기준을 공직자에게 적용하고 나중에 공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공직자나 공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쉽게 미디어에 접근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한국법원에서 공직자나 언론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이들의 반론권 행사 능력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언론사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지 여부도 보다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즉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처럼,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면 설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나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언론이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이를 취재원이 거부했다면, 보도가 나간 후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3) 참조, 박은희, “독일의 반론권 (상)” <언론중재>, 1995년 여름호, pp. 40-57; “독일의 반론권 (하)” <언론중재>, 1995년 가을호, pp. 50-59; 성낙인,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pp. 4-21.

64)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제2주제>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I. 개정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1.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 법에서 표현은 비록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옷을 빌려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론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언론법제에 새로운 시대가 개시되었다.

이후 언론중재제도는 그 출생의 과정에 의심을 받아,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나, 순수한 뜻을 가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기초를 탄탄히 다져왔다. 그러던 중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기본법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제도 및 그 근간인 반론권 제도는 살아남아 1987. 11. 28. 정간법의 일부로 흡수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10년 동안은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반론권 내지는 언론중재의 개념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는 1996. 7. 1.의 법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가장 큰 결실은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어 그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입게 되었으며,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중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직권중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였다.

이 개정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모든 조직이나 제도의 성장·진화하는 과정이 그러하듯이,

양 삼 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 서울대 법대 졸, 법학박사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법 부장판사
-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 현 서울중재위원

우리나라 언론중재의 역사도 이제 20년을 훨씬 넘어 성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이나 연구성과에 비추어 좀더 나은 제도를 위한 생각이나 바람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위원회는 2000년에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혜와 경험을 모아 가칭 “언론폐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진바 있고, 그 결론으로서 “언론폐해구제법”(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었다.

3. 그러나, 위 가안이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던 중 국회에서 2002. 2. 8. 국회의원 27인(대표발의 심재권 의원)의 발의로 정간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3. 5. 29.에는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정식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이상, 이제는 이 개정안을 현행의 정간법과 서로 비교·고찰해 봄으로써, 각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취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개선점 내지는 보완책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II. 개정안 내용의 개관(규정형식 개관)

1. 이번 정간법 개정안은, 현행 정간법의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간법의 2개의 큰 구성 요소 중,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4장) 부분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언론사의 독점금지나 편집권의 독립등)에 대하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2. 개정안의 내용은 “침해에 대한 구제”부분에 관한 한 그동안 20여 년 간의 실무경험과 학자·실무가들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아 훌륭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제2조)

개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온라인신문”에 대한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온라인신문도 적용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9호). 이로써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고,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그 외에도 정기간행물사업자(12호), 독자(17호)의 개념을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명확함을 제거하였다.

나.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 전반에 관한 규정(제25조~제27조)

종래 언론침해의 민사법적 구제방법으로서 논의되어온 3가지 방법 즉,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모두를 수용하는 총괄적인 규정을 두어, 종전의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각각의 권리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논리적·시간적 순서에 따라 종전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읽기 쉽고, 찾기 쉽게 정리하였다.

다. 중재의 주체(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28조~제30조)

중재의 주체인 언론중재위원회(제2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구성, 조직, 기능,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정간법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신문”도
정식의 언론기관으로 인정받아,
정간법의 적용대상으로 등장

종전에는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일부 법으로 정리하였으며, 중재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 것이 특징적이다.

추가적으로, 중재부(제29조) 및 사무처(제30조)에 대한 규정도 두어 체제를 통일하였다.

라. 중재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31조~제42조)

중재의 신청(제31조)으로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제32조)하고, 증거조사(제33조)를 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제43조, 제35조, 제36조)을 하며, 나아가 사건이 법원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 제기(제37조, 제38, 제39조), 심리(제40조), 집행(제41조) 및 가처분(제42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종전에 산만하게 여기저기 나누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법 이외에 규칙 등 다른 곳에서 규정된 것들도 종합·정리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다.

마. 기타에 관한 규정(제43조~제46조)

기타의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종래 1개 조문의 일부로서만 지극히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던 시정권고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제43조), 나아가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추후보도청구권(제44조)을 정리하고, 중재위원회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제45조) 및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제46조)을 두었다.

Ⅲ.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규정내용 개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초중량급에 해당되는 것은 단연 “온라인신문”도 역시 정식의 언론기관(정간물)으로서 인정받아, 정간법의 적용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가 법률에 수용되게 되었으며, 중재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2. 다음으로, 중(重)량급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위법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제25조)과 ②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제37조①) 및 ③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 한 것(제28조④)이다.

3. 다음, 중(中)량급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일반의 불법행위가 아닌 특수한 불법행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으며(제27조②), ②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 것(제38조②)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에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을 재검토하여 대체적으로 이를 늘이거나, 연장함으로써, 주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숫자가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하고(제28조②), (현행은 40인 이상 80인 이내)

② 중재위원 중 5분의 1이상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하고(제28조②), (현행은 규정이 없으나, 실무관행상 고려)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제29조③), (현행은 5분의 3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 : 시행령 제27조①)

④ 중재위원회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하고(제31조①), (현행은 안 날로부터 1월, 있는 날로부터 6월)

⑤ 중재기간에 대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제32조②), (현행은 14일 이내)

⑥ 법원에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불성립,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제38조①), (현행은 불성립·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⑦ 법원에서의 심리기간에 관하여, 제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제40조③), (현행은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에 따라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

⑧ 추후보도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무죄 등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재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44조①), (현행은 1월 이내)

⑨ 시정권고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시정권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

심을 청구하도록 하였다(제43조④), (현행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만, 앞서 본 숫자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보다더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유일하게 이와 반대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즉, 중재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제32조③)에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재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제32조④), (현행법은, 그 신청기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4.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나머지의 규정들은 일단 경량급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종래,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 중재위원회사무처리규칙, 또는 법원의 관례나 실무상의 관행에 따라 행해져오던 것들을 정리하여 규정으로 옮긴 것들이다.

IV. 개정안의 검토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아래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그 규정의 순서에 따라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적용대상에 관하여

가. 정간법 개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

정간법에 온라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방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서, 그 적용대상인 언론매체에 관하여, “정기간행물”의 개념을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이라고 규정하고(제1호), 그 후, 통신을 일반통신과 특수통신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온라인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온라인신문”의 개념을 정식으로 법전상의 용어로 격상시켜 규정하고, 이 역시 정간법의 적용대상 즉 정정·반론보도 등의 청구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정간법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을 고른다면, 단연 이 규정, 즉 “온라인신문”에도 정간법이 적용되게 된 것을 고르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규정의 신설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종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 의사소통 내지는 여론형성의 과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여론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인쇄매체 즉 “오프라인”의 역할이 감소 추세에 있게 되고, 이 역할을 전자매체 즉 “온라인”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게 된 것이다.

사회현상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간법은 그 적용대상을 인쇄매체에 국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온라인”매체의 특성 즉 “쌍방향성”을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발표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현행대로 정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는 명문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본 개정안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평가]

필자는 종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간법의 적용대상에, 명문으로 온라인 신문을 규정해 넣지 않더라도, 적어도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당연히 온라인 신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즉 정간법의 대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등록이나 기타 제제 등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임에 지나지 않고,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정간법에 다시 규정해 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간법에 온라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 방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이 권리의 성질을 정간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특수한 한 가지의 경우로 보거나, 또는 백보 양보하여 창설적인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서, 인쇄매체로부터 전자매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법 논리상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논쟁이야 여하튼간에, 이제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변화에 순응한 법률의 진보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온라인신문”에 관한 개정안의 규정으로서는 제2조 9호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의한 것이 유일한 것이자 전부이다. 필시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실무상 현재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온라인 신문의 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만큼, 상세한 규정을 두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들은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검토 과제일 것이다.

나. 정간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정간법상의 피해구제의 상대방으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정기간행물사업자”라고 바꾸어 규정하고(제25조, 제26조①, 제27조①), 제2조 제12호에서 그 용어의 정의를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간법의 전신인 언론기본법에서는 정간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95. 12. 30. 법개정 시 현행법과 같이 개정되었고 개정안은 이를 다시 손질한 것이다.

[평 가]

이 규정은 최초 언론기본법상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규정이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은 독일의 언론법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옮겨

놓았던 것이었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진화를 거듭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개정안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 규정을 보면서 23년 전 언론기본법이 생기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기능을 시작한 이래,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말의 감회를 느끼게 한다.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체계상 언론침해로 인한 민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3가지의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제방법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위 3가지 모두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청구권

개정안은 제25조에서 “정간물사업자”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규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언론침해의 경우에 특화하여 특별히 따로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규정해 준 것으로써, 그 자체로써 법률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커다란 의미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즉, 개정안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 중재위

정간법 개정안이 손해배상청구를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하였고, 나아가 개정안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를 현행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원에서의 제소를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침해원인과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간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나아가 철저한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현재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중재위원회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해온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다루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위원회가 언론 피해구제에 관한 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역시 앞서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 대상으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중재 대상으로만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평가]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나아가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를 법원에서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및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순수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하여 개정안은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되 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 발 짝 물러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용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앞서 본바와 같은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원인 즉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 즉 배상의 액수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중재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

자칫 그렇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의욕이 지나쳐서 중재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문제의 해결에까지 나쁜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반론보도청구권

개정안은 그 제26조에서 ①항부터 ⑩항에 걸쳐서,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알기 쉽게 현행법의 규정들을 종합·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현행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과, 다른 하나는 개정안의 형식은 신설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종래 판례나 학설 또는 실무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정리하여 조문화시킨 것들이 있다.

먼저 전자의 것으로는 제3항의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즉 현행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을 “3월 이내”로 확장하였다. 이는 물론 권리자가 비합리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을 제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후자의 것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반론보도의 상대방을 “정기간행물사업자”로 규정(제1항)함으로써, 우리의 언론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이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② 제2항에서는 반론보도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불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순수히 법 논리적인 주의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의 성질상,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

해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인 만큼 당연히 여기에는 언론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반론보도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 판례와 학설이 일치되어 인정한 것을 일반인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명백히 해준 것이다.

③ 제4항에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 역시, 종래의 학설이 인정하고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을 규정화 한 것이다.

④ 제7항 단서에서는,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9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이미 편집·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발행호에 게재하도록”하였다. 이 역시 종래의 통설적 견해다.

⑤ 제8항에서는, 반론보도의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반론의 취지를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기사의 크기, 위치, 형식 등이 동일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현행법 제16조 제5항은 “반론보도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인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글자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결정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행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바라는

정간법 개정안 제27조 2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문 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행정부의 검토과정에서 이와 같이 이상한 조문으로 되어 버렸으나, 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러한 규정의 잘못된 인식되어 실질적으로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⑥ 제9항에서는 반론보도의 형식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한다” 규정하여, 반론보도의 본질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적인 의미와 더불어, 언론기본법 시행초기, 반론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의 필요 없는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⑦ 개정안은 제11항에서, 반론보도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현행법의 여기저기에 산재하여 규정된 것을 한군데로 모아 정리하였고, 일부는 종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을 조문화하였다.

즉 후자의 예로서는 제1호에서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고, 제4호에서 “광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평가]

반론보도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보도가 있을을 안 날로부터 “1월”을 “3월”로 바꾼 것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견해에 따라 각자 다른 숫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될 것이고, 반대로 기간이 너무 길면, 언론기관을 너무 장시간 동안 불안정한

위치에 두는 결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언론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나, 최소한 일간지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3월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정정보도청구권

① 현행법의 규정 하에서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 것이 없고, 다만 제18조 제1항에서, 중재신청의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제27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즉 제1항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다음, 제2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 정정보도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중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정정보도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의 권리구제수단인 이상, 그 보도에 고의·과실의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의 경우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의 경우
특별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나, 또는 최소
한 고의·과실은 이를 추정해버리는 것이 일
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종식시키
기 위하여, 명문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의 규정보다는 훨씬 완화된, 특별한 종류의
권리로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해 준 것이다.

③ 다음으로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의 형식
에 관하여, 이는 "독자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
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를 반론보도의 경우와 대비하여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예로서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론보
도의 내용이 특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
고서도(이는 독일에서의 판례에 의하면, 인증
즉 "증인이 아닌 서면만의 심사에 의하더라
도"라는 의미라고 한다) "명백히" 사실에 반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개정안 제
26조 제11항 2호),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청구
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
고만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반론보
도청구권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당연한 것이지
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점으로
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평 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들은 종
전의 판례·이론을 수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막상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가장 중
요한 개정내용은 정정보도의 청구 역시 반론
보도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의 중
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데에 있다
(개정안 제37조 제1항).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어서는, 반
론보도청구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정정보도에 대하여는 "임의적", "선택적" 전치
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점 역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선택적으로만 중재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는 정정보도청구 사건까지도 필요적
중재대상으로 하는 데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
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언론사나 피해자의 입
장에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안의 이점에 대한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중재의 주체에 관하여

개정안은 중재의 주체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그리고 사무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개정안 제28조는 중재위원회에 관
한 규정을 두면서 기본적으로는 현행법과 같
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의 3가지 점
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즉,

중재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위원장의 상임화는 필수적이라고 여겨져

① 중재위원의 수를 현행 40인 이상 80인 이내에서,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늘리고(제2항 전단)

② 중재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하며(제2항 후단)

③ 중재위원장은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제4항) 한 것이다.

나. 다음 개정안 제29조는 중재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현행법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3항은 중재부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완화하여,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였다.

다. 끝으로 개정안은 제30조에서, 사무처에 관한 중전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하여 법률로 규정하였다.

[평가]

중재위원의 수를 늘린 것은 사건의 증가로 인한 중재부 증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중재위원의 일부를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현재 실무상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별 문제는 없다.

위원장의 “상임”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정치적 고려, 예산상의 문제, 유사기관과의 위상문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앞

서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정정보도까지 필요적 중재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청구도 임의적 중재대상이 된 점 등) 중재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위원장의 상임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의 시행령에의 규정은 그 형식이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중재부장에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고, 또한 5분의 3이상 출석은 그런대로 수긍할만 하나(이는 실제로 5인의 중재부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너무나도 크게 어긋난다. 즉 5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는 4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4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3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3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2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반대자로서는 어느 경우어나 1인의 여유밖에는 없는 셈이다.

4.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이는 다시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및 법원에서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가.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이 부분을 다시 중재신청(제31조), 중재절차(제32조), 증거조사(제33조), 중재결정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중재신청기간을 현행 안 날로부터 “1월”에서 “3월”로 늘려서 규정하였다. 이점에 대해

여는 앞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생략한다.

② 중재절차의 종료는 현행 14일(단, 직권중재결정의 경우는 21일)에서 21일로 늘려 규정하였다. 현재의 14일은 너무 촉박하여, 중재실무상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여 1주일 후에 2회 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실제상 1회밖에 중재기일을 열 수 없는 불합리를 감안한 것이다.

③ 중재의 당사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기한제한 없이 언제든지” 중재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상의 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기본규정인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중재절차에 필요한 규정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평가]

중재신청기간을 안 날로부터 3월로 연장한 것은 언론 현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적어도 일간 신문의 경우에는 약간 문제로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나.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소의 제기와 관련된 부분(제37조, 제38조, 제39조), 심리와 관련된 부분(제40조), 집행에 관한 부분(제41조), 가처분에 관한 부분(제42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을 보면 다음

과 같다.

① 법원에서의 제소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요적 전치요건으로 하였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적 전치요건으로 하였다(제37조 제1항).

이는 개정안의 핵심적 개정 내용중의 하나인바,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② 법원에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현행법은 불성립된 것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토록 한 것을 “30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다.

③ 소위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제18조 제7항 단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밖에 없어, 어중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 절차가 필요 없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지 첨부 등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바로 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제38조 2항).

④ 법원에서의 심리 방법에 관하여 현행법은,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 관행에 의하면, 가처분 절차에 의하더라도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함께 제소된

정간법 개정안 제44조는 추후보도청구의
청구기간을 현행 1월에서 3월로 연장

경우 전자는 본안, 후자는 가처분 절차가 적용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경우마저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 현실을 직시하여 차라리, 모두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되, 가처분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인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제40조 제2항).

그리고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소가 “병합”된 경우에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일부만의 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제40조 제3항), 인용판결의 선고 시에도,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⑤ 또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 것을 명문화하여, 종래와 이론 및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였다(제41조 제1항).

⑥ 개정안 제42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처분을 언론침해의 경우로 특화하여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평 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언론사건의 특수성에 기하여 가능한 한 절차를 신속·간이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나머지 규정들은 종래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의문이 있던 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학설의 내용을 조문화한 것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기타의 조항들에 관하여

위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망라해 보았는바, 개정안은 마지막 4개의 조문들을 시정권고, 추후보도청구권, 중재위원회 활동의 국회에의 보고 및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할당하고 있다. 즉,

가. 개정안 제43조는, 현행법 제18조 제8항에서 지극히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시정권고의 기준(제2항),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제4항), 및 재심의 절차(제5항)와 재심인용의 경우의 조치(제6항), 시정권고의 효력(제7항) 및 외부공표(제8항)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종래의 미비점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법률로 보완하였다.

나. 또한 개정안 제44조는 현행의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정리하였으나 다만 그 청구기간을 현행 1월에서 3월로 연장하였다(제1항).

다. 그리고, 개정안 제45조는, 현재에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매년 이루어져온,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출석·의견진술의 현실을 법규정에 옮겨 규정하였다.

라. 끝으로 개정안 제46조는 현행과 같은 보조금 규정을 존치시켰다.

[평 가]

위 규정들은 모두 현재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문화 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으며, 추후보도 청구기간을 3월로 늘인 것도 역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되는 것이다.

V.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점

1. 종합적 평가

지금까지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신문도 포함시키고,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킨 이번의 정간법 개정안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제는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사건에 관한 한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년 전 중재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당시 그 중재대상은 “반론권”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반론권”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빌려 사용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문자 그대로 금식지감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요즘은 논의되고 있는 “언론 피해구제센터”까지도 중재위원회에 설치되게 되면,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하여 “one stop service”까지도 제공하는 기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가. 개정안을 그 규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잘못된 점이나, 빠진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래 현행법의 규정 및 중재위원회의 실무과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한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견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폭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위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중재위원회에 종사하는 실무가들이 열성적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해주는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실무경험의 미흡적 등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전히 호전되고 실무경험이 축적된다면 내용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두 가지 보여진다.

하나는 앞서 본 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격상에 발맞추어 중재위원의 위촉을 문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으면 하는 점이고,

둘째는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리하여 이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보완하는 문제이다.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개정안의 내용에 비하여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의 형식상 개선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

가. 첫째는, 단언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자명하다.

① 현재는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그 언론매체에 따라 따로 정간법과 방송법에 나누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지금 마련되어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미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형식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체제상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면 바로 훌륭한 단일법으로 완성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③ 현행의 정간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즉 “정간물의 소유의 독점의 금지와 편집의 독립”에 관한 규정(2장 및 3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규정(4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하여는 크게 정치색이 없고 규정의 합리성만이 주로 문제되는데 반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크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후자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막상 전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후자의 개정마저도 성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따라서 양자의 분리가 필요하고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명칭의 여부를 불문하고 단일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그 명칭으로는 “언론평해구제법”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법” 등이 거론되고 있었다.

나. 둘째는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즉,

① 개정안은 제2조에서 “온라인신문”의 개념을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호에서 “정기간행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신문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7호와 제8호에서 통신의 개념을 규정한 다음에 규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어서 제10호에는 잡지의 규정으로 넘어가는 순서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은 느낌이 든다.

즉 개정안이 “온라인 신문”도 신문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그 규정의 위치도 “통신의 다음”이 아니라 “신문의 다음” 즉 제9호가 아니라 제7호로서 규정하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언론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세 가지를 손해배상청구권(제25조), 반론보도청구권(제26조), 정정보도청구권(제27조)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중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래적인 임무는 반론보도청구의 심리에 있었고, 또한 반론보도만이 필요적 중재의 대상인 만큼 이를 맨 처음에 규정하고, 이어서 정정보도청구를 규정한 다음(여기에는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할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의 대상임에 불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③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가 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라

는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 및 그 위치에 관해서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이를 제31조(중재신청)의 조항에서 규정하면서 ①항에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 3월 이내에 …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전체 체계상으로 보면, 제31조의 중재신청의 조항에는 그 신청기간을 규정함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어떠한 권리인지에 관한 규정은, “중재위원회의 임무 내지는 위상”을 선언적으로 최초로 규정하는 조항인 제28조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28조 제1항을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

구의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VI. 맺는말

이번의 정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의 학설의 발전, 실무의 경험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이면 이를 가능한 모두 수용한 아주 모범적인 개정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한 바와 같이 약간의 사소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이를 수정·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합리적인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중 제1장(총칙) 및 제4장(침해에 대한 구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및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

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일반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

- 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4.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을 말한다.
 5.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일반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특수통신"이라 함은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9. "온라인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0.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11.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내지 제10호 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2.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4.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15. "편집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서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6. "인쇄인"이라 함은 발행인이 선임한 자 또는 발행인과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7. "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자료부터 정기간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정기간행물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 ②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 ③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4 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4조(정기간행물의 공적책임) ① 정기간행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정기간행물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정기간행물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 ④ 정기간행물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정기간행물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정기간행물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 정기간행물은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③ 정기간행물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정기간행물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 ⑤ 정기간행물은 정부 또는 정당,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정기간행물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손해배상청구권) 정기간행물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보도로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재산 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정기간행물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를 불문한다.
- ③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의 보도가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반론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반론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⑥ 반론보도청구를 받은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청구인에게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반론보도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

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동일 정기간행물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⑧ 반론보도문은 원래의 보도내용을 반론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한도안에서 기사의 크기, 위치, 형식 등이 동일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⑨ 반론보도문은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⑩ 반론보도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특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반론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4. 광고(의견광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5.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개된 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경우

제27조(정정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정기간행물의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정기간행물사업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는 정기간행

물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

③ 정정보도문은 독자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정정보도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3. 광고(의견광고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개된 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경우

⑤ 제26조제3항 내지 제8항은 정정보도청구에 준용한다.

제28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정수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인사 중에서, 5분의 1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에는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정기간행물사업자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지도 받지 아니한다.
-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①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부를 두되 중재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중재부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30조(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중재신청) ① 피해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해당 정기간행물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정기간행물의 보도가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에는 제2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서에는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중재절차 계속 중에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상호간의 청구의 변경, 중재신청취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32조(중재절차 등) ① 중재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중재부가 다수인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중재는 신청접수일부부터 21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중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제1회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정기간행물사업자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 2022. 7. 1.부터 신 민사소송법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2022. 7. 1.부터 신 민사소송법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중재절차의 속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 중재기일을 정하고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 ⑤ 중재위원회는 중재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 ⑥ 변호사 자격을 지니지 아니한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⑦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33조(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분쟁의 중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중재의 대상이 된 표현물 그 밖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중재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중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중재기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법원, 법관 및 법원서기는 각각 중재

부,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본다.

제34조(중재불성립결정 등) ① 중재부가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재절차를 종결하고 중재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재부는 중재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중재부는 중재기일 전이라도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5조(중재결정) ① 중재결과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외에는,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중재결정(이하 '중재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중재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6조(합의 등의 효력) ①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거나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②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와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에 기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31조를 준용한다.

제37조(소의 제기와 병합 등) ①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손해배상의 소,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 상호간에 소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제38조(제소기간 및 당사자) ①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불성립, 각하 또는 기각결정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 상대방인 정기간행물사업자를 피고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붙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원고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중재사건기록을 지체없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소의 관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

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1심 재판은 피고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40조(법원의 심리) ①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거나 제38조제1항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는 등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심리는 민사소송법상의 본안소송 절차에 의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소명만으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소,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병합된 경우에 소송의 신속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변론을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④ 법원이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하며,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한다.

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집행) ①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693조 및 제694조의 간접강제에 의하되 집행문을 요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판결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나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제1항의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

신안법정재판
2003. 2. 22

다. 다만,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송계속중에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민사소송법 제473조 및 제474조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 상소추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처분) ① 법원은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하여 현저히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등 제반사정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방송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현물의 봉인이나 집행관에게의 점유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피해자로부터 제2항의 재판에 대한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야간과 일요일 그 밖의 공휴일에도 집행할 수 있다.

- ④ 가처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편제4장을 적용한다.

제43조(시정권고 및 불복절차) ①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기간행물사업자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시정권고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 ⑧ 중재위원회는 각 정기간행물사업자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제44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 ③ 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중재위원회활동의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합토론

사회자 · 박 영 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자 : 장호순 교수께서 첫 번째로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이라는 내용의 주제와 양삼승 변호사께서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언론피해의 현황과 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경남 중재위원) : 3년 정도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난달에 경남중재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재 신청사건을 2시간 동안 신중하게 심리했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안이 아님에도 언론사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히려 언론사로서는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이라고 평소에 느끼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중 시급한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바로 소제기가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정안의 통과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한근(국회 문광위 과장) : 국회 사무처에서 정간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안 통과전망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 소유권문제 기타 등등 정치적인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있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개정안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법상으로는 분리를 해서 피해구제관련 중심으로 법을 처리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러자면 위원회안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 개정안을 내고 위원회안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온라인 신문 부분과 피해구제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개정이므로 내용상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문광위 소위원회 위원구성은 김성호 의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고흥길 의

원, 심재권 의원 등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심재권 의원님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법안통과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 개정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개정필요성에 대해서 언론쪽에 보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정감사 이후 법안심사를 거쳐 이번 16대 회기안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자구수정 등 조금만 고치면 법안은 대체로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기선 위원장이 특히 언론피해구제 등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적극 노력한다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간법 개정안의 언론피해구제부분을 분리해서 단일법으로 가는것이 타당

양삼승(발표자) : 정간법 개정안이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경영, 편집권 독립 등의 부분과 얽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침해구제 부분까지 개정작업이 늦어지지 않을 까 하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한영달(강원 중재위원) : 정간법 개정안은 앞부분은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언론피해구제부분을 분리해서 단일법,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원회법' 등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승(문화방송 법무저작권부 차장) : 양삼승 변호사께서 현재의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모범적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해 주셨고, 국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거쳤다고 하는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언론계 의견 수렴을 거쳤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언론중재와 언론관련 소송을 담당하면서 직접 경험해 본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개정안에는 방송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 자체가 신문 등 인쇄매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상매체 입장에서는 언론중재를 받으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는데 첫째, 정간법 제16조 제3항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반론계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 현업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석함에 있어서 PD나 기자가 취재 대상자에게 충분한 반론기회를 부여했는데, 즉 인터뷰 요청도 하고 공문을 보내고, 만나러 가고 전화도 하는 등 상당히 반론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결국은 반론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이 나간 후에 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던지 언론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우 PD, 기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갖는데 반론기회를 제공할 때는 하지 않고 나중에 법적인 구제절차에 나서는 경우는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정안 제26조 제1항에서 반론보도 거부사유를 여섯 가지로 세분화해서 정리해 놓은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언론이 반론기회를 충분히 제공했음에도 피해 대상자가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언론이 반론계재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운 개정안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 제38조 제2항을 보면 중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제기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청인

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현재 직권중재결정을 한 경우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7일 이내에 하고 나서 반드시 법원에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통계자료를 보았을 때 상당수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무조건 법원에 제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현행법이나 개정안에 반론보도문의 형식을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중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이 그렇게 나오는데 방송의 경우 반론보도, 정정보도문이 자막과 함께 낭독하는 방식으로 방송될 경우 다수의 시청자들은 언론이 무엇을 잘못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정정보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송국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편집자 주석을 붙일 경우 이에 대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다르다는 내용을 언론사가 방송 전후에 설명을 해도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론보도소송은 3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반론보도를 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복을 해서 고등법원에 가더라도, 혹은 고등법원에 가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재반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방송으로서는 창피한 일이고 또다른 부담이므로 그대로 수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론보도소송은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문이 송달된 후 며칠이내

에 무조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으므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정보도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가능한데 새로운 개정안에 의하면 정정보도 또한 간접강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는 특히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정정보도까지 1심판결만으로 보도해야 한다면 언론사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TV, 케이블방송 등 영상매체의 특성이 현행법이나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령 톱뉴스 첫머리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데 신문과 달리 방송은 톱뉴스 시간 첫머리에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나갈 경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신문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자막과 함께 반론, 정정보도를 낭독하라고 하는데 방송의 경우는 보통 주로 뉴스제목만 달고 아나운서나 기자가 리포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인데 법원에서는 자막과 함께 낭독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방송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화면도 없이 일정시간 동안 자막으로 보도되면 시청자들은 방송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영상매체는 인쇄매체와 다르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든 반론보도든 간에 프랑스의 경우 경찰이나 정부쪽에는 반론권, 정정보도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에서부터 무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정 법률안에 왜 반영이 안되었는지 아쉽습니다.

양삼승(발표자) : 방송계를 대변해서 방송실무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관련된 의견,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정법률안에는 방송계의 입장반영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를 좀 더 구체화해서, 예를 들면 취재과정에서 충분한 반론기회를 부여했는데 그 때는 피해자가 취재를 거부하다가 막상 방송이 되니까 반론보도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입법할 경우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입법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주 순리적인 입법규정기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한 이익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를 법원에서 해석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취재를 계속 거부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물론 완벽한 취재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방송사나 언론사가 취재기회를 제공했을 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내가 한 말이 아무런 편견 없이 그대로 보도될까?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취지에서 보았을 때 방송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구색 맞추는 역할밖에는 못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취재기회가 부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충분한 반론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방송이 나간 후에도 반론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중재결정 후 이의신청시 신청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통계상으로 보면 상당수가 이의신청 후 소송에 이르지 않고 있으므로 소제기 간주조항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직권중재결정을 내렸는데 이의신청을 했고, 실제로 법원에 이르지 않은 통계수치 중 전부가 법원에 가지 싫어서 안간 것인가. 아니면 법원에 가고 싶었는데 시간적, 경제적 이유, 심리상 소제기를 하는데 있어 성가신 것 등등의 이유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참는 비율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는 이와 같이 가고 싶지만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법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문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보도할 때 시청자가 받아들이기에는 반론보도가 정정보도와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언론사가 느끼는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언론사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 부당함이라는 것은 법률로써 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불편함일텐데 일반적으로 법률을 만들 때 입법자의 생각은 모든 국민이 법률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언론사에서 실제로 그런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법률로써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반론보도의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석이나 주석 등을 덧붙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실제로 반론보도소송이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반론보도 게재를 3심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반론보도의 근본적 성질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론보도란 원문보도에 대해 피해자의 반박의견을 게재해 주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이 법률적 성질로써는 옳다고 보입니다. 확정판결 때까지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반대로 생각하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언론사에서도 문제되는 내용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상 다르지 않습니다. 보도할 당시 언론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보도하는 것처럼 반대로 반론보도 역시 확정판결 전이라도 보도하는 것이 균형상, 형평상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상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9시 뉴스 첫머리에 톱뉴스로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예외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실무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원문보도가 나갈 때 톱뉴스로 나갔더라도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톱뉴스로 나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결국 재판부에서 원래 나간 잘못된 보도의 중요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나 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법률로 규정할 내용은 아니고 중재부나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형평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론, 정정보도를 자막과 함께 낭독하거나 화면에 자막만 나오는 것이 TV 특성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중재부나 법원에서 반론, 정정보도를 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원래 나갔던 보도에 의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적당한 조치인가를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해서 재

판부나 중재부에서 자막만 나가는 보도를 명할 때에는 신중해야 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법에서는 경찰관이나 공직자 등의 반론보도는 일정부분 제한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왜 반영되지 않았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논의를 거쳐서 여론 내지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 다음 법률개정에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21조의 취지도 이른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정부나 법률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검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야

김택환(중앙일보 기획위원) :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간법 개정안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유제한이라든지 독자위원회, 편집권의 침해 등등 위헌소지가 많기 때문에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는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신문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신문법이 있는데 우리 언론기본법은 나치법을 많이 따왔지 독일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문법을 따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독일 같은 경우 나치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신문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것인가라는 점 때문에 법을 만들었지, 통제하거나 억압하려고 만든 법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정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원보호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의 취지도 이른바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고 정부나 법률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법원의 문턱이 높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다보니까 언론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중재를 통해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대통령에서 고위 공직자까지 반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중재위원의 위촉 5분의 2는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지만 나머지는 문광부장관의 위촉 즉 정부의 위촉을 받습니다. 지금 중재결정과정에서 현재의 중재위원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른바 위촉절차로 보아서는 문광부장관이 위촉한 중재위원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중재를 신청했을 경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혹을 갖느냐면 일전에 언론피해구제센터를 정부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설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 이는 정부와 물밑교류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를 이해하는데 있어 언론의 자유가 상위적 개념이지 반론권이 상위적 개념이 아니라는 측면이 이번 정간법 개정안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는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론권이 법적으로 강요되어 있어도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

사회자 : 중재위원 선출방법이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으니까 과연 임명한 사람이 신청인이 된 경우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

제와 반론권이라는 것이 언론자유보다는 하위 개념인데도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장호순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순(발표자) : 개인적으로는 일정정도 언론중재제도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론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정간법 개정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중재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에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법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론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의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지면과 시간을 보장해 주는 관행들이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강요되어 있어도 아직까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론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의 저널리즘이 훨씬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반론권이 없고 일방적인 보도만 하는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언론중재위원회라는 제도의 효용성은 일정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가 존재하려면 사회적 비용, 제도가 갖는 효용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언론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제도만 확대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세를 살펴보면 중재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를 확대시켜 놓은 경우 계속적으로 중재제도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와 기능이 발휘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춘구(한국방송 사회부 차장) : 개인적으로 7, 8년 전에 어느 기관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서 그 기관장이 스스로 반론의 기회를 거부하고 해당 직원에게도 인터뷰를 할 경우 인사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도 인사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법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반론보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청자 입장에서는 배경은 이해를 못하고 반론내용만 믿게 되어 언론사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언론사로서는 영, 미처럼 자율규제도 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고의, 과실여부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반론해야 한다는 규정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언론의 자율규제노력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해 피해의식도 생기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 취재영역의 보호라는 국가,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재제도의 확대가 언론영역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고 신청남발의 위험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Fact가 있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데 실제로 일선 취재과정에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론중재 통계자료를 살펴보다도 양적인 측면에서 취하율이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연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정안대로 강화되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 : 반론권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act라고 하지만 사실은 Fact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에 관한 보도이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판단, 인지작용도 개입되는 것이므로 아무

리 완벽해도 실질적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분진실밖에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생길 경우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 저널리즘의 원칙인데 기사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기사의 양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므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 반론권이라는 것은 기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예전에는 소극적 의미, 즉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면 반론권은 어디를 향한 자유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 누적된다면 좀 더 나은 기사를 만드는 토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을 문광부장관이 임명하는데 중재과정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자유스럽다고 단언합니다. 중재위원 5인이 협의를 통해서 중재방향을 정하게 되므로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중재제도의 운용은 시민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동시에 언론보도가 나아질 수 있겠는가 라는 두 가지 관점이 교합되는 부분을 찾아서 중재를 하게 되므로 결코 언론을 통제하거나 획일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조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라도 조서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지 않으면 반론을 게재해야

김복규(대구 중재위원) : 대구중재부에서 현재 중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 취하율이 40%정도여서 중재제도의 효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 취하라는

것은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실제 중재과정에서 정정이나 반론 보도의 형식이 아닌 적정한 수준의 보도약속과 보도를 통해서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중재의 한 형식으로 취하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이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중재위원 위촉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절대로 문광부에 속해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닙니다. 중재위원으로서 어떤 간섭이나 개입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한편 중재실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취재원을 경찰조서라고 하고 보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더욱이 기사는 경찰조서에 의한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완강하게 반론, 정정보도를 거부할 때 경찰조서의 진실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양삼승(발표자) : 취재원의 근거가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이고,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부인해서 반론보도청구를 한 경우 결론은 경찰조서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고 다만 경찰조서라는 것은 수사의 시초단계이고, 우리나라 현실, 즉 경찰관들의 업무량, 여러 가지 수준 등을 고려해봐서 중재부가 경찰조서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사가 경찰조서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라도 그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판단의 문제라고 보는데 참고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을 경우

특히 공익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검찰에서 기소할 때까지는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보도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공익과의 조화점을 찾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기소 전까지 선불리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조서를 믿고 선불리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론보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즉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반론보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계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여부를 불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즉 사실과 진실이라는 개념을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반론보도를 한다는 것의 철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언론인이 아무리 공익적인 직업윤리를 가지고 사심 없이 취재, 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의 눈으로 보면 위협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므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기자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흑사라도 틀릴 수 있으므로 그런 와중에 발생하는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 하에 반론보도라는 제도를 두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진실여부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갈등해소의 장치로서 어느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

최광일(서울 중재위원) : 현재 언론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갈등해소의 장치

로서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가 상당히 냉소적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피해자들이 제소하는 경우 소송액이 역대를 넘어가고 있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언론사의 경제적 취약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언론중재제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는 언론사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장호순 교수님의 주제발표내용 중 언론중재의 효용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보다는 언론중재의 장점을 살려서 피해자를 구제해 주고, 중재역할의 강화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비교적 명확하게 보도하면서 철저히 균형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관행

김재덕(서울 중재위원) : 앞으로 반론권을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권리의식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방송이나 언론에 대해 적극 대항하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언론자유의 위축된다면 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중재위원회 운영방법에 있어 반론권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그 대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명 의견개진권, 의견제시권 등의 개념을 설정해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가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호순(발표자) : 최근에는 반론보도소송 보다는 명예훼손소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낮고 반론보도소송은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추세로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져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부 반론보도소송을 한다면 아마 신문 전체지면의 절반이상이 반론보도로 채워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뒤서 법개정을 한다면 언론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반론권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상황이 아직은 반론권 보장에 인색하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사작성관행이나 뉴스프로그램 작성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짜맞추기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언론의 보도관행입니다. 그러면서 반론보도를 할 경우에는 기사 말미에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론권을 보장해 준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들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나중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비교적 명확하게 보도를 하면서 철저히 균형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보도관행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언론의 보도관행을 고려해 보면 반론권을 강제 받을 수밖에 없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백(YTN 사회부장) : 사회부에 근무하면서 사회부 성격상 비판보도 등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는 네, 다섯 차례정도 드나들었습니다. 반론보도신청을 한 경우 반론을 보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의 경우에도 중재과정에서 반론보도로 합의가 돼서 혜택을 입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재제도의 효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경우 정정보도청구사건이었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재위원이 정정보도를 하도록 강하게 주장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현재 소송진행 중입니다. 주제발표내용 중에 공인 등의 소송제기로 인한 언론위축효과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소송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방금 전 예를 들었던 사건에서도 신청인인 개인 기업이 제기한 소송금액이 30억원인데 이런 경우 패소한다면 큰 언론사가 아니라면 우리 같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전적으로 데스크와 취재자에게 책임 지워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호순(발표자) : 배상액수의 고액화와 언론사에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그 부담이 전적으로 기자 개인에게 부담된다는 지적인데 명예훼손소송의 큰 문제는 거대 언론사를 제외한 지역언론과 언론기능을 하는 많은 조직들은 소송을 한 번 제기 당하면 자본금을 다 날려야 하던지, 소송준비 때문에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배상액수산정에 있어서 우리 법원판결의 문제점은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앞으로 소송배상액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실질적 배상과 징벌적 배상으로 구별되고 있고 실질적 배상일 경우에는 원고의 손해입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배상액수를 현실화해야 하고, 배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문제로 명예훼손소송에서 기자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실제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사주는 언론자유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언론사주가 다른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언론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자유는 언론인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회사, 우리 기자가 아니라면 관심이 없지만 실제로 그것이 판례로 남게 된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른 기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1931년에 내려진 Near v. Minnesota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사전검열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덕분에 80년 동안 미국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송대상이었던 언론인은 주간지를 만드는 자질이 부족한 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미국 신문협회에서 이것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단체와 같이 큰 신문사와 신문협회에서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승소함으로써 사전검열은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에 미국에서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통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서로 반목하고 입장도 틀리고 노선도 틀립니다. 하지만 언론인의 기본적인 취재, 보도의 자유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소송이 제기되면 한 기자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언론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중재대상 포함문제는 중재위원회 위상문제와도 결부된다고 생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노향기(서울 중재위원) : 중재대상에 손해배상문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손

해배상청구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소송으로 간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임의절차이긴 하지만 맡게 된다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를 할 때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게 되므로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때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처리기간이 21일에 불과한데 언론중재위원회 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의 심리보다 부실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으로 갔을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재위원회 위상문제와도 결부된다고 생각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재원확보 문제를 법적인 장치로 보장해 놓을 필요가 있어

이경일(서울 중재위원) : 언론중재위원회에 1년 간 몸담으면서 느낀 점인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정 기관인데도 위상이나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역할과 위상에 비해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다 강력한 재원확보문제를 법적인 장치로 보장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이 비상임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대리해서 부위원장도 상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재위원 5인 중 1인도 상임으로 정해

서 상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삼승(발표자) : 우선 언론중재위원회 위상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현행법 제17조 제1항, 개정안 제28조 제1항에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재한다는 말은 실제의 중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중재원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상사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가지말고 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란 상대방과 법원에 가지 않기로 하는 사전의 약속이 있어야 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중재입니다. 언론중재의 개념은 원래 법률에서 얘기하는 중재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언론조정위원회라는 개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조정, 화해를 권고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설명한다면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결정은 할 수 없고 오로지 조정과 화해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중재제도의 기능을 강화시키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재가 이뤄지려면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언론사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강제력을 부여한다면 헌법상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는 곧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관한 권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측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여부, 채용문제 등은 정책적인 문제이므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재사건 수, 경제적인 면, 예산상 부담, 관련기관 협의 등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입법자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신문의 속보경쟁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어

김기훈(조선일보 기자) : 요즘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는 온라인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각 신문사마다 인터넷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독자기사도 발굴하고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기사싸움이 치열해졌고, 속보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기사량 자체도 대단히 늘어나서 예전 인쇄매체에서 등장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문사 같은 경우 어떤 기사가 올라가면 기사작성시간이 기록되고 다른 매체의 인터넷 신문과 비교해서 상도 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보고로만 쓰던 청와대 브리핑, 검찰 수사브리핑 등이 그대로 인터넷에 뜨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도패턴 중 하나는 다음날 아침 어떤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인용보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인용보도한 언론사가 면책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차 보도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2차, 3차 보도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브리핑의 경우 정치인 등 수사대상자, 혐의자 등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호순(발표자) : 온라인 저널리즘이 보급된

지 10여 년이 되었고, 활성화되면서 법률적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관례화 된 것이 없어서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언론의 속성상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것을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사를 크레딧을 달고 그대로 전재했을 경우 전재한 언론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통신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신기사를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것처럼 썼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자는 자신이 전달한 기사의 모든 사실확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신문을 인용한다면 다른 신문사가 취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2차든 3차든 관계없이 사실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속보경쟁상 부득이 하게 그런 여건이 없었을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여지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인용한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온라인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면서 예상과 달리 법률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커다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은 지역언론이기 때문에 신문사들은 속보경쟁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사를 마구 게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부 온라인 언론사에서 기사를 게재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으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온라인상의 속보경쟁은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삼승(발표자) : 다른 매체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보도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속보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통신을 받아서 기사를 게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나중에 그 언론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면 실무상 손해배상액수를 정하는데 현저하게 고려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검찰 등 국가기관의 브리핑을 그대로 보도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명이 거론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발표한 경우 언론사 입장에서는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므로 또다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보도해야 할 부담은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핑 내용만 믿고 보도하더라도 브리핑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구제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중앙 언론사처럼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이 없는 지방지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어

송정록(강원도민일보 사회부 차장) : 지방의 경우 소송이 거창한 것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법의 규제를 받거나 강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사평 기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하고, 단체로 와서 운전기를 멈추겠다는 위협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지 환경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사작성 관련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간법 개정안처럼 중재대상을 확대한다면 지금과 같은 지방지 환경에서는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지면의 절반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구제대상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중앙 언론사처럼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이 없는 경우 지방지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언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모범적인 답안 이겠지만 지방지가 처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큰 틀, 정신, 원칙은 찬성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현실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순(발표자) : 지방지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부실해서 개인의 인권,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이를 면책시켜주는 위법성조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지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지방지 환경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므로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미리 소송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소송을 당한 경우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인 자구책을 지방 언론계든 전국단위 언론계든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는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언론사, 개인의 자질문제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두범(충북 중재위원) : 개인의 명예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지만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에서는 공인에 대한 보도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 공직자, 공공기관에 대한 보도는 언론자유가 우월적으로 보호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인이 감시당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승복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삼승(발표자) : 우리나라는 공인이라고 해서 법률상 따로 취급하는 법률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법에는 공인에 대해서는 반론권 행사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가 없으면 공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는 현실적 악의이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판례에서는 공인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인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뉴앙스를 풍기는 문구도 보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향으로 법률규정을 바꾸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호순(발표자) : 현실적 악의 이론과 관련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공인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킵니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도 커다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진실성, 공익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국가가 압력수단이나 보복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회자 : 미국의 경우 Public Officer, 즉 선출직이나 임명직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의 적용폭이 매우 넓어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유명인, 즉 공공적인 일에 자의적으로 뛰어들어든 사람들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은 당연히 감시,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뉴스가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을

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인데, 이는 명문화시키지는 않더라도 관습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관습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동황(서울 중재위원) : 정부부처나 공직자들이 반론,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언론중재에 대한 범위, 자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공인에 대한 자유로운 보도에 의한 면책이론 등이 반론보도청구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 공직자의 반론보도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현실에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소송과는 달리 반론이라는 것이 과연 언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위축시킨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공인의 반론보도청구를 명예훼손 소송과 같이 똑같은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제도가 화해와 조정의 장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현업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조규승(문화방송 법무저작권부 차장) : 언론 피해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요 국가보다 많고 질차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제도가 화해와 조정의 장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현업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사전억제, 사후 제재가 민, 형사상에 걸쳐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언론중재제도까지 있어서 기자나 PD 등은 현업에서 이의 있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탐사, 시사교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송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인들에 비해서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공적 인물인 검사장이라든가 법무부 보호국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반론, 정정보도 등 언론중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인이론과 관련해서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다른 주요 국가보다 사전, 사후적으로 중복적으로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나라보다 언론피해구제제도가 복잡하고 과다해 언론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두 번째 사전방영금지 가처분제도가 민사소송법상 조항을 개정 정간법 제42조에 도입한 것 같은데 언론에 이 제도를 굳이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오히려 언론의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언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가처분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떤지, 세 번째 이번 정간법 개정안이 단시간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좀 더 공론화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안을 다시 만들 공론의 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허용범위는 그 나라의 독특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

양삼승(발표자) :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사전, 사후

에 겹쳐져 중복되어 있고, 언론규제 조치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측면에서 질문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피해구제제도는 크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반론보도청구권은 분명 전 세계에 걸쳐 보더라도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계통의 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어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은 언론 관계에 특정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민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언론에 관해서만 정리해서 종합해서 한군데로 모아 논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반론권 인정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지만 1980년도에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공론이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하면서 반론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겠다. 언론의 자유보장에 큰 부담이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끌고 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감대 내지 공론이 그렇게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방영금지 가처분제도를 반대로 언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우선 방영금지 가처분은 없는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재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의해서 가처분제도가 다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화시켰다고 해서 특별히 없었던 제약을 새로이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방영금지 가처분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론중재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본에서도 일반 민사소송법 이론상 당연히 방영금지, 게재금지 가처분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으로도 위헌

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사법부에 의한 사전적 조치는 행정부에 의한 것과 달라서 언론의 자유에서 강조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이 합헌이라고 해서 널리 자주 이용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법원에 의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방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법부에 의해 방영금지 가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다만 법률로까지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방영금지 가처분이 인정 안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 경우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심판신청을 낸다면 위헌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규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방영될 예정인 프로에 의해서 개인의 권익이 얼마나 크게 침해당하는지, 즉 언론의 자유를 사전검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정도로 개인의 법익이 크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때에만 사전에 방영금지 가처분해야 되는 쪽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보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직자에 의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현재의 상황, 그 나라의 독특한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공감대

형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시적인 작업이 필요

김택환(중앙일보 기획위원)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진정하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기관으로 갈 것인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든 활동이든 전개할 때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호순(발표자) : 피해구제제도가 과다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언론계 입장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그것을 없애고 줄이자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이 연결시켜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언론의 자유는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이 언론자유를 위해 얼마나 싸운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한국언론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언론탄압이 있었지만 과연 언론인들이 언론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생하면서까지 싸운 적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보면서도 못본 척 한 적이 많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제 실제로 지금의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어진 기층민중들이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해오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자유에 대해 냉소적인 것은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겠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다수의 여론이 되어서 국회가 이를 반영하여 입법화되고, 판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언론이 국민들편에서 기자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약자의 자유를 위해,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외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과 같이 제도를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오히려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언론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문제를 단편적인 문제로 보지말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언론이 반성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일(서울 중재위원) :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언론자유가 이 정도까지 쟁취된 데에 있어 과연 언론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론인과 언론사를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많은 언론 탄압의 상황 속에서 언론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언론인과 언론사의 견해가 다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언론사와 언론인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 오늘 논의된 다양한 문제들이 이번

한번의 세미나로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다시금 실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이상으로 2003 정기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에서 전무, 전부 개념의 재판을 받는 것보다 먼저 원총역할을 하는 중재절치를 거치는 것이 언론사를 위해서 유익

위원장 :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발표해주시고 토론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이 토론에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장호순 교수께서 언론피해의 현 상황을 진단해 주시고 구제현황을 말씀해 주셔서 유익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삼승 변호사께서 계류 중인 정간법 개정안을 분석해 주시고 개선점을 부각해 주어 정간법 개정방향에 대해 좋은 지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순 교수께서는 논문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20년을 넘었지만 언론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계수치, 즉 실질적인 만족수치를 보면 적어도 2000년도 이후에는 60%를 훨씬 넘어서 거의 6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 재판장은 모든 사건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라고 민사소송법에서 명령하고 있지만 화해와 조정으로 사건이 끝나거나 또는 취하로 종결되어서, 즉 만족해서 사건이 끝나는 비율이 5%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언론

중재위원회가 20여 년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소송의 남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비판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 사전, 사후구제제도가 많은 편인데 언론중재제도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존재하는 이상 중재절차가 없다면 법원으로 막 바로 가게 됩니다. 개정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현행법에 의한다면 중재위원 5인 중 1인은 반드시 전직 언론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계의 현황과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중진 언론인이 중재위원으로 참여, 조정에 가까운 화해를 권유하고 완충역할을 하게 되어 언론사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더욱이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중재대상으로 다루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언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원으로 막 바로 가게 된다면 법관은 언론의 현황과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고 법관의 사고방식도 전부나 전무냐는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화해에는 능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전부, 전무 개념의 재판을 받는 것보다 먼저 완충역할을 하는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언론사를 위해서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센터 설립부분은 1998에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단일법을 준비하면서 2000년에 공개 세미나도 개최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담기능에 있어 현재의 인원과 시설로는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전담요원도 없는 현실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언론피해구제상담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안을 받아서 새로이 설립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주신 사회자 박영상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박 용 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목 차

I. 서론	4. 시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따른 신원공개
1. 개관	
2. 범죄보도의 의의 및 실상	III.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1) 범죄보도의 의의 및 가치	
(2) 범죄보도의 실상과 문제점	1.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 표현행위에 대한 의미
3. 피의자와 범인의 익명성의 이익	(1) 무죄추정의 원칙
(1) 보도대상자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	(2) 범죄혐의자에 대한 명예보호
(2) 단순한 범죄혐의 보도와 명예저하적 효과	(3) 법원의 재판권과 범죄보도
(3) 대중매체의 영향 - 실명보도의 망신 효과	2. 혐의 단계에서 혐의에 관한 진술 및 보도
4. 범인이나 피의자의 지위	(1) 고소·고발의 자유
- 시사적 인물 내지 공적 인물 여부	(2)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1) 개관	3. 수사단계의 보도
(2) 학설의 전개 - 독일	(1) 수사개시 단계의 보도
[사례] 소매치기 단속반 비위사건 (1928)	(2) 실명보도의 요건
(3) 현재의 다수설 및 판례	(3) 수사기관의 발표와 보도
[사례] 레바하 살해범 기록극 사건 (1973)	4. 공판 개시 후 소송에 관한 보도
II. 신원공개(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1) 개관 - 여론재판의 폐해
1. 개관	(2) 재판공개주의와 언론 보도
2. 공적 인물인 경우	(3) 법정 보도의 허용성 및 한계
3. 사인인 경우	(4) 인격권 보호를 위한 재판의 비공개
	(5)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는 법정보도 - 법정에서의 촬영, 녹화 및 중계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필자가 범죄보도의 쟁점에 관한 이론과 사례들을 망라하여 정리한 글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실무자에게도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I. 서론

1. 개관

언론소송에서는 수많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에 논란된 것은 범죄에 관한 보도에서 어느 경우에 관계인의 실명(實名)이나 초상(肖像)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보도함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내지 공공의 알 권리는 보도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종전 우리 언론계의 관행에 의하면 피의사실의 보도가 아무런 제약없이 이루어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사절차를 주관하는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피의사실을 공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언론매체의 취재경쟁과 선정적 보도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확정시까지 무죄가 추정되는 피의자·피고인의 피의사실이 실명으로 또 때로는 사진과 함께 보도되면 그는 확정적 범인으로 오인받게 되는 것이다.

평범한 사인(私人)이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기명보도되어 만천하에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 법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엄격히 따지자면 그것은 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형(私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회규범을 어긴 일탈자가 모든 시민에게 알려져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피의

자·피고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이 부인되지 않는 한, 그들의 존엄권을 무시하는 처우는 어떠한 국면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은 최고의 정신적·윤리적 가치의 보유자로서 인간에게 인정되는 내적인 사회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인간은 이렇게 독자적이고 불가양의 윤리적인 고유가치를 구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그 실현 여하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고유가치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자기비하(Selbstniedrigung)를 감행한 경우에도 박탈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범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¹⁾

사회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났는가를 알리고 그에 대한 경계를 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고 일탈(逸脫)에 대한 응보(應報)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알리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공적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업의 이행은 당사자의 신원(身元)을 반드시 밝히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론의 과업과 실명보도로써 관계인이 입게되는 피해를 비교해 보면 익명보도의 원칙이 요청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물론 사회가 범죄자나 일탈자의 정명이나 얼굴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이른바 공적 인물의

1) BGH NJW 1954 S. 649; Nipperdey, Würde des Menschen in: Neumann-Nipperdey-Scheuner, Die Grundrechte, 2. Bd., Berlin 1954, S. 1, 3, 30f; Herwigh Engau, Straftäter und Tatverdächtige als Personen der Zeit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atik identifizierender Mendiendarstellungen 1993, S. 182;

비행이나 중대한 범죄사건에 연루(連累)된 자에 대하여는 공공의 알 권리가 우선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유 내지 공공의 알 권리와 피의자 등의 개인적 이익 간의 조화적 절충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범죄피해자의 인격권이 피의자의 경우보다 더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서 논의되는 주된 문제는 사건보도 내지 범죄보도에서 관계인의 초상 및 성명의 공개가 허용되는 여부, 그리고 그의 인생상 및 성격상의 보도가 허용되는 여부 및 정도이다. 독일에서 일반적 논의에 의하면 시사적(時事的) 인물로서 판명된 혐의자와 범인에 대하여는 신원을 밝히는 보도가 허용되지만, 그 경우에도 그러한 보도는 원칙상 장소적으로 제한되고 시간적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혐의자나 범인의 가족 기타 가까운 인물의 신원이나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논란도 다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 대법원은 이른바 '이훈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확인하는 주목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례] 이훈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199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판결.
공98.8.15. [64], 2108.

이 사건에서 피고 언론사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훈소송을 제기당한 원고(녀)가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하여 폭력배를 시켜 남편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그것은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단계에서 담당 경찰관의 발표를 취재한 결과였지만, 결국 그러한 원고의

범죄사실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게 되었다.

피고 언론사들이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범죄보도는 공적인 이익에 속하는 것이지만,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음을 확인하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피고 언론 각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적인 인물이 아닌 원고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 범죄보도의 의의 및 실상

(1) 범죄보도의 이익 및 가치

범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다. 사회학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의 이상(異狀)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에서도 없을 수 없는 하나의 통합적 구성부분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범죄는 공동사회생활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위반이라고 간주되고, 각 사회는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게 된다.

현실적 사회현상으로서 범죄와 범인은 사회적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다. 실려의 말처럼 인간의 역사에서 실제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범죄의 연보(年譜)야 말로 가장 교육적인 것이라고 한다.²⁾ 형사사건은 인간의 생활에서 조우되는 한계상황에 대한 보도와 논쟁을 통하여, 인간 본질의 심연(深淵)과 미로(迷路)에 관한 심리적 해명 및 사회관계의 비판적 조명을 위하여 좋은 자료를 제공하여 왔다.

언론매체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에 관한 사

2) Herwigh Engau, Straftäter und Tatverdächtige als Personen der Zeitgeschichte: Ein Beitrag zur Problematik identifizierender Mendiendarstellungen 1993, S. 303

항은 그들이 보도할 시사로서 중요한 항목에 속한다. 범죄와 그에 대한 추궁은 일반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보도도 언론의 공적 과업의 하나에 속하며, 그에 대한 포기는 사회적 현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다. 실제로 언론이 다루는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범죄보도이며, 특히 선정지 및 정기간행물과 전파매체는 범죄보도에 의존도가 높다.

범죄에 관한 논의는 학술적·정보적 목적을 위한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오락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적이다. 실제의 범죄사건을 모델로 한 소설이나 범죄연속극은 높은 인기를 가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범죄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선정적 목적만을 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 이외에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함으로써 도덕적 자기만족을 충족하려는 의욕, 통속을 초월하는 비범한 범죄가 갖는 선정성이나 매력, 그에 정신적으로 탐닉하려는 인간의 충동, 문명세계에서 생활의 무료함과 안이함 때문에 해이(解弛)해지는 긴장을 회복할 필요성 등을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³⁾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통속적 현실을 이색화하려고 원하며, 특히 범죄소설과 범죄영화에서 수용자는 긴장의 해소를 추구한다. 현실에서부터 가상세계로의 도피는 오락적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경우 독자나 시청자를 이끄는 것은 지식욕이 아니라 긴장해소와 체험의 욕구이다. 대중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 개인은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안정과 구호의 느낌을 받기도 한다.

범죄보도의 자유는 공적인 사항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언론과 정보의 자유가 보장되고 검열이 금지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형태의 원칙에 충실을 기하게 한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전체주의 정권은 그에게 탐탁치 않은 범죄를 사회로부터 몰아내려는 노력에서 정보차단을 시도하여 왔다. 그러나 범죄에 관한 정보의 은폐는 국민 대중으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대처를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범죄의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범죄학적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였다. 범죄의 수준과 그에 대한 대책, 범죄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 그에 대처하는 정치가의 태도와 그 제안이나 조치의 종류는 선거에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⁴⁾

결론적으로 범죄사건에 대한 관심은 정보의 이익뿐 아니라 오락적 이익에도 근거를 갖는다. 그러나 대중이 형사사건과 그 수사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싶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정보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관심의 대상이 뉴스가치(Nachrichtenwert)를 갖는가의 여하에 따르는 것이지, 사실상 그에 관하여 알려는 사람의 다과(多寡)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보도 내용이 사실적인 것을 재현하여 알리거나 전파하는 것으로서, 시사적 사실에 관련을 가지며, 현실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간물의 기사나 방송프로에 이러한 정보내용이 없으면 그에 대한 대중의 이익은 단지 오락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라고 파악되어야 한다.⁵⁾ 언급된 전체적인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날조된 것이거나 마음대로 꾸며낸 경우에도 이러한 논리가 적용된다. 그에 반하여 사실상 범해진 범죄에 대한 보도는 선정적인 것

3) Engau a.a.O. S. 305

4) Engau, a.a.O. S. 316

5) Engau, a.a.O. S. 311

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오락적 이익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범죄와 그에 대한 추궁은 일반에 대하여 다소간 의미 있는 정보가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2) 범죄보도의 실상과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여러 이점(利點)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보도가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범죄보도가 범인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다음의 일본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준다.

[사례] '로스의혹' 사건의 보도(1984) - 일본의 예

이른바 일본의 로스의혹사건 보도는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의 탐색보도가 발단이 되어 수사가 개시되고 기소된 사건에서 매스컴의 선정적 보도가 문제된 사건이었다. (秋葉健次, '명예훼손 소송에서 로스의혹 보도와 TV프로그램', 月刊民放 1998년 1-4월호에 연재된 "マスコミ判例研究 7, 8, 9, 10" 참조)

지난 1981년 11월 당시 33세이던 미우라 가즈요시(三浦和義, 수입잡화판매상)는 결혼 3년째인 부인 가즈미(三浦美·당시28세)와 미국을 여행중이었다. 두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건물 주차장에 내려섰을 때 돌연 괴한이 나타나 총격을 가했다. 부인 가즈미는 머리에 총탄을 맞고 흉상상태에 빠져 결국 1년 뒤 숨졌다. 미우라 역시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미우라가 부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장면이 TV로 방영돼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건은 단순 강도살인사건으로 처리됐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던 그 사건이 다시 터져나온 것은 그 3년 뒤 주간문춘이 1984. 1. '의혹의 총탄'이란 제목의 연재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주간문춘은 장기간의 추적·취재 끝에 보험금을 노린 이 사건을 지상(紙上) 고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였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미우라가 사건 전에 부인 명의로 들어든 1억6천만엔의 생명보험금을 타

갔다는 등 감춰졌던 진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총격 사건 3개월 전엔 미우라 부부가 머물던 LA의 호텔 방에 누군가 침입하여 부인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상해를 입힌 구타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망치를 휘두른 범인은 미우라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전직 여배우로서 그녀는 경찰에서 "미우라로부터 부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른바 '극장형범죄'라고 일컬어진 그 사건의 범죄상황 때문에 일본의 모든 신문·방송 및 잡지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온통 대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1985. 9. 미우라는 경시청에 체포되었다. 경찰은 위 구타사건에 관하여 미우라와 여배우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 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이 선고된 후 1998. 9. 상고각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구타사건에 관한 기소가 행해진 3년 후에 경찰은 다시 가즈미를 사망케 한 총격살인 사건에 관하여 미우라를 살인죄의 교사범으로 추가 기소하였다. 하지만 총격사건에 관하여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청부를 받고 총을 쓴 범인도 찾아내지 못했다. 대신 검찰측은 살해를 부탁받았다는 여배우의 증언과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추가 기소된 총격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검찰주장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의 도쿄 고등재판소에선 1998. 7. 1.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간접사실(정황증거)이 아무리 많더라도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게 판결이유였다. 결국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미우라는 13년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감옥에서 보내고 석방된 것은 만 50살이 된 후였다. 미우라 피고인에 대해 동경고등검찰청은 7. 10.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그 동안 미우라가 주간문춘에 대하여 제기한 명예훼손의 형사고소는 불기소되었으나, 그가 오보 또는 과장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문, 방송, 통신, 출판사 등 여러 보도기관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은 500여 건에 달하였다. 그 중 피소된 주간지, 석간지, 스포츠지, 방송의 거의 절반이 화해하였고, 매스컴윤리간담회 전국협의회에 의하면 1심

판결이 선고된 195건의 소송 가운데 약 60%에 해당하는 115건에서 마우리가 승소하였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받아낸 배상액은 총액 약 5천 1백만엔에 이른다. 제1심에서 내려진 판결의 배상금 인용액수는 평균 52만엔인데, 이것은 최근 10년간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위자료액수 약 90만엔보다 낮은 액수이다.

승소판결의 대부분은 "확정판결 전에 범인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점을 들어 기사나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 중에서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를 기사화한 언론사에게는 중전 일본 판례상 확립된 취지에 따라 책임이 부정된 반면, 독자취재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경취재의 노력 여하 및 오보에 관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기술의 정도에 있어서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를 가지고 기사를 읽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독자에게 실인범으로 인상을 강하게 준 표현을 쓴 경우에는 패소한 사례가 많았다.

마우리에 의한 소송은 거의 종결되었으나, 교도(共同)통신사와 그 가맹사가 상고한 사건은 16건이었다. 통신기사(개인)이나 범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도 민사상의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지금까지의 형소심 판결에서는 "통신사가 일원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입장과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도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 교도통신사측은 "통신사와 신문사의 기본관계는 기사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기사를 공급한 통신사가 책임을 진다는 이해와 약속하에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보도가 범인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선정적인 범죄보도는 예외적 범죄현상을 일반적인 것으로 알게 하여 불필요하게 공중을 불안하게 하고, 동시에 범죄나 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이를 습관화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감정을 무디게 하는 폐습을 유발한다. 그 뿐 아니라 그 보도태도가 감정적인 대응만을 환기하

는 경우에는 범죄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성찰적 대책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3. 피의자와 범인의 익명성의 이익

(1) 보도대상자에 대한 불이익한 효과
보통 범인에 대하여는 추방, 거부, 사회적 냉대가 행해진다. 범죄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정착된 공동사회생활의 기본적인 가치관념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이 혐오하는 것이며, 범인들에 대한 반응은 그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다.

법원의 형사판결은 범인의 규범일탈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표하는 것이고,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벌 때문에 주위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동료 간에서 그의 명예는 손상되고 그의 일반적 가치평가는 저하한다. 물론 범인은 그러한 존경의 상실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 그것은 그의 대외적 생활형성의 실현과정에서 그 자신이 선택한 바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성 상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언론보도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범인은 자기의 명예에 관한 주장청구권을 자기의 책임있는 행위에 의해 스스로 축소시킨 것이고, 그의 사회적 명성 유지를 위한 관심은 사건에 관한 미디어의 보도에 대하여 보호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대중매체의 보도에 노출되는 결과 입게 되는 폐해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언론의 계속적·집중적인 보도는 범법자나 채무자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심지어는 그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독일에서는 뇌물을 받은 세관원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그가 딸과 부인을 사살하고 자살한 사례가 있었다.⁶⁾

6) Engau, aa.O. S. 199f

이러한 결과는 신원을 밝힌 보도가 아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가 익명성을 지키려는 원망은 이해되어야 한다. 익명의 이익이 어떤 정도로 보호될 것인가만이 문제이며, 이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

[사례] 성폭행 피해자 거명금지 사건 (199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998. 3. 24. 결정 -

1 BvR 131/96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파렴치행위를 범한 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실시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명을 적시하여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인격권이 그 주체에게 자신의 상(Selbstbild)에 부합하거나 그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만 공공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곡적이고 날조적인 표현과 인격 발현을 현저하게 침해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개인을 보호한다 (vgl. BVerfG, NJW 1988, 1381). 물론 다투어지는 표현행위가 진실이라고 간주되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격적 이익이 표현의 자유에 양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원칙도 예외 없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진실한 보도도 그 표현의 결과가 인격의 발전에 심대한 것이고 표현행위의 보호이익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당해 사건의 원고에게 그 결과는 중대하다. 그것은 특히 가중스런 범죄로 생각되는 자기 지식에 대한 성폭행의 비난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고는 그 범죄자를 낙인찍는다. 그 낙인(Stigmatisierung)은 관계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사회적인 평가 및 행동기제를 근거로 수많은 생활영역에서 관계자에게 사회적 승인의 박탈, 사회적 따돌림, 기본적인 불안정한 및 자기 가치저하의 결과를 야기한다. 그에 의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은 끈질기게 저해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이나 행동거지의 결과로서 감내해야 하는, 통상적인 발전기회의 한계나 타인들로

부터의 불리한 반응으로 열거되지 않을 것이다.

기본법 제1조 1항과 관련된 제2조 1항이 그에 관해 제공하는 보호는 개인에 관한 진술이 허위인가의 여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술이 진실하고 그 때문에 사회적 제한과 격리의 근거가 되는 경우에도 개입하게 된다. 인격의 보호는 기본권 주체와 그 주변 간의 사회적 관계의 기본 조건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vgl. BVerfGE 54, 148 [153] = NJW 1980, 2070) 피해자 자신이 그 사실을 보고한 제3자가 하등 상관 없이 그 보호는 주어진다.

헌법소원청구인의 성명표시가 그녀가 생각한 바와 같이 애당초부터 그녀 아버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장의 진술내용과 관련해서만 인격의 보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정보로서 주장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해서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현행위의 상대방이 얻게 되는 정보와 신원확인의 기회도 문제된다. 헌법상의 인격권은 하나의 주장이 특정 개인에 관한 것일 수 있고 그가 그 결과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하여 그 보호를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이 그의 신원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존재한다.

다른 한편, 기본권 침해의 정도는 차별적 결과의 영향범위에 의존한다. 이 차별적 효과는 관계자의 주지도 (Bekanntheitsgrad)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성명의 빈도(지명도)에 의해 표현행위의 영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널리 전파된 이름의 경우 표현행위의 영향은 발언자와 그 가족을 알게 때문에 그가 자기 이름하에 공개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범인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생한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성명의 거명이 없이도 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명의 거명에 의한 인격의 침해는 더욱 감소된다.

(2) 단순한 범죄혐위 보도와 명예저하적 효과 사회적 현실에서는 범인이라는 추정, 즉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그 명예가 손상된다. 법적 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대중은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 후 혐의에 관한 증거부족으로 불기소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를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단순한 혐의는 오류의 개연성이 크며, 그 무고(無辜)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범죄혐의자를 보도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혐의자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알려지면 그것은 대중의 의식 속에 집요하게 자리 잡는다.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사전적 유죄판결(Vorverurteilung)과 같은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하는 경우 그 효과는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대중매체의 영향 - 실명보도의 망신효과

현대에 이르러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 부수 증가와 라디오 및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의 발전은 대중매체의 힘을 막강한 것으로 만들었다. 시민들은 대부분의 정보를 언론매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언론매체는 그 전파를 통하여 인간의 생활사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학의 공통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매스미디어의 일반적 효과는 수용자의 입장에 따라 그가 이미 가진 의견을 뒷받침하는 보도내용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며(이른바 선택적 수용(selective reception)의 이론), 이러한 효과는 영리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매체의 선별적 편집과 관련하여 특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의하면 수용자가 그의 주견(主見)을 변경함이 없이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된 정보나, 아직 의견이 생성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있어서는 대중매체가 예상할 수 없는 심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더욱 진전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는 실질적 사안에 관한 것 보다 더욱 쉽고 강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준다.⁸⁾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기 전에 독자의 대부분은 그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며, 그에 대한 태도의 형성은 애당초부터 대중매체가 해당 인물에 관하여 제시하는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보도된 사실, 그 편집의 형태와 규모에 비추어 그 중요성 내지 특수성을 판단하게 되는 결과 그 보도된 인물에 대하여 보도태도에 상응하는 인상을 얻게 되고, 보도대상자는 그의 행위 자체와 그로부터 귀결되는 적절한 책임비난을 상회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묘사는 절대다수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수용자 대중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주어질 수 없고, 보도는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일반의 판단에 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가 반복 보도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효과는 그에 향해진 비난을 부수적 형벌 내지 추가적 형벌로서 작용하는 차원으로까지 높인다.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이렇게 매체의 신원 공개보도가 이루어내는 특징을 '망신효과'(Prangerwirkung)라고 지칭한다.⁹⁾

근거 없이 혐의를 받은 자가 낙인이 찍혀 명예가 상실되는 것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중매체의 신원명시보도는

7) Engau, a.a.O. S. 211

8) BGHZ 3, 270, [285]; 39, 124, [131]

9) Engau, a.a.O. S. 215; Erdsiek, Zum Persönlichkeitsrecht des Straftäters, in: AfP 1973, S. 413, 426

형사판결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언론매체 뿐 아니라 국민들도 범죄혐의와 유죄의 증명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도는 사전적 유죄판결(Vorverurteilung)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범죄혐의자에 불과한 자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인이 그러한 비난이나 사회적 효과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비난적 언론보도에 의한 응징(膺懲)은 국가의 사법권독점원칙에 모순되는 부수적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되며, 나아가 형집행 종료 후에는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없애거나 어렵게 한다.

언론의 범인에 대한 실명보도는 범죄학의 관점에서조차 심각히 논란된다. 대중매체가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관하여 보도하는 강도에 따라 그들은 사회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공공을 피하게 되고, 공공 쪽에서는 그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범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드디어는 국외자로 몰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또 다른 범행의 반복으로 나타나게 된다. 쉬나이더(H. J. Schneider)는 범죄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 계기는 공개적으로 부죄(負罪)되거나 범죄인이라고 지칭되는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¹⁰⁾ 그에 의하면 개인은 범인이라고 그의 신원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는 그에 의해 사회가 범죄인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고 그에 따른 역할을 하도록 기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드디어는 자신이 정상적인 사회로부터 구별되는 종류의 인간에 속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법의 파괴가 널리 알려진 후에는 동시에 폄하의식(貶下儀式)이 시작되는데, 그 의식적(儀式的)인 절차에서 개인의 정직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일정한 범인은 사법기관의 선택기체에 의해 선별되고 낙인찍히게 된다. 사회적 배척과 낙인은 범인의 자기의식에 중대하게 영향미치는데, 범죄인들은 그들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내면화하게 하고 악한 자기상(自己像)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에는 제2차적인 사회적 일탈을 야기하는 범죄적 역할을 감행하게 된다."¹¹⁾

4. 범인이나 피의자의 지위

- 시사적 인물 내지 공적 인물 여부

(1) 개관

범인이나 피의자가 시사적 인물 내지 공적 인물로서 보도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는 논란되는 문제이다. 범인은 그의 행동에 의해 자신이 범질서와 범공동체 밖으로 탈출한 것이고, 추방된 범외자이므로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선다면, 그의 인격권은 부인되고, 그는 자신에 관계되는 보도에 대하여 방어할 수 없다고 하게 될 것이다.

189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동법은 1915년 폐지됨)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인의 초상의 보도를 허용하였던 전례에 따라 범인은 애당초 인격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보호사상과 자주결정권의 사상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정신적·윤리적 가치의 보유자로서 인

10) H. J. Schneider, Kriminalitätstentstehung und-behandlung als Sozialprozesse, Kritischer Überblick über die kriminologischen Kongresse im Herbst 1971 in: JuS 1972 S. 191, 192

11) H. J. Schneider, a.a.O. (Fn. 142)

간에게 인정되는 내적인 사회적 가치 및 존중을 요청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인간은 독자적이고 불가양의 윤리적인 고유가치를 구현하는 존재이며, 그 가치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개인이 이를 실현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 때문에 존중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의 고유가치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자기비하(自己卑下)를 감행한 경우에도 박탈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범인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는다.

범인의 의견 및 행동의 자유가 범죄예방을 위해 제한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도 범죄의 수사 및 형벌집행의 목적 때문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에 있어서도 수형자는 법률에 규정된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권리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범인은 불가피한 자유제한을 수인해야 할 뿐 인격권 전부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2) 학설의 전개 - 독일

독일에서 1907년 예술저작권법¹²⁾ 시행 초기의 다수설에 의하면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시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원명시보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범행은 오로지 개인적 일로서 사적 사항에 속할 뿐 아무도 범행이나 그에 대한 범죄혐의만을 근거로 공적 성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¹³⁾ 세계1차대전 이전에 신문들이 오락 및 선정적 목적으로 범죄, 사고, 이목을 끄는 재판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는 관행이 생기자 이러한 현상에 의한 인격보호의 희생을 우려하는 생각이 그러한 견해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수설에 대하여 반대견해를 표명한 콜러(Kohler)는 시사적 영역을 가능한 한 넓게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범죄로 인하여 공공의 관심을 끌게 된 자도 시사적 인물에 포함되며, 그는 스스로가 동인(動因)을 부여한 환호(歡呼)와 추문(醜聞)의 욕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 인간은 사건에 개입하였거나 특출한 것을 하였기 때문에 흥미를 끄는 인물에 대하여 그를 단지 환상(幻想)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하고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보고싶은 정당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 경우 사람들 눈에 뜨이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막론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나왔다.

[사례] 소매치기 단속반 비위사건 (1928)

독일 드레스덴 고등법원(OLG Dresden) 1928년 판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국제 소매치기를 단속하기로 되어 있던 범주수사관(Rouvel)이 그 소매치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사건의 심리중에 한 신문이 그 피고인의 수사관의 사진을 게재하자 그가 사소(私訴)를 제기한 사건에서, Dresden 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사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Rouvel에 대한 재판은 일상적인 종류의 범죄가 아니었다. ... 그러한 범죄사건은 그 특수함과 비범성으로 인하여 한 지방의 일상사의 태두리를 벗어나게 되며, 독일에서는 종전까지 가능하지 않다고 간주되어 왔던 것에서 개념적으로 보아 전 독일에 넓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모든 점에서 시대를 슬프게 하는 증좌(證左)라고 평가되었고, 독일 언론에 의해 상세히 보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다룰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윤리적 논의(Sittengeschichte der Gegenwart)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국

12) KUG, Gesetz bet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Fotografie von 1907

13) Engau, a.a.O. S. 186

14) Kohler, Kunstwerkrecht, Stuttgart (1908) S. 160f.

단적인 모습은 Rouvel에 대한 재판에서 전개되듯이 점차로 문화사적인 의미(kulturgeschichtliche Bedeutung)를 갖게되는 것이며, 그 자신은 독일문화사의 오늘에 속하는 인물로 낙인찍혀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의 복리를 위한 특출한 공적뿐 아니라 비상한 종류의 악행도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일반적인 관심을 일깨우는 것이며, 그 장본인을 유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시사성의 지위(Platz in der Zeitgeschichte)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저작권법(KUG) 제23조 제1호의 “시사성의 영역”(aus dem Bereiche der Zeitgeschichte)이라는 문구는 본래적인 정치적 영역뿐 아니라 국민의 사회적·과학적·문화적 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3) 현재의 다수설 및 판례

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의해 시사적 인물의 특성을 결정하려 하는 현재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또는 그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전제로 정당한 공개의 이익을 인정한다.¹⁵⁾ 형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은 그의 행위가 평범함과 빈번함을 벗어나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나 그 혐의자의 인물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 일반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사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범인의 인물, 범죄사건의 범위,

배경 또는 비범성 등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독일의 최근 판례가 시사적 인물로 보아 그 실명보도를 허용한 사례를 보면 레바하(Lebach)사건에서 연방군의 탄약고를 습격하여 군인 살해에 관여한 자,¹⁶⁾ 2인을 살해한 범인,¹⁷⁾ 청소년인 살해범,¹⁸⁾ 1980년 뮌헨의 10월제에서 폭탄을 설치한 자,¹⁹⁾ 종전 나치 친위대의 간부로서 어린이 20인의 치사행위에 혐의를 받은 자,²⁰⁾ 잠시 동안 은행가의 살해에 관여한 것으로 혐의를 받은 여학생,²¹⁾ 이른바 돈세탁을 해줌으로써 국제적인 마약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부죄된 스위스 거주 시계상인,²²⁾ 딸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재판중에 사살한 어머니,²³⁾ 정치적 동기에서 인질을 잡고 거액을 탈취한 무장한 여자 강도범인²⁴⁾의 경우 등이 있다.

[사례] 레바하 살해범 기록극 사건 (197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73. 6. 5. 판결
Lebach-Entscheidung BVerfGE 35, 202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행해져야 할 법의의 형량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의 사안을 보면 독일제2방송공사(ZDF)는 ‘레바하의 군인살해사건’이라는 기록극을 제작·방송할 예정이었다. 그 사건의 주범 2인은 1969년 동성연애자로서 요트를 마련하여 외딴 섬에서 그들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국경수비대 초병 4인을 살해하고 무기를 탈취한 후

15) Engau, a.a.O. S. 193

16) BVerfGE 35, 202, 230

17) OLG Hamburg, AfP 1971 S. 41

18) KG, AfP Übersicht 1976 S. 33

19) OLG Hamburg, AfP 1983 S. 466ff

20) OLG Frankfurt/M., NJW 1980 S. 597f

21) OLG Düsseldorf, NJW 1980 S. 599f

22) OLG Köln, AfP 1989 S. 683

23) OLG Hamburg, AfP 1987 S. 518

24) OLG Hamburg, AfP 1976 S. 137

금융중개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사건으로서 당시 독일에서는 장기간 사회의 비상한 이목을 끈 사건이었다. 레바하는 위 군인살해사건에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6년형을 마치고 출옥할 예정이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레바하가 그 사건에서 단지 종범에 불과한 자였을 뿐 아니라 과오를 낚고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위한 필요에서 레바하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보안판결시까지 그 프로의 방송을 금지시켰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판결에서, 어떤 범죄사건의 보도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익의 형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들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① 어떠한 범죄행위를 범죄자의 이름, 사진 또는 묘사에 의해 공개 보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자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그의 과오가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고, 그의 인격이 일반대중의 눈에 부정적으로 비쳐지게 되기 때문이다.

② 위 침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묘사의 방법이 문제로 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배려한 TV에 대한 보도는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신문에 의한 문자나 말에 의한 보도보다도 훨씬 더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크다. 이렇게 언론매체의 진파의 정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③ 그 범죄행위가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그 범죄자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와 그 범죄의 발생에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일반공중의 관심이 크다. 따라서 형사상의 범죄행위도 역시 언론이 이를 보도하여야 할 책무를 지는 그 시대의 주요사건에 속하는 것이다.

④ 그리하여 어떠한 범죄에 관련된 생생한 보도를 받아볼 정보의 이익은 행위자의 개인적 인격권의 보호보다는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자의 개인적 영역에의 침범은 소위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따라서 소위 경미한 범죄이거나 또는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성명을 특정하거나 사진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죄자를 특정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와의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큰 경우에는 - 중범죄인 경우에도 - 범죄자의 '언론에 보도되지 아니하고 싶은' 권리가 보다 큰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도가 허용되어야 할 경우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이제는 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지 아니할 경우와의 시간적인 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으로 확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속에서 석방되는 시점으로부터 범죄자의 사회복귀 내지는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될 이익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그 범죄사실에 대한 보도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의 한계가 그어질다고 할 것이다.

II. 신원공개(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1. 개 관

언론의 범죄보도가 언론의 공적 과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해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실명보도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범죄와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경우 반드시 관여한 인물의 신원에 관한 언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다수설도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대한 예외로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첫째 관계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 둘째 사인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고, 셋째로 그밖에 수사상 공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범인의 신원공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디어의 보도를 지체시킨다는 것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용의자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재판진행 단계에 따라 혐의는 구체화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각각의 단계에 상응하게 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여부 및 범위가 논란되는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도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신원공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은 물론이다.

2. 공적 인물인 경우

관계자가 공적 인물(Person des öffentlichen Lebens)인 경우에는 그의 시사적으로 의미있는 활동범위와 내용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범죄행위를 범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공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 특히 고위 공무원과 같이 그의 공적 생활에서의 지위 또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에 관하여 공공의 특별한 신뢰를 향유하는 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언론은 밝혀진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관계자의 성명을 묵비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수뢰한 장관, 간첩한 국회의원, 국가기밀을 누설한 장군, 화폐위조에 관여한 조폐공사의 이사, 금원을 유용한 은행의 이사회장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 언론 미디어에 의한 실명보도가 이의 없이 승인되는 이유는 법인의 공공생활에서의 지위 또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가 특별한 신뢰의 지위를 향유하며 문제되는 범죄는 그와 관련을 갖는다는 고려에 의해 뒷받침된다.²⁵⁾

물론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그 공개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비교형량에 의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기 위해서 요구되는 우세한 정보의 이익은 특히 중대한 범죄행위가 범해진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고, 사소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

이 부정됨이 원칙이다. 독일에서는 그에 대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독일 형법 제12조에 규정된 중죄(Verbrechen)와 경죄(Vergehen)의 구별이 원용되고 있다.²⁶⁾

그러나 공적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범죄행위가 그의 신원공개를 정당화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이나 그 후보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행위에 관한 실명보도의 필요성이 커진다.

문제되는 것은 일반적인 직무보유자의 경우에 그 공무원법상의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그의 비행과 관련하여 신원공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무원법은 모든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직업이 요구하는 존경과 신뢰에 부응하도록 이의 없는 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그의 비행이 이러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그 비행의 보도에 있어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평등화된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하등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며, 관료제기구의 익명적인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직무외적 요청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한 고려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에 의해 범해진 모든 범죄가 그 직무에 대한 적성과 자격에 관해 문제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구체적 직위의 중요성과 내용, 여론의 변화 및 장소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밖에 일반적인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그의 범행이 그의 시사적 활동범위와 연관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원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25) Engau, a.a.O. S. 340

26)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berichterstattung, 4. Auflage, Verlag Dr. Otto Schmitt KG, 1994, S. 447

고 보아야 한다.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통상적인 범인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에 의한 보도로 망신효과를 받게 됨에 다름이 없고, 그 폭로 역시 중대한 결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⁷⁾ 다만, 그의 범죄 자체가 시사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신원공개가 허용된다. 한 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관계되는 인물의 영상을 보도하려면 그 사건은 시사적 의미를 가져야 한다.

독일의 판례는 전직 독일노조연합(DGB)의장이 노조연합간부회의 석상의 연설에서 당시의 기사련(CSU) 당수 슈트라우스(Struab)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²⁸⁾ 또는 분데스리가의 대회에서 조작과 관련하여 위증을 행한 선수²⁹⁾에 대하여는 그 실명 및 초상 보도를 허용한 바 있다. 그에 반해 한 여배우가 자기의 연인을 살해하였다면 그녀가 여배우로서 시사적 인물의 속성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범죄는 그녀의 공공에서의 직업적 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범죄가 시사적 의미를 갖는가의 여부에 따르게 된다. 대학병원의 과장인 저명한 의사나 윤리적인 범죄를 범한 주교의 경우에는 그의 범행이 직무외의 것이라 하더라도 보도될 수 있다.³⁰⁾ 그 범행은 그의 직무가 지녀야 할 적성과 위엄, 즉 그의 시사적 역할에 대한 관련을 보이는 한에서 그의 시사적 활동영역과 내용적으로 연관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단지 혐의만 받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실명보도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소

문은 공적 인물의 시사적 활동범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파될 수 없다. 독일의 판례에 의하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공개가치가 생기게 되는데, 그에 관한 정보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증거도 없고, 관계자의 인격권이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생기는 경우 그 보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³¹⁾

예외적으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의 보도가 허용되는 것은 그것이 고도의 공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고, 나아가 그에 연루된 개인의 실명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증거에 의해 의심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이다.

[사례] 공사부정의혹표시 선거인쇄물사건 (1993)

서울고등법원 1993. 10. 7. 선고 93노151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자인데, 당시 다른 당의 공천으로 후보자등록을 한 공소외인(피해자)의 건축공사 수주관련 부정을 알리기 위하여 선거운동용 소형인쇄물에 "안산시 승격 이후 최대건축공사 부정비리 의혹사건을 심판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안산시 최대공사가 위 공소외인이 속해 있는 민주자유당과 안산시 간의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그의 처남이 상무로 있는 D건설사에서 위 공사를 수주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하여 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소외인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점에 대하여 그를 국회의원선거법 제174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여당국회의원

27) 독일 예술저작권법(KUG, Gesetz bet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Fotografie von 1907) 제23조 1항 1호 참조

28) OLG Koblenz, NJW 1978 S. 1816 ('Schweinehirt')

29) LG Essen, in: FAZ Nr. 8 vom 10. Januar 1976

30) von Häusler, in: Kriminalistik 1978 S. 177ff

31) Engau, aa.O. S. 346

구별! ① 공적 인물은 사적 범죄의 경우에도 시사적 의미를 갖는 경우 실명 보도가 가능함

으로서 건설분과위원이었고, 수시로 안산시청 등 관계자와 당정협의를 하였던 점 및 수주 D건설사는 안산시와 아무 연고도 없음에도 위 공사와 다른 공사로 수주한 전력이 있는데, 공소외인은 그 건설사와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점 등 여러 간접사실을 안정한 후 이러한 사실들을 일반 통상인의 추리에 의해 종합해 보면 위 공소외인이 위 D건설사에서 위 공사를 수주받도록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그 공사수주에는 상당한 특혜가 수반되었으나 그 공사는 결과적으로 부실하였다는 일련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외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혹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여 앞으로는 안산시 정과 관련하여 부정을 없애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그것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자가 세인의 주목을 끄는 사건을 계기로 이미 부정적으로 대서특필된 바 있었는데, 그렇게 공지된 세부사항에 의해 형사범의 혐의를 피할 수 없게되는 경우에는 그 신원공개가 허용된다. 또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 성실히 심사된 뉴스의 전달이 긴박한 이유 때문에 늦출 수 없는 경우, 예컨대 뉴스의 전달이 임박한 선거라든가 기타 긴급한 사태 때문에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명보도가 허용된다.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고발이나 입건에 의해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는 그 관련자의 신원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익명의 고소를 포함하여 모든 고소를 수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무혐의나 불기소로 처리되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의 혐의가 보도될 수 있는 경우는 고도의 공적 성질을 갖는 사안이거나 유명한 공적 인물이 관련된 경우로서 그 진실성이 상당한 정도로 담보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일부 하급심 판례가 취하는 이른바 '중립보도의 면책특권'(neutral reporting privilege)의 법리에 의하면 언론매체가 공적인 논쟁과 관련하여 공적 인물 간에 행해진 비난을 인용보도(引用報道)한 경우 그 기사가 사심(私心) 없는 정확한 것이면 그 비난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은 명예훼손책임이 면책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되는 단계에 이르면 혐의는 상당한 정도로 객관화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만큼의 보도가 허용되며, 상위에 속하는 공적 인물이라면 그 신원공개가 허용될 수 있다. 공적 인물의 체포 또는 그 도주의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는, 특히 구금 또는 도주 때문에 공공에의 등장이 예상되지 않는 때에는, 그에 관해 논의된 범죄를 보도할 계기를 준다. 공적 인물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판절차의 개시는 보도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관련자의 직업상 지위가 국민들에게 특별한 뉴스가치를 가지나, 관계자를 익명화함으로써 다른 소수의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되고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 성실히 심사된 뉴스의 전달이 긴박한 이유 때문에 늦출 수 없는 경우 또는 개별사례의 인식된 정황에 따르면 그 사건이 은폐될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원공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익명보도로 인하여 공적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언론에 의한 실명보도가 불가피하게 허용되어야 할 경우를 의미한다.³²⁾

3. 사인인 경우

관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면 그에 관한 신

32) Engau, a.a.O. S. 357f

원공개는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³³⁾ 사인에 의한 범죄는 시사성이 있는 것만이 보도될 수 있고, 그 관련자의 신원공개가 허용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이 더욱 가중된 사유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도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그밖에 의심할 바 없는 확증이 있음을 요한다.

첫째,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이어야 한다.³⁴⁾

둘째, 사인의 시사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보도가 ① 개별적인 식별징표를 포기하는 경우 즉, 누구의 범죄인가를 알리지 않으면 뉴스의 정보가치가 상실되고, 우회적으로 기술하더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감출 수 없거나 오히려 상관 없는 사람을 의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배경의 설명 없이 이해될 수 없는 사건에서 범인이 누구인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또는 ③ 범행의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 때문에 정치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 폭발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³⁵⁾

[사례] 타살의혹 보도 사건 (2000)

서울지방법원 2000. 8. 23. 선고 99가합30768 판결

이 사건은 법원이 공인의 지위에 관하여 처음으로 그 정의를 시도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아무리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육군 부소대장에 있든 자는 공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명보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소대장의 김모 중위가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은 당시 미디어에서 대서특필되었고 국회에서

진상파악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유가족들은 군 수사기관, 군 지휘부, 미군측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타살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방송사가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세밀하게 타살의혹을 제기, 보도하면서 타살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방송뉴스에 당시 육군공수특전 하사관으로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비중대 2소대 부소대장이었던 원고를 살인범으로 지목하였다. 원고는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사가 원고를 그의 상관인 김 중위의 살인범으로 방송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그가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그의 인터뷰 장면을 함부로 방송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측은 원고의 대북접촉에서 비롯된 범죄와 간접 가능성에 관한 보도와 김 중위 살인 혐의에 관한 보도는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범죄에 관한 보도라고 항변하면서, 원고를 '공무를 담당하는 공인이거나, 공인이 아니라도 사회 일반의 관심대상이 된 문제의 주인공으로서 공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실명이나 초상을 공개한 것은 익명보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사건이 있었고 그 범죄에 대하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범죄행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지 그 범죄인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건보도에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나아가 범죄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에 관하여 공공의 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공이 알 권리가 있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한 실명보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에 관하여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선거직에 종사하여 그 활동이 일정 지역사회나 국가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활동상황을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원고가 전방 최전선의 중요 소대 부소대장직을 맡고 있던 공무원이었던 점은 인정되

33) Engau, a.a.O., S. 410ff

34) Engau, a.a.O., S. 410f

35) Engau, a.a.O., S. 401

나 공무원이라 하여 모두 피고가 주장하는 공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구속되어 수감 중이어서 자기의 혐의에 대하여 별다른 반론조차 제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자를 두고 그가 범한 범죄사실 때문에 '공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사적으로 중요한 범행에 교사 또는 방조로 관여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그 범죄사전에 중요하게 합심 협력하였고 그 때문에 그와 밀접히 관련된 경우에는 그 신원명시가 허용된다.

범인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의 신원공개가 법에 의해 금지된다(소년법 제68조). 그에 대한 신원공개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란 후술하는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의한 경우뿐이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사인의 범죄에 대한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요건은 상술한 요건 이외에 ① 그 범행이 공공의 면전에서 범해진 것이거나, ② 타인에 대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특별한 이유에서 그에 대한 혐의의 보도가 필요한 경우 ③ 사법관청이 시사적 취급을 요하는 범행의 수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경우, 또는 ④ 그의 범행이 특히 임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투어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한다.³⁶⁾

범죄사실에 대한 실명보도가 있는 후 그 관계인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이러한 문제는 현실화된다(전술한 이혼소송 주부 정부폭력 오보사건(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참조).

범인이나 혐의자가 소속한 정당, 단체, 기관, 법인, 직업단체 등에 관한 언급이 허용되는 여

부도 위에서 설명한 바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다.³⁷⁾ 어느 단체에나 일탈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투어 여지가 없으나, 한 직무 또는 업무보유자에 대한 혐의의 공개만으로도 직위 자체에 대하여 권위의 상실과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상실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문체된 범죄가 그 단체의 공적인 임무 수행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이거나 그 단체의 소속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그 범죄의 설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속성의 언급이 불가피하다.

4.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따른 신원공개

사법 및 공공질서의 목적에 의한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범인의 공개수배(öffentliche Fahndung)나 주민에 대한 위협의 경고를 위한 경우를 들 수 있다.³⁸⁾ 이 경우에는 공적 인물이든 사인이든 다를 바가 없다.

우선 수사기관은 수사에 있어서 임의적인 수단 방법을 택할 수 없고,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수사관청이 수사상 공개수배(公開手配)의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그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수사 및 형벌권의 집행에 관해서 공공이 갖는 이익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인격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공개수배에 의한 신원공개는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피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 자가 미결구금을 벗어나거나 직무상의 감시를 벗어난 때와 자유형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36) Engau, aa.O. S. 433f, 442

37) Enagu, aa.O. S. 348

38) 독일 예술저작권법(KUG) 제24조 참조

받은 자의 집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행해진다.³⁹⁾ 이 경우 지명수배가 허용되는 이유는 형사사법의 영역에서도 성공적인 범인수색과 사안의 수사는 주민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범인의 공개수배는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불가피한 정도에 국한된다. 원래 형벌의 추궁이 국가의 일이고 사전적 수사절차는 공판절차와 달리 비공개 원칙에 따른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비공개원칙은 피의자를 부당한 명예실추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도 갖는다.

범죄에 관해 공중에 대해 알리는 일반적인 범죄보도와 달리 공개수배에 관한 언론매체의 보도는 범죄의 수사를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미 범해진 범죄에 대한 수사과정과 장래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이익에 봉사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매체의 활동은 필요하고 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범죄행위의 혐의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데, 그에 대한 공개적인 수배는 피의자의 지위 및 그의 사회적인 관계에 관해 공공의 의식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스 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공개적인 수배는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관해서 각별히 주의깊은 심사를 필요로 한다. 언론기관이 수배를 위해 개입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는 피해자를 위해 덜 침해적인 다른 수배조치가 충분히 성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그 조치가 균형을 잃지 않는 경우이다. 그 요

건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⁴⁰⁾

첫째, 현저히 중요한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 공개적인 수배는 개별적인 경우에 수사를 촉진함에 결정적으로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공개수배는 피해자의 명예를 장기간 동안 위협하는 침해적인 조치이므로 여타의 보다 덜 침해적인 조치가 모두 이행된 이후에만 채용될 수 있다(이른바 보충성의 원칙). 셋째, 공개적인 수배는 절박한 범죄혐의가 있거나, 이미 이행된 수사에 의해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 인정된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다. 그 자체가 범죄확인을 가능하게 하지 못하고 단지 피의자의 진술을 반복시키고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증거가 조사되어야 할 경우에 불과하다면 공개적인 수배상의 촉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는 원칙적으로 검찰 내지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 고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신청을 받는 미디어의 영향력의 폭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보도를 요청한 검찰 및 경찰이 부담한다.

이러한 요건은 예컨대, 상세한 범행의 묘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신고를 촉구하는 '미해결의 사건'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적용된다.⁴¹⁾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수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망신을 주는 효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주의깊게 심사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후적인 수사결과와 보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최초의 보도와 결과보도 간에 시간적인 차가 크지 않는 한 실명으로 보도한데 대해서 이의할 수 없다. 장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추가적인 계기가 없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과거의 보도에 연관짓는 것은 허용

39) Engau, aa.O. S. 327

40) Wenzel, 4. Aufl., aa.O. S. 439

41) Wenzel, 4. Aufl., aa.O. S. 439; Engau, aa.O. S. 486

되지 않을 것이다.

[사례] 지명수배자 현상광고 사건(2001)
서울지법 형사14단독 2001. 6. 20. 판결

이 사건 피고인 김씨는 동업자 K(여)씨와 K씨의 동거인 J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뒤 이들이 지명수배되자 모 일간지 광고란에 이들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상기자들은 부부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으로 도피중인 자들로서 신고하면 200만원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이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지명수배됐다고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광고를 통해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다만, 피고인이 채무자들에게 빌려준 돈을 빨리 변제받고 싶어 광고를 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채무자 2명 중 1명이 지명수배된 후 나타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례] '공개수배 사건25시' 사건 (2002)
서울고법 민사8부 2001나68046

손해배상청구사건, 법률신문 2002. 9. 9 보도

이 사건에서는 공개수배를 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의해 명예훼손의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를 다루었다.

원고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 2.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뽀판매총책'으로 묘사된 공개수배되자 국가와 KBS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박모씨 등이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원고가 자신들에게 히로뽀를 판매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KBS에 원고에 대한

범행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그 범죄사실에 관해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 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소속한 경계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담당경찰관들의 수사 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시하고,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원고를 히로뽀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하였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피의사실공표의 측면에서 이를 다루고 있지만, 본문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공개수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개수배 이외에도 범인의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특정인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는 경우이다.⁴²⁾ 수배되는 폭력범이 테러리스트로서 무장하고 있으며 언제나 사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 등 수배문이 경고와 결부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구체적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자나 도주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방조치로서의 경고는 형사소송이 계속중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42) Engau, a.a.O. S. 330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사책임

I. 서

언론매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우선 언론매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을 견제하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지를 감시한다. 그런데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우리나라 언론매체는 이러한 언론기능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려다가 그 독재정권으로부터 핍박받았던 피해자로서의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한 피해자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즉 가해자로서의 지위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여당 및 대통령까지도 언론의 불공정 보도를 문제삼고, 검사와 같은 권력기관들이 집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¹⁾ 이 경우에 피고(인)는 직접 언론 보도에 관여한 언론종사자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언론보도를 야기한 외부인(예컨대 정당대변인, 취재원제공자)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의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 내지 화해나 조정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형사고소를 많이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매체의 종사자를 고소하여 그들이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피해감정을 보상받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민사소송과 합의를 유리하게 이끄는 방책으로 형사절차가 활용되는 면도 적지 않다. 즉,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

손 동 권

건국대 법학과 교수

- 고려대 법대 졸업, 독일 Bonn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 UC Berkeley Law School 연구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현 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 공안행정학회 부회장
- 저서: 『형사정책(1998)』, 『형법사례 연구(2000)』, 『형법총칙론(2001)』

1)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소송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는 배금자,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22면 이하

기관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고 가해자에게 합의 중용의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²⁾

명예훼손소송에서 중요한 핵심은 어떻게 하면 피고(인)측의 헌법적 법익에 해당하는 언론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측(원고, 검사)의 헌법적 법익에 해당하는 명예권을 규범 조화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법상 증거규범으로 설정된 것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특별한 위법성조각 사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그 법규정 자체만에 의하면 피고인 면책의 범위는 너무 좁다. 왜냐하면 그 법 문언만에 의한다면 적시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벌을 통한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형벌의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취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까지도 허용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는 개인(특히 공적 인물)의 명예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최대의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의 법 문언보다는 더 넓은 면책의 가능성이 피고(인)에게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는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헌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법해석론과 입법론을 아래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II. 외국의 입법 및 판례의 태도

1. 미국의 경우

영미에서는 보통법상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졌다.³⁾ 그리고 1960년 이전까지 보통법상 명예훼손사건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명예권을 더욱 보호하는 엄격책임주의가 적용되었다. 즉, 그 당시에는 진실임을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보도자가 책임을 지고, 진실항변에서 진실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도자에게 부과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고의 과실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가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다만 진실항변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어 허위의 발언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이 문제되었다. 특히 1942년의 *Chaplinsky v. New Hampshire* 사건과 1952년의 *Beauharnais v. Illinois* 사건에서 판례는 명예훼손적 표현행위가 헌법의 보호범위밖에 놓여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⁴⁾

그러다가 1964년의 *New York Times Co. v.*

2) 특히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은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함부로 의혹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배금자, 앞의 글, 23면

3) 그리고 직접적(per se) 명예훼손과 간접적(per quod) 명예훼손으로도 구분되었다. 발언이 명예훼손적 내용임을 이해하기 위하여 외부적 요소의 입증이 필요하면 그 발언은 후자의 간접적 명예훼손이 될 뿐이다. 예컨대 “갑의 아내인 을이 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은 직접적 명예훼손이 되고, “을이 병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발언은 을이 갑과 배우자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 명예훼손이 된다. 이에 대한 소개로는 전 원열,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이론”, in: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2002년, 163면 이하

4) 다만 1920년대이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악의적인 비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의 주법원들은 판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23년의 *City of Chicago v. Tribune Co.* 사건에서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신용이 아무리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부패나 비능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처벌이나 제소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공공기관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Sullivan(앨라바마주 몽고메리시 경찰국장)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연방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그 이후로는 공인의 명예보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즉, 명예훼손의 문제가 보통법에서 헌법으로 격상되었고, 연방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상의 언론보도에 대한 헌법적 보호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보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즉 보도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허위여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보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도출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는 형사사건인 Garrison v. Louisiana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는 이러한 면책의 법리가 공직자(public officer)에 대한 명예훼손에 국한되었다가,⁵⁾ 그 이후 Curtis Pub. Co v. Butts(미식축구 감독) 사건과 Associated Press v. Walker(유명한 퇴역장성) 사건에서 뉴욕타임즈의 '현실적 악의'의 입증기준이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Gertz v. Robert Welch,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인을 일반적 공적 인물과 제한적 공적 인물(limited public figure; 자발적으로 공적 논쟁에 뛰어들어든 사람)로 나누어서 전자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의 보도에 관해서, 후자에 대해서는 그가 관여한 특정 문제에 관해서만 현실적 악의의 입증기준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

한 공적 인물은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에 접근 가능성이 크고 허위보도에 대한 반박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허위보도의 위협에 자신들을 자발적으로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 보다는 언론보도를 보호할 가치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1년의 Rosenbloom v. Metromedia, Inc.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인(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상인)인 경우에도 현실적 악의의 입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 이론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1974년의 Gertz(변호사) v. Robert Welch Inc.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Rosenbloom 사건에서의 판결을 위헌으로 간주하면서 원고가 사인인 경우에 현실적 악의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고 통상의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사인은 공인과 달리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중의 주목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명예훼손적 언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도가 공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인보다는 더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고(피해자)가 사인인 경우의 입증책임은 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판결에서 원고에게 보도내용의 허위성과 피고 언론매체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이것도 종래 보통법에서 피고가 진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변모된 것이다.

그 이후 여러 판례를 거치면서 언론이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이 정착되었다.⁶⁾ 즉, 오늘날 미국에서 언론보도는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 원고(피해자)인 공직자와 공인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공정한 논평으

5) 뉴욕타임스 기준을 공적 사직 이후에도 적용한 것으로는 Zerangue v. TSP Newspapers, 814 F2d 1066, 5th Cir. 1987
6) 기타 미국의 판례 및 이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는 전원열,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이론", in: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2002년, 171면 이하; 이재진, "언론관련명예훼손소송 추이비교",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38면 이하; 배금자, "보도와 명예훼손, 대안적 검토 -한미간 비교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31면 이하

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 면책될 수 있다.

2.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상 명예훼손의 죄는 제185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185조의 “Beleidigung”은 우리나라의 모욕죄에 가깝다. 명예훼손의 표현이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와 표현내용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직접 상대방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한다(사실적시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모욕죄와 다름). 본 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그 보호범익은 명예감정으로 해석된다(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보호범익을 외적 명예로 보는 우리나라 모욕죄와의 차이점).

독일형법 제186조의 “üble Nachrede”는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유사하다. 다만 독일 형법 제186조는 “이러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이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진실입증을 하면(따라서 소송상 실질적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음⁷⁾) 동 범죄로의 처벌은 부정된다(여기서 진실성 입증의 실제법적 효과는 객관적 처벌조건인 것으로 해석됨⁸⁾).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주장 또는 전파의 형식이나 주장 또는 전파가 이루어진 정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일형법 제192조(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의 형식모욕(Formalbeleidigung)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독일형법 제187조의 “Verleumdung”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 이외에도 독일

형법 제187조a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사실·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제189조에서는 사자의 명예훼손이 규정되어 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대해 독일 형법도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형법 제193조(Wahrnehmung berechtigter Interessen)는 “학문적·예술적·영업적 업적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위 또는 정당한 이익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의견의 발표,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 및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정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형법 제193조의 핵심표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였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이익형량에 의해 결정된다. 즉 보도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개인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한 지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행위의 적격성(geeignet)과 필요성(erforderlich), 수단의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적격성이 결여되고, 효과는 같지만 완화된 다른 수단이 있을 때에는 필요성이 결여될 것이다. 그리고 수단의 적합성(Angemessenheit des Mittels)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행위당시에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의무합치적 심사와 조회의 의무(Prüfungs- und Informationspflicht)를 이행하여야 한다.⁹⁾ 이를 위반하여 혐의사실을 진실하다고 경솔하게(leichtfertig) 믿은 경우에는 제193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독일의 판례는 공격적인 의견형성 내

7) Lenckner, in: S./S.-Kommentar, 186 Rn. 13

8) 독일의 h.M.: 예컨대 Rudolphi, SK, 186 Rn. 14; BGHSt 11, 274

9) 이 의무는 독일 판례에 의해 발전되었다는 Lenckner, S./S.-Kommentar, 193 Rn. 11

지 정치적인 의견형성의 사안을 통상적인 사안과 구별하여 이익형량의 경우에 개인의 명예권보다는 언론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둔다.¹⁰⁾ 특히 우월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일방적인 제한이어서는 안 되고 언론자유 중요성에 의해 다시 제한되어야 한다는 교차작용설(Wechselwirkung)의 원리와 “의심스러울 때에는 표현자유 이익으로”의 원칙이 정착되었다.

독일에서는 진실성 입증에 성공하면 다른 요건의 충족 없이도 면책되기 때문에 제193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그 진실성 입증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본 조의 적용범위로서는 ‘고의로 행하는’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제187조), 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사자명예훼손(제189조), 형식모욕(제192조)의 죄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제193조에 의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법성조각은 가능하다. 이 경우 독일에서는 행위자가 상기한 심사의무와 조회의무를 이행하여 법 위반의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낮추었다면 그에게 제193조의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의무의 범위는 개별사건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그 경우에 시간적, 직업적 및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적인 사실확인 가능성,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해 줄 상황의 중요성, 명예훼손의 정도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판단기준이 된다.¹¹⁾

3. 일본의 경우

일본 형법 제230조 1항은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적시 사실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23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 여부에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그런데 1947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를 고려하여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신설된 것이 바로 일본 형법 제230조의 2이다. 이에 따르면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고, 또한 그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하지 아니한다(제1항).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소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본다(제2항)”.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여 진실인 것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별하지 아니한다(제3항)”.

제1항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은 사실의 공공성, 목적의 공익성, 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증명으로 구성된다. 그 당시에 일본 판례의 태도는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 개인의 명예권을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였다. 그러다가 헌법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상기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을 완화적으로 해석하여 면책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위한 획기적인 것이 1969년 ‘夕刊 和歌山’ 사건(발

10) BVerGE 54, 136; 42, 243; 24, 278; 12, 113; 7, 207; BGHSt 12, 287(293)

11) Lenckner, aa.O.: 독일에서의 의무합치적 심사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소개로는 김재봉,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형사판례연구[8], 223면 이하

행인이 S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에 대해 '흡혈귀 S의 죄업(罪業)'이라는 표제로 게재한 사건)의 판결이다. 여기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오신하였고, 그 오신에 확실한 자료나 근거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¹²⁾ 더 나아가 1981년 '월간 펜' 사건(발행인이 創價學會 회장의 여성편력 등의 사생활에 관하여 보도한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공공성을 인정하였다.¹³⁾

그런데 일본의 다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을 위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되고, 증거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방법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임이 요구된다.¹⁴⁾ 이와 같이 해석되는 제1항 이외에 일본 형법은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하고(제2항), 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증명만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규정(제3항)을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법과는 다르다.

III. 우리나라에서의 형사책임 문제

1. 범죄구성요건

(1) 일반형법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

(외적 명예를 의미함)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제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단순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309조 제1항,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의 외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제311조)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와 모욕죄(제311조)는 친고죄이고(제312조 1항), 명예훼손죄(제307조)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다(제312조 2항).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면에 한정해서 본다면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당해 보도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 제2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309조가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12) 最高裁 1969.6.25, 형집 제23권 제7호, 975면; 구체적으로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大塚仁·外, 大コメンタル刑法 第34章, 55面

13) 最高裁 1981.4.16, 형집 제35권, 제3호, 84면

14) 최근에는 증거의 우월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소개한 윤철홍,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59면(大谷實, 刑法各論の重要問題, 1991, 157면).

부인된다.¹⁵⁾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언론종사자에 대해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실제로 적용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비방의 목적으로 언론매체에 취재원을 제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개인에 대해서 제309조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구성요건은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이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¹⁶⁾ 그런데 언론보도매체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보도하는 것도 거의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은 보도사실의 진실성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 내지 실제로 진실한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은 제307조 1항의 단순명예훼손죄이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는 적시사실이 진실이고 행위자도 진실이라고 믿고 한 경우, 적시사실이 허위이지만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한 경우(제2항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적시사실이 진실이지만 행위자가 허위라고 믿고 한 경우(이론적으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불능미수범이지만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의 조각사유는 바로 이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2) 특별형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행위의 형사사건은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당선자가 형사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무효사유가 되므로 낙선한 상대 후보자 측이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동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금지)와 제252조 제1항은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제1항)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제2항)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의 내용은 형법 제310조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여기에 '오로지'의 문언이 없는 의미는 다음의 판례태도에서 발견될 수 있다: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서는 공공의 이익

15) 대판 2000.2.25. 98도2188

16) 대판 2001.10.9. 2001도3594; 대판 2000.2.25. 99도4757

이 적어도 주된 동기가 되어야 하고 부수적으로 사적 이익이 포함되는 경우까지 만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적어도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이 공직의 담당자로 선출되도록 기여하는데 부족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는 '오로지'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그것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¹⁷⁾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최근 우리나라는 인터넷 망의 급속한 보급 확대에 인하여 '오마이뉴스'로 대표되는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이 또 다른 주요 언론 매체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의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¹⁸⁾ 현재 이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동 법 제61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제1항) 또는 허위의 사실(제2항)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있다(제2항은 제1항에 비하여 가중처벌).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항).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한 점에서 본 법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동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긍정될 수 없을 것이다.

2. 형법 제310조의 특별위법성조각사유

(1) 규범적 의미와 적용범위

명예훼손죄에도 형법총칙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개인명예권이라는 헌법적 법익 사이의 충돌을 규범합치적으로 조화하려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는 그 보장범위에 당연히 명예권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 출판은 개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면 헌법적 법익이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헌법적 법익이 충돌할 때 국가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일방적 희생 하에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7) 대판 1996.6.28. 96도977

18) 명예훼손의 문제를 포함하여 인터넷 언론의 특성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한 것으로는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21면 이하.

양 법익은 동일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은 가능한 한 모두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이지 다른 하나를 위해 한 법익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법익의 충돌을 민주적으로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된다. 그것은 양 법익의 상호제한을 통하여 서로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보장을 최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서 그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310조는 이를 위한 중요한 준거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310조는 제307조 1항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 그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제307조 2항이나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죄)의 위반행위와 비방의 목적으로 행할 것을 요하는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¹⁹⁾ 특히 판례는 비방의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실행한 경우에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²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²¹⁾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 비방목적의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석론

(1) 적용요건

1) 진실성과 공익성

본 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²²⁾ 다만 여기의 진실은 그 문언에 따른다면 객관적 진실을 의미할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허위이지만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한다.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조각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익성을 요구한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즉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²³⁾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19) 이를 확인한 대판 1999.4.23. 99도636

20) 대판 1995.6.30. 95도1010

21) 대판 2000.2.25. 98도2188: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9조 소정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로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22) 대판 1998.10.9. 97도158; 대판 2000.2.25. 98도2188

23) 대판 2001.10.9. 2001도3594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²⁴⁾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 자유(언론보도)의 이익과 개인명예의 이익 사이를 형량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이익형량 (situationsbezogene Interessenabwägung)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소위 유형적 이익형량(definitional balancing)의 방법이 널리 제도화되어 있다.²⁵⁾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 또는 사적 인물인지의 여부, 명예훼손적 사실이 공적 관심사항 또는 사적 사항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면책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규정에 이미 정치적 또는 공적 인물에 대한 면책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²⁶⁾ 그리고 독일에서는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의 국면을 내밀영역(Intimsphäre), 비밀영역(Geheimsphäre), 사사적 영역(Privatsphäre), 사회적 영역(Sozialsphäre), 공개적 영역(öffentlichkeitsphäre) 등으로 단계화 하여 그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효과를 차별화 하는 소위 인격영역론이 정착되어 있다.²⁷⁾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형적 이익형량의 방

식이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실무에서 채택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원일보 김정일편지 보도사건’에서 유형적 이익형량의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그리고 이 경우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생각건대, 우리나라도 실정법 그 자체에서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310조의 공익성 요건의 해석을 통하여 앞으로 유형적 이익형량의 방법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법성조각을 위해 요구되는 주관적 공익목적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³⁰⁾ 따라서 법문은 공익성의 요건과 관련하여서 ‘오로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판례

24) 대판 1998.10.9. 97도158; 대판 1994.8.26. 94도237; 대판 1995.11.10. 94도1942; 대판 1996.4.12. 94도3309;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상당수의 민사판례도 있다. 특히, 실명공표의 경우에는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대판 1998.5.8. 96다36395; 대판 1993.11.26. 93다18389; 그리고 언론보도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신문과 잡지를 구별하여 취급한 것으로는 대판 1988.10.10. 85다카29

25) 이와 같은 이익형량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이인호, “범죄보도와 면책사유 적용”,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49면 이하

26) 일본 형법에는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로 간주하는 규정(제230조의2 제2항)도 있다. 우리 나라에는 동일한 취지의 판례가 있다. 다만 범죄“자”에 관한 보도는 범죄 자체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인에 대해서는 익명보도의 원칙을 설정하였다(대판 1998.7.14. 96다17257).

27)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 전원열, “‘명예훼손’에 관한 각국의 이론”, in: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2년, 193면 이하

28)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

29) 동일한 취지의 최근 민사 대법원판례로서는 대판 2002.1.22. 2000다37524, 37531

30) 대판 2000.2.25. 98도2188; 대판 1998.10.9. 97도158; 대판 1989.2.14., 88도899; 대판 1993.6.22. 92도3160; 대판 1993. 6.22. 93도1035

는 그 의미를 '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태도에 더하여 적시사실이 진실이고 객관적으로 공적 사항에 관한 것이면, 설령 사익 또는 악의의 목적과 동기에서 행한 경우에도 위법성조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우리 형법의 해석상 주관적인 목적의 공익성을 면책요건의 하나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주장된다. 전자의 견해는 여론형성의 기초가 되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진실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올바른 여론형성을 촉진시킨다는 공익은 개인의 특정 시점의 외적 명예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³¹⁾ 그리고 후자의 견해는 사실의 공익성 이외에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목적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일본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것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목적의 공익성을 하나의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³²⁾

생각건대, 이러한 해석론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에 의한 면책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의 부작용도 형법체계상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정법에서는 비방의 목적 내지 악의의 동기에서 행한 언론보도는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임을 알면

서 행한 언론보도는 제307조 2항에 각각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의한 면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07조 1항의 행위에 관한 한 적어도 적시사실의 진실입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관적 동기에 관계없이 객관적 공익성만 충족되면 위법성조각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³³⁾

2)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보도한 경우

(가) 학설에서의 논쟁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착오한 경우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본다.³⁴⁾ 이 견해는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요건으로는 적시사실의 진실에 대한 객관적 존재와 공익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위법성조각을 위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착오의 해결에 있어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와 같은 법효과(즉 고의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됨)가 인정될 것이고,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유추적용의 제한적 책임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국내의 다수설)에 의하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범이 되고(그러나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될 것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범의 성립도 부정될 것이다. 그러나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위법성조각사유

31) 이인호, "범죄보도와 면책사유 적용",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53면

32) 윤철홍,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연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67면

33) 더 나아가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고, 입법론(독일의 입법례)으로서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피고인에 의해 증명되면 공익성의 심사 없이 면책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4) 오경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판례연구』6, 195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2002년, 88면; 김일수, 『한국형법 III』, 400면; 박상기, 『형법각론(2000년)』, 179면; 배종대, 『형법각론(2001년)』, 264면; 이재상, 『형법각론(2000년)』, 189면; 이정원, 『형법각론(2000년)』, 242면

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는 다수설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적시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불법을 인정하는 우리 나라 형법체계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위법성조각의 전제사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³⁵⁾ 즉 우리 형법상 적시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제307조 2항과 1항 사이의 형가중사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제15조 1항이 적용되는 형가중사유에 관한 구성요건적 착오에 머물게 된다(제307조 1항에로의 구성요건의 변경효과).

그리고 진실성에 대한 적극적 착오의 면은 제307조 1항 내에서 낮은 등급의 (고의)행위반가치만이 인정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다만 이 경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수설의 결론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독일에서 널리 논의되는 면책사유(Entschuldigungsgrund)의 충족 또는 상당한 이유 있는 허용착오(금지착오의 일종)에 의한 책임조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보는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는 무죄판결을 받을 뿐이다. 문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특히 경솔하게 믿은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다수설(제한적 책임설)은 이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이론상 과실범이 성립되지만 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주의의무도 이

행하지 않고 무작정 경솔하게 명예훼손행위를 감행하는 자도 무죄방면하여야 하는 이러한 주장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나 형법이론적 측면에서도 결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³⁶⁾

(나) 판례의 태도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착각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기사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³⁷⁾ 본 조에 의해 위법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³⁸⁾ 이것을 착오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학설에 의하면 주관적인 착오의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성의 조각 그 자체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착오의 문제는 고의조각(사실의 착오의 경우) 또는 책임비난(법률의 착오의 경우)의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태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독일 형법 제193조)는 허용된 위협에 기초한 위법성조각사유이고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위법하더라도 행위자가 의무합치적 심사를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소위 허용된 위협사상에 근거한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을 주장하여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³⁹⁾ 그러나 이 견해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간과하고 있다.⁴⁰⁾ 독일에서는 적시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제193조와는 별개로 제186조에서 객관적 처벌조건으로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착

35) 동지의 견해로는 문채규, “형법 제310조의 범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4호(1994년), 245면

36)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나라 다수설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한 필자의 글로는 “형법 제310조의 실체면과 절차면”, 『형사판례연구』[6], 206면 이하; 그리고 김재봉,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형사판례연구』[8], 209면 이하

37)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상당성의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한 것으로는 표성수, “명예훼손 면책사유로서의 상당성 기준 -언론의 주의의무와 관련한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00년 여름호, 33면 이하

38) 대판 1996.8.23. 94도3191; 대판 1993.6.22. 92도3160

39) 김재봉,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형사판례연구』[8], 202면 이하; 임웅,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의 착오”, 『고시연구』 1990년 6월, 148면 이하

40) 비슷한 취지의 비판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2002년)”, 88면

오 그 자체”는 단순명예훼손죄의 고의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곧바로 면책되기 때문에 독일 형법 제193조는 (객관적으로 진실사실이라도) 피고인에 의해 사실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와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에 대해서도⁴¹⁾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즉, 독일 형법 제193조의 요건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익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객관적인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는 위법성조각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형법 제193조는 허용된 위협사상에 기초한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독일에서 허위이더라도 의무합치적 심사를 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그것이 제193조의 요건인 공익성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지 착오 그 자체에 대해 위법성조각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는 공익성 이외에 적시사실의 진실성을 위법성조각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입법자의 의사는 허위사실적시의 위협을 수용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한 사실’ 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제310조는 허용된 위협사상에 기초한 위법성조각사유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독일과는 형법체계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우리나라 관례는 진실오신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 그 자체의 조각을 인정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우리나라의 관례태도에 대해서 실정법에 없는 독특한 관례원칙이 확립된 것이라

는 견해가 있다.⁴³⁾ 그러나 관례태도가 실정법에 없는 원칙을 확립하였다기 보다는 가능한 실정법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관례태도는 제310조의 실정법 문언(“진실한 사실로서”)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허용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을 한 것으로 이해하거나 언론자유의 헌법규범을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한 헌법적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관례태도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원리를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우 발전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입법론으로서는 비판할 여지가 없음). 다만 필자가 취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 내지 책임조각이 인정되어 동일한 무죄판결의 효과가 달성되는데(반면에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의 유죄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임), 형사절차에서 그에 앞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해 법 문언 그 자체와 다르게 해석하는 관례태도가 -즉 해석론으로서- 과연 바람직하고 큰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 적용효과, 특히 소송법적 효과

제310조의 요건이 입증되었을 때에 그 실체법적 효과가 -비록 이론적 견해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정법상으로는- 위법성조각사유인 것은 조문의 표제어(위법성의 조각)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제310조의 소송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관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

41) 비슷한 취지의 비판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2002년)”, 88면

42) 참고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별도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독일형법 제193조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자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적용시 문제되는 이익형량에서 요구되는 의무합치적 심사의 의무 내지 조회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즉 독일에서 그 점은 공익성 요건의 심사에 포함될 것이다.

43) 한위수,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30면

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⁴⁴⁾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고 있다.⁴⁵⁾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은 현실적 악의의 입증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윤리 및 비위 사실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특별히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무분별하게 무시한 경우에만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필자주: 형사소송이라면 검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등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⁴⁶⁾ 학설에서도 형법 제310조의 요건이 입증되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태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거증책임전환규정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주장된다.⁴⁷⁾

그런데 판례가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을 전환시키면서 증명력과 증거방법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론적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즉,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지부분은 이론적으로 크게 문제된다. 왜냐하면 형벌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법성과 관련된 요소는 -그것이 유죄를 구성하는 것이든 조각하는 것이든 구분 없이- 그 입증자료에 증거능력을 요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거증책임전환설에 의하면 거증책임을 지는 피고인이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법정된 증명절차로써 엄격하게 입증하여야 위법성조각의 효과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증명의 정도도 판례의 태도와는 달리 법관에게 확신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주장 입증하는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을 징표(추정)하기 때문에, 즉 상대방(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면 위법성은 불요증사실로 되기 때문에, 대개 위법성(조각)에 대한 입증의 필요(형식적 거증책임)는 위법성조각으로 형을 면제받으려는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피고인에게는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해 입증의 필요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⁴⁸⁾ 이 경우에 입증의 정도에서 피고인은 법관의 심증을 in dubio의 상태(즉 의심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의 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만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에는 전문법칙과 같은 증거

44) 대판 1996.10.25. 95도1473

45) 동지의 판례로는 대판 1988.10.11. 85다카29; 1993.6.22. 92도3160; 1996.5.28. 94다33828

46) 대판 1997.9.30. 97다24207; 대판 1998.5.8. 97다34563

47) 정성근, 『형법각론』, 1996년, 258면

48) 김일수/ 서보학(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주장책임이나 증거제출책임’ 만이 (형법각론, 2003년, 193면)

능력에 관한 원칙(즉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결국, 소송법적 효과와 관련된 판례의 논지가 이렇게 구성될 경우에만 이 판례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판례의 실제적 취지는 -단순한 입증의 필요가 아니라- 실질적 증거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면서 입증의 정도와 방법에서 피고인을 위해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킨 점에서 이 판례는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모순된 내용으로 피고인의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실질적 증거책임을 검사에게 인정하는 형소법의 대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 형법에서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이라는 문언상으로 보거나,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면 곧바로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피고인의 이익의 면에 있어서나 그 증거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 형법상으로는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은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만이 확정될 뿐 그것의 입증만으로 피고인이 곧바로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익성에 대한 입증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장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을 모두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적시사실의 객관적 진실성까지 그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체인 자유토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자유토론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객관적 절대적으로

진실한 사실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판례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 증거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하는 것도 언론자유와 핵심인 취재원의 비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의무와 조회의무를 이행하였는가의 입증에 ‘성공’하여야 하는 피고인은 부득이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 대해서는 그 요건이 입증되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실체법상의 효과와 검사에 의해 구성요건요소가 입증되면 추정되는 위법성의 효력을 일단 깨트리기 위한 입증의 필요(즉 형식적 증거책임)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소송법상 효과만을 가질 뿐이고 그 요건의 의심스러운 때에 피고인이 중국적으로 실질적 증거책임을 부담한다는 효과까지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 즉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의 원칙, 증거책임검사부담의 원칙은 형법 제310조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⁵⁰⁾ 이러한 원칙론이 증거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고 그 입증의 방법과 정도에서 피고인을 위해 완화시켜 이론적 모순을 가지게 되는 판례의 태도보다는 -비록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유사하겠지만- 우월할 것이다.

3. 입법론(개선방향)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의 문언은 그 자체로서는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의미할

49) 그러나 일본판례의 예를 들면서 취재원의 비익권은 진실오신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참작요소가 될 수 없다는 표성수, 앞의 글, 45면

50)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2003년, 193면; 박상기, 『형법각론』, 2000년, 179면; 이재상, 『형법각론』, 2000년, 190면; 배종대, 『형법각론』, 2001년, 264면; 임웅, 『형법각론』, 2001년, 188면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 진실사실에 한정된다면 언론 보도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진국의 추세와도 상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허위를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섭시키고 있다. 이를 포섭시키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로서'의 문언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문언을 폐지하면 독일 형법과 유사한 모양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진실성에 관한 착오에서 상당한 이유의 문제는 공익성 판단의 한 요소로 포섭될 것이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되기 때문에 독일 형법과 같이 사실의 증명만으로 면책되거나 일본 형법과 같이 공직자에 한하여 사실증명만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¹⁾ 왜냐하면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사회적 평가가 부당하게 과대 평가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교정 내지 재조정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²⁾ 특히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에 반하여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서는 아니 될 왜곡된 사회적 평가만이 보호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독일 및 일본과 같이 이익형량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규정과는 별도로 사실의 진실성을 입증하면 곧바로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법규정을 가진 체계에서는 그에 대한 실질적 거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

환되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거증책임이 전환되지 아니하는 이익형량에 기초한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규정에 의해서 면책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 형법 제187조a(정치인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와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들에 대한 면책규정)의 태도와 같이 별도의 공적 인물에 대한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술한 피고인에게 거증책임을 전환시키지만 그것만으로 면책을 가능케 하는 사실증명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일본 형법의 태도)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할 것이고, 중국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이 강조되는 형사절차에 한하여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입증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IV. 맺는 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무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피고인 면책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예컨대, 보도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언론기관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과 공적 인물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판례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태도는 매우 바람직하

51) 다만 이 경우에도 독일형법 제192조와 같이 모욕죄로의 처벌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고유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적시사실이 진실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서 -적어도 민사문제에서는- 위법성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52) 이인호, 앞의 글, 52면

발전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민주 국가에서 차지하는 언론기능의 중요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형벌을 통한 처벌은 최후수단에 머물러야 하는 형법의 보충성 원칙이 여기서도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무에는 아직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도 있다. 특히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특히, 공익성 요건)에 대한 실질적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시키는 판례태도는 -비록 입증의 정도와 방법에서는 피고인을 위해 다소 완화시켰지만- in dubio pro reo의 대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언론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 형법과 같이 사실의 증명만으로 면책되거나 일본 형법과 같이 공직자에 한하여 사실증명만으로 면책되는 제도의 입법이 검토되었으면 한다(다만 이 경우

에도 독일 형법 제192조와 같이 모욕죄로의 처벌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임).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실질적 거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환되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거증책임이 전환되지 아니 하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규정에 의해서(즉 독일의 경우 공익성 심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면책될 여지가 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 형법 제187조a(정치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와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3항(공무원 또는 공선에 의한 공무원의 후보자들에 대한 면책규정)의 태도와 같이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에 그들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현실적 악의의 입증제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 □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

권혁남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대국민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19일 전북 전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권혁남 위원회 주재발표와 장창남 위원(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재발표논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사회적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위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는 시민 토론광장(civic forum) 역할로서 미디어가 공공 문제에 대한 다원적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는 파수견(watchdog) 역할로서 미디어가 권력 남용을 감시해야 한다. 셋째는 동원 주관자(mobilizing agent) 역할로서 공중들의 정치,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생산된 뉴스와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바로 오보이다. 물론 실제와 완전히 같은 뉴스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언론활동에서 오보는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보를 인정할 수도 없고, 언론과 언론인 역시 오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나 오보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결코 이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들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손상된 인격권을 되찾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보

도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으면 어김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노리거나 '겁주기 전략'(intimidation policy) 차원에서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 연줄망 의식이 강하고 행동이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전라북도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졌다. 지난 2002년에 전북은 경기, 광주중재부에 이어 지방에서 3번째로 많은 언론중재 신청건수(25건)를 기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실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반론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 그리고 언론계의 예방책 및 대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의 경우도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해결되고 형사적으로 다스려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

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비록 그 행사에 있어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국가에 대한 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죄이므로 사적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사건의 비중이 구미의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다른 민사분쟁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에 앞서 형사사건화 하여 해결하려는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에 관한 일반적 경향과 연관이 있다. 그밖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어려움을 덜고 고소를 통하여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주고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려는 마음에서도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사건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 등에 대해 신체형이 과해지는 경우보다 벌금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현실 수사 관행이나 재판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혹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9조, 방송법 제91조).

언론기본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초창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탄압 수단 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 제도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이제는 언론분야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언론의 양적, 질적 팽창과 사회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의식의 고양으로

반론보도 신청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반론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피해자에게 신문,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3월 31일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는 반론보도청구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국민들 역시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 자료수집과 연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들어 법적인 분쟁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언론중재제도는 헌법상 가장 기본되는 두 기본권, 즉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야에서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의 언론사들처럼 언론소송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다. 언론인들의 언론소송 노이로제는 언론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부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취재행위와 보도를 꺼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비판적인 보도를 원칙적으로 제약한다. 언론사 입장에서의 언론소송 예방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언론사는 보도를 할 때에는 그 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 피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관하여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실어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특종보다는 소위 경쟁사에 물먹는 일이다. 그래서 신문의 경우 가관이 나오면 다른 신문사의 보도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낙중한 경우는 다른 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 취재하여 따라잡기식 보도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선행보도의 일부를 빼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빼끼기식 보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 익명으로 보도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보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도대상자는 익명보도의 경우에 실명보도의 경우보다는 언론소송 제기예 신중을 기할 것이고, 법원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보다 적은 액수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인의 경우는 사인의 경우보다 실명보도가 더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넷째, 언론중재는 합의만 성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언론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만약 이 과정에서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론사나 피해자는 모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출하면서 장기간 법정투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섯째, 언론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의 전문화와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언론사 차원에서는 자율적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사의 자기방어와 자율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언론사 내부 데스크와 편집인에 의한 자기검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행인 것은 우리 언론사들도 외국 언론사들처럼 변호사 기사열람제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방어 저널리즘의 핵심은 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열람제

다. 이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변호사로 하여금 해당기사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없는지 심사하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사의 수정 또는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외부인에 의한 언론의 자기검열 또는 자율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언론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들 수 있는데, 독자가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언론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는 장치다. 독자의 처지에서 볼 때에도 언론중재나 손해소송 등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 경제적인 손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모색단계에 있으며, 성과도 기대만큼은 못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들이 범부보험을 들고 있다. 기사보험은 언론사가 보험회사에 매년 일정액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기사와 관련한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물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에도 회사가 책임을 모두 부담하지만 기자들의 소신 있는 기사작성을 위해 기사보험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이밖에도 언론사들은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독자위원회 또는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하고 있다.

이제 언론사와 언론인은 변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타율적 통제를 불러들이게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언론의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만다. 따라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 등의 외적, 타율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토 론

사회정창남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회자 : 깊은 연구로 훌륭한 주제발표를 해주신 권혁남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참석자 여러분들이 토론주제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전반에 대해 갖고 계신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봉(전 증재위원) : 오늘날 우리 언론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 언론이 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불륜행위나 폭력행위가 일상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신문은 오히려 이념 갈등이나 사회 갈등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언론은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태도를 지양하고 교육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낙천(전주방송 대표이사) : 최근 언론계는 정부와 언론간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 : 흔히 교과서적으로 말해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의 관계는 정삼각형과 같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우리 언론 상황에서 정부와 일부 언론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거나 옳지 못하다고 확립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과 외국의 언론은 그 발전 과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신문은 진보와 보수가 분명히

구분되는 계급지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의 경우 계급지까지는 아니지만 선거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언론의 경우 숨어서 은밀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이때문에 선거가 끝난 후 새로 집권한 정부와 언론간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언론의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되어야 하지만 언론이 특정 정당을 대변하여 정부와 권력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순(부안저널 발행인) : 최근 부안에서는 핵 폐기장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 언론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이 공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폭행 당하거나 카메라를 빼앗기는 등의 수난을 받았습니 다. 언론이 정론직필을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성토를 당하는 현실로부터 기자와 언론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언론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진정한 주인은 독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다지 바람직한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안군 핵 폐기장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전북지역 언론은 지역 발전론적 시각에 치우쳐 보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현실을 이룰테면, 주민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한다는 이른바 '거울론'

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언론은 여론을 유도하고 현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는 소위 '목탁론'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각 언론사의 가치관이나 편집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문(국제와이즈맨 한국전북지구 총재) : 최근 들어 언론중재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재신청이 증가하는 원인을 언론의 횡포 증가, 중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식 고취 등으로 나누어볼 때 이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신청에 쏟아 부은 신청인의 노력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의 억지스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썰기를 박을 수 있는 결정권을 위원회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 질의자가 말씀하신 언론의 횡포 증대, 중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국민의 인격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이 모두가 중재신청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난 1987년 이후 사회 민주화의 분위기를 타고 언론사가 급증함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사이버 언론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의자가 표현한 것과 같이 언론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반국민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중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도 광고를 포함한 각종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재신청이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질 향상의 문제는 언론인의 윤리의식의 문제와 관계가 깊다고 봅니다.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선 언론인, 계보 기자와 같은 소위 '패거리저널리즘'은 언론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언론의 질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언론사의 인력부족 문제입니다. 언론의 질을 높이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언론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이 억지 주장을 펴 중재가 어렵다고 보아 불성립 결정을 하는 경우는 앞으로 위원회가 손해배상청구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고 중재제도의 부족한 면모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간다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호(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 : 주제발표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다시피 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했음에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또 해야한다면 이는 분명 언론사에게는 이중부담이 됩니다. 언론사가 반론보도를 게재했을 경우 위원회나 법원이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심리를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지, 그리고 반론보도를 게재했음에도 다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이중부담에 대해 발표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표자 : 현행법상 반론보도를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권리인 정정보도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언론사가 미리 반론보도를 게재한 후에도 신청인이 위원회에 별도로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언론사로 하여금 이중적인 부담을 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민(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 몇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한 질의자가 부안군 핵 폐기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북지역 언론이 공정보도를 했음에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질문자가 정부,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언론과 갈등을 빚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물

론 그 문제만 놓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이면을 보아야 합니다. 이른바 조·중·동이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공격이나 의도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지 않았다면 대통령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의 문제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언론의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도(전북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언론사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언론사가 어느 정도 특정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또는 '언론에 대한 액세스권' 등에 비추어 이러한 발언을 한 후보자와 이 발언을 공표한 언론사에 대해 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나 비방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거나 지침이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 : 먼저 발언한 내용의 진실성과 발언자의 공인성 여부를 따져 보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웅철(전북도민일보 사회부장) : 오늘날 인터넷 매체가 폭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표자 :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인터넷 매체도 정기간행물로 인정해 정기간행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채(무주군청 홍보계장)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직접 중재신청을 해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구제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합의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합의서 안에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고집하는 경우 신청인은 부득이하게 이에 응하는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중재부가 합의문안에 대해서만큼은 직권으로 결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 : 물론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항을 당사자 합의하에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의자의 요구사항이 중재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 열띤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끝으로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주신 주제발표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위원회를 일단 거치도록 하는 방안과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당시 소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법안에는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소유' 문제나 '편집권 독립'의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언론사의 입장에서 언론소송의 예방책과 대응방안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해 주신 주제발표자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도와 인권 : "SBS 뉴스추적"

김 덕 모

호남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I. 들어가며

1987년 6.29 선언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상황이 괄목할 정도로 개선되고 우리언론의 영향력과 역할이 강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언론이 막강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언론이 취재와 보도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취재원이나 일반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정정보도 청구와 명예훼손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언론인의 위법·비리에 대한 소추가 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언론계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권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적인 추세와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 양양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문제제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언론침해에 대한 판례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보다 신중해 질 필요가 있으며, 언론인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 그리고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6월 『SBS 뉴스추적』의 <“끝나지 않는 비극”-폭력에 무너지는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의 보도는 피해자의 신원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범죄보도와 관련 논란이 됐던 문제는 주로 피의자나 가해자

의 판결 전 신원 노출과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언론보도의 인권 침해 관련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그동안 범죄보도와 인권 관련 판례는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판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피의자 인권 침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사건의 개요

지난 6월 11일 『SBS 뉴스추적』은 <“끝나지 않는 비극”-폭력에 무너지는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뉴스추적』팀은 여러 번 <여성의 전화>측에 피해자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며, <여성의 전화>측은 신변사항 유출 절대불가

를 원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이모 씨(현재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 어머니의 인터뷰를 주선했다. <여성의 전화>측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수 차례 신변보호를 해줄 것을 뉴스추적 팀에 요구하였고, 전, 후, 좌, 우 모든 측면 모자이크 처리할 것, 음성 변조할 것, 방송 전 시사할 것 등에 관해 <여성의 전화>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SBS는 방송 전 시사는 편집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확답을 미뤘고, 6월 7일 같은 내용으로 방영된 『KBS 추적 60분』 때문에 이모 씨 어머니의 출연분량이 줄어 3~4분에 그칠 것이라고 하며, KBS 보다 더욱 확실한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피해자의 뒷모습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을 뿐, 정작 얼굴을 클로즈업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다(총 4회 방영되었음). 또한, 방송 전 프로그램 광고에 어머니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채 수 차례 등장시켰다.

이와 같은 방송이 나간 후, 이모 씨 가족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모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진술이 아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 것 같으며 지금도 눈물로 지내고 있다고 <여성의 전화>측은 밝혔다. 또한 이모 씨 어머니의 얼굴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방송됨으로 인해 이모 씨 가족은 방송이 나간 날, 자신들 뿐 아니라 친척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밤새 걱정으로 잠이 들지 못했고, 현재 까지도 계속 불안해하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가해자도 사망했기 때문에 보복의 염려가 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당 CP는 “아들의 감형을 바라는 엄마의 진실한 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제작진의 욕심 때문이지 다른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의 전화>측은 공중파 방송으로서 인권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항(비밀엄수 등의 의무-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사회적 호소력 등을 운운하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피해자의 눈물로 알리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기본을 간과한 인권침해이다.

둘째, 가해자를 피해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장면과 경찰의 자극적인 멘트를 그대로 방송하는 등 시청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선정적 보도는 사회의 모순이 증첩되어 나타나는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시청률을 위한 상술에 불과하므로 선정성에 기반을 둔 가정폭력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언론에 의한 피해자

의 신변유출문제 등 방송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방송 후 방송사의 사과와 손해배상은 이미 신원이 공개된 상황에서 피해당사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규를 제정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방송법에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의전화>측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장충동 청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 SBS를 상대로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SBS측에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 SBS 방송과 종합일간지를 통한 공개사과, 인터넷(www.sbs.c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해당방송 VOD 서비스 중지,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와 담당자 징계, 사건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SBS측은 <뉴스추적>을 통해 "6월 11일 방송 중 피해자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섭외에 도움을 준 서울 <여성의전화>에 피해를 입힌 점을 사과한다"며 사과방송을 내보

냈으며 방송위원회는 <뉴스추적>에 '경고 및 책임자 경고' 조치를 취하였다.

III. 보도에 따른 인권문제와 판례

1. 범죄보도와 인권

범죄는 대부분 인간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범죄보도는 수사독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 범죄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론화 유도과 범죄에 대한 주의, 경각심 환기, 수사협조 분위기 조성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대체로 그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범죄란 대부분이 반사회적, 비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자극적이어서 인간의 기본적 감성, 호기심을 그대로 반영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범인으로 지목되면 본인 외에도 가족, 친지까지도 주변의 지탄을 받기 십상이며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언론은 피

해의 중대성을 인식해 철저히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후에 무죄로 밝혀질 경우 범죄보도가 갖는 전파력, 침투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즉 일단 형사피의자로 보도되어 버리면 나중에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 이미 각인된 '범인=비도덕성'이라는 이미지가 쉽게 해소되지 않아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진실일 것이라는 선입관이 재판에도 영향을 주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훼손당하게 된다(헌법 제27조). 더구나 형사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선고를 받아도 구금일수에 상응한 법률적인 금전적 보상과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언론에 청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정간법 제20조)만이 있을 뿐 언론 재판으로 인한 낙인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2. 범죄보도와 관련한 판례

대법원은 1998년 7월 14일자 판결(96다17257)에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떤 내용

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해 반드시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보도 역시 반드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어떤 의미에서도 공적인물이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로서는 언론사가 적시한 범죄에 대해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들"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형사피고인

에 대하여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직접 수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보도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으며 그 개념이 불명확하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첫째, 혼자 있고자 하는 권리 둘째,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 셋째, 인격적 자율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1948년 인권선언은 제12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교환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와 명성에 대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유형으로는 첫째, 사적 공간과 생활의 침범으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에 대한 부당한 침입을 의미한다. 둘째, 사적인 일의 무단공표로 공표한 사실이 합리적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공중에게는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째, 공중에 오인시킬 공표로 어떤 사람에 대해 잘못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 도용으로 남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4.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판례

대법원은 1998년 9월 4일 판결(96다11327)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이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방송 승낙의 효력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피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는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5. 보도와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중재신청 건수는 1988년까지는 연간 약 50건 안팎에 불과했으나, 90년대에 이르러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다 1998년 이후에는 매년 600건 이상을 상회하는 등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의 전 단계로 중재신청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 및 대응정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언론윤리실천요강의 분류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직업윤리라기보다 개인의 실천윤리와 관련된 것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기자와 취재원간의 문제, 보도의 공정성 및 정확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직업

윤리와 실천윤리에 종합적으로 걸쳐있는 문제라 하겠다.

우리나라 법상 명예는 첫째, 사람의 인격적 가치 그 자체로서의 명예 둘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명예 셋째, 사람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명예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 평가로서의 명예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한 경우를 명예훼손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예의 주체와 특정으로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학설이며 대법원은 법인에 관해서도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민사사건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宗中)에 대하여 명예의 주체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둘째, 공연성으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의하면, 공연성 인정여부는 특정 소수의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일지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셋째,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족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범의(犯意)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방송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의 범위가 넓어서 한번의 잘못된 보도로도 그 침해의 정도가 회복키 어려울 정도로 크므로 이를 특별히 취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6.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례

대법원은 1988년 10월 11일 판결(94다33828, 95다카29)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

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V. 결론

이상의 판례의 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와 관련한 판례는 사회적으로 공공성이 인정되는 범죄보도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언론 출판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판례 역시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분노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편으로 육성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피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 이상 이는 원고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부당하게 사생활을 공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SBS <뉴스추적>의 담당 CP는 피해자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들의 감형을 바라는 엄마의 진실한 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제작진의 욕심이 때문이지 다른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이번 SBS 『뉴스추적』<“끝나지 않는 비극”-폭력에 무너지는 가정>프로그램의 피해자 신원 노출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는 법의 심판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인권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 사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50.7%)이 '많은 편이다'고 답변했으며, 최근 1년 동안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사생활침해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항의나 지적을 받은 기자도 전체의 10.5%나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자들은 이렇게 인권침해 보도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 언론사간 지나친 경쟁(38.4%), 언론인의 윤리의식결여(21.7%), 취재원의 부실한 정보제공이나 정보제공 거부(17.1%), 마감시간, 지면, 방송시간 등 제작상의 압박(13.7%), 언론인의 법,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8.6%) 등을 들고 있다.

이처럼 인권과 윤리에 대한 우리 언론인들의 허술한 의식은 여론을 선도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의 존재적 당위성을 스스로 부정해 언론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윤리강령은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임에 비해 언론인의 실천적 윤리의식은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윤리문제를 하나의

관행으로 치부해 버리는 우리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현실적인 실천적 윤리의식 제고방안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이처럼 미디어에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인권, 자유, 정의, 민주, 진실 등과 같은 윤리적 개념 위에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디어는 사회현상을 재구성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끊임없는 윤리교육이 강조된다.

셋째, 사회는 미디어 종사자들로부터 일정한 윤리적 행동을 기대하며 이것이 약속되지 않으면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신뢰에 위기가 발생한다.

넷째, 모든 권력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그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다섯째, 미디어와 그 종사자들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이를 향유하는데 따른 윤리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여섯째, 권력을 견제한다는 언론의 위임된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므로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들의 일반적 인 의식 및 지식수준이 높아져 과거 수동적인 수용행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여덟째, 미디어의 경제적 논리가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한다는 이념적, 문화적 논리를 압도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디어와 그 종사자들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은 언론의 인권과 윤리에 대한 의식 부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김우룡은 언론 종사자들이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문제를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론의 제작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센세이셔널리즘을 지양, 속보경쟁보다는 사실보도에 치중할 때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인권을 존중하는 휴머니스틱 저널리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선정주의 보도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상실하게 해 눈앞의 판매부수와 시청률을 위해서 공중의 신뢰라고

하는 언론의 힘을 말살시키는 보도의 선정성이 갖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정성 여부를 자가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척도로서 기자나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사를 취재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즉 소재가 지나치게 흥미본위가 아닌가, 감성적 소구를 하는 표현의 남발은 없는가, 또 사진과 그래픽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재연과 재현이 꼭 필요한가(방송보도의 경우), 중요성에 비해서 기사가 과대 포장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광재는 언론보도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언론인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신문윤리강령, 방송윤리강령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인들의 윤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사 경영진의 윤리의식 전환이다. 언론사의 경영진은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스스로 보호

하지 않으면 언론사도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수용자들의 매체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도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언론을 상대로 피해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사회풍토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사에 의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돈도 권력도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또한 언론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승소해도 소송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즉 권력화한 언론에 대해 정당하고 실익 있는 피해구제 방안이 없어 언론권력의 횡포를 구조적,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 범죄 보도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에 나타난 법정신임을 감

안할 때 특히 이번 『SBS 뉴스추적』의 <“끝나지 않는 비극”- 폭력에 무너지는 가정> 사건은 더욱이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됨으로써 치명적인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예방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 참고 문헌 -

- 김우룡. <미디어 윤리>. 니남(2000)
 김옥조. <미디어 윤리>. 중앙M&B (2001)
 김창룡. 경향신문(2003.09.05). “‘언론에 입은 피해’ 구체적 빈곤”
 방석호. <미디어 법학>. 법문사(1997)
 정진식. “신문윤리 40년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2001.09.07)
 여성의 전화(hotline.inbonet). 경과보고 및 성명서
 우먼타임즈 “ ‘SBS 뉴스추적’ 가정 폭력 피해자 얼굴노출 파문 ”. 2003.06.19
 한겨레신문. “ ‘뉴스추적’ 약속깨고 취재원 신원노출 ”. 2003.06.18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결집>(1998)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2003.06. 390호). “언론인의 취재보도와 직업윤리”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2000.06. 354호). “언론의 전문화·미디어와 윤리 2차 포럼”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2000.08. 366호). “언론의 전문화·미디어와 윤리 4차 포럼”

글, 글 쓰는 사람

노 향 기

서울중재위원 · 전 말지 발행인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다른 동물들도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문명이 아니면 글(문자)도 사용한다. 말·행동·글은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과 행동과 글이 항상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을 위해서건, 상대방을 위해서건, 법질서 등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제반규범 때문이건 생각과 달리 표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출된 말과 글과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믿고 어울려 사는 것이 보통의 인간관계다.

우리는 흔히 언행일치 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일상적인 생활은 말과 행동이 같으나 틀리냐를 따지지 않고도 어느 정도 돌아간다. 말에는 행동이 꼭 뒤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행동은 생각을 나타내는 최종의 표출이다. 말은 최종적일 수 있지만 행동이 있기 전 중간단계도 된다. 여기서 언행일치란 말이 떠올려 진다. 상대방 말을 믿지 못하는 인간관계란 생각하기 어렵다. 아무리 거짓말이 넘쳐나는 혼탁한 세상이라도 어찌할 수 없이 말을 믿고 관계할 수밖에 없다.

글의 경우는 어떤가? 글은 일반적으로 말과 행동보다 준비된 생각의 표출이다. 당사자와의 관계가 덜하고 주로 사회와의 관계다. 그래서 언행일치 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글과 글을 쓴 사람의 행동을 결부시켜 말하는 경우가 드문 듯하다. 모르면 몰라도 글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을 대하면 피하고 싶고 싫어지기 마련이다. 결국 글과 행동의 관계도 언행일치와 다를 것 없다. 어려운 시절엔 글 한 번 잘 써 가지고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행동 엉뚱한 것이 드러나면 그냥 손가락질 받는다. 글과 사람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언론인은 글을 가지고 사회와 관계하고 직접 영향을 미친다. 글이 독자(국민)의 관심을 끌면 관심은 글을 쓴 사람에게로 이어진다. 독자는 글을 통해 언론인을 만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옳은 생각 가진 사람이 좋은 글 쓸 것이며, 좋은 글 쓴 사람이면 행동도 그에 걸맞게 올바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속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상식으로 보면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한다. 언행일치 관련에서도 그렇듯이 어쩔 수 없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러다 뒤늦은 실망도 많이 한다. 원인을 찾는다면 글과 행동과의 어긋남에서 비롯될 것이다.

언론인이 글 잘 쓰면 인정받고 독자들로부터 박수가 따른다. 사회에서는 유명인사가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접도 받는다. 유명해진 만큼 영향력도 커지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 영화도 누린다. 그들은 머리가 있고, 영합하는데도 능하기에 흠잡을 데 없는 그럴듯한 글을

쓴다. 매일 지면에 등장하는 논객들의 지당한 말씀에 그들 스스로의 인격과 도덕성이 실려 있다면 언론계야말로 보기 드문 훌륭한 사람들의 집합소이다.

언론인은 글만 잘 쓰면 되는 것인가? 연예인들이 연기 잘하면 되고, 가수가 노래 잘 부르면 되듯이, 그런 것인가? 글 쓰는 것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기에 결코 아니다. 글로 해서 유명해진 언론인은 많아도 존경받는 훌륭한 언론인은 드물다. 왜 그럴까? 글 따로 행동 따로이기 때문이다. 글 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언론인들이 자신의 글과 행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힘들지라도 언론인이기에 항상 안고 가야하는 짐이다.

우리 언론계는 글 그럴 듯 하게 쓰고 행동 엉뚱한 사람들이 판을 쳤다. 글재주 이용해 영합하면서 명분 살리고, 뒤로는 실속 챙기고 누리면서 지도층 행세했다. 그들의 거짓과 위선은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끝내 안 드러나기도 한다. 드러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고는 살아야 하느니 등 궁색한 변을 내세운다. 우리 언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한량없다. 군부정권 하에서는 마지막까지 가버렸다. 글까지도 엉뚱하게 쓴 언론인들이 힘을 썼다. 역설적이지만 글과 행동을 일치시킨 사례이다. 그들은 양심에 어긋난 글을 쓰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능력 인정받고 군림했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도 팽개친 양심의 마비였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방어하는데 끊임없이 공세를 펼친다. 오늘에도 그들의 활약은 곳곳에서 넘친다. 이것이 우리 언론계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언론풍토에서 글 바르게 쓰고 바르게 행동하려는 언론인이 살아 남고 자기 위치 찾기란 어려웠으리라.

이제 우리 언론환경은 크게 변했다. 부끄러운 과거를 언론인 스스로 떨쳐버리지 못했지만 정치권력에 의한 탄압은 벗어났다. 철저한 자기 반성 없이 자유도 주어졌다. 양심에 따라 맘대로 글 쓰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누구를 탓하고 변명을 내세울 아무것도 없다. 탓할 것이 있다면 자기 양심이요 자신의 이해관계이다. 언론이 제 역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 자유가 주어졌다면,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못받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인들 책임이다.

충격적이지만 오늘의 언론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집단을 꼽는다면 아마 정치권과 첫손가락을 다룰 것이다. 억울해 할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독재권력의 하수인 노릇 해왔던 과거에 대한 업보만이 아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고, 외압 없이 글 맘대로 쓰는 오늘에도 글 그럴 듯 하게 쓰고 행동 엉뚱한 잘못된 체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언행일치가 쉽지 않듯이, 글과 같이 행동하는 것, 쉬운 것 더욱 아니다. 그렇지만 독자는 그렇게 믿으려 하고, 믿음이 깨질 때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자세이다. 그런 노력을 하는 언론인이 많아질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진정 언론이 발전할 것이다. 사회가 아무리 병들고 썩었다라도 교육과 언론만 제 역할 한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한 어느 분의 말이 생각난다. 그만큼 언론은 중요하다. 언론이 제 기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다. 양심적이고 도덕성 있는 언론인이 많아져야 가능하다. □

미국 2002년 언론관련 명예훼손소송, 언론사의 역대 최고 승소율 기록

MLRC(Media Law Resource Center)가 2003년 발표한 "언론소송과 배상액에 관한 보고서"(MLRC 2003 Report on Trials and Damages)에 따르면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언론매체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인 언론사는 5번 중 4번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LRC가 1980년부터 언론소송에 관한 자료를 추적한 이후, 가장 낮은 소송 판결건수이자 가장 높은 언론사의 승소율을 기록한 한 해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2002년은 1980년 이후로 100만불이 넘는 배상액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유일한 해이다.

198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재판이 진행된 452건의 소송 중, 원고가 승소해서 실제로 배상을 받은 재판은 전체 소송의 20%인 91건이다.

2002년의 소송을 포함하면, 원고는 1980년 이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477건의 소송사건에서 약 63%인 296건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 중 24%인 66건은 항소에 의해서 피고의 승소로 변경되었고 항소가 유지되었던 269건 중 125건(46.5%)이 상소중 피고승소로 변경되었다.

언론소송 판결건수의 감소라는 지난 22년간의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2002년 언론관련 소송사건 또한 최소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판결 건수는 1980년대는 26.3건이고, 1990년대는 21.4건이다. 최근 2000년대의 연간 평균 판결 건수는 11.3건이다(2000년 13건, 2001년 16건, 2002년 5건).

2002년 80%의 언론사 승소율은 이전의 연간 최고기록인 1987년 70.6%를 경신한 기록이다. 연간 판결수의 점차적인 감소에 따라 언론사 승소율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1980년대에 피고인 언론사는 34.8%가 승소했다. 90년대에는 41.4%가 승소했고, 최근 2000년대까지는 52.9%의 재판에서 승소했다.

2002년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유일한 재판은 Georgia사건이다. 일상적인 교통위반으로 검거된 남자가 경찰 유치장에서 죽은 후, 부모안관이 그를 "살인자"로 지칭한 지역신문의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22만5천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항소를 포기한 사건은 1990년대가 1980년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1990년대 18.9%, 1980년대 8.7%). 그리고 1990년대의 사건이 1980년대 보다 더 높은 비율로 항소하기에 앞서 해결되었다(1990년대 18.9%, 1980년대 8.7%).

그밖에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2000년-2002년 약 53%의 언론사 승소율은 대체로 1990년대의 41.1%, 1980년대의 34.8%의 승소율 보다 높다.

또한 2000년-2002년 재판의 평균 배상액은 1990년대의 평균 약 5백만 달러보다 적은 290만 달러이다. 하지만 배상액 중간 순위인 60만 달러는 1990년대의 중간인 37만2천5백 달러보다 는 높았다.

한편 매체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에 재판까지 진행된 신문사 상대의 소송건수는 1980년대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TV매체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매체별 승소율의 경우 신문사는 33.2%인 반면, TV매체는 1980년대 이후 49%로 나타나 신문사보

다 더 높은 승소율을 기록했다.

([http://www.Mlrc.com/Press Release/Trial Records Set in 2002](http://www.Mlrc.com/Press_Release/Trial_Records_Set_in_2002)) □

확정판결이 아닌 1심 재판부의 유죄판결만을 기초로 한 보도는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일본 東京지방법원 판결-

東京지방법원 민사 제30부는 2003년 6월 30일, 1969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은행폭파 테러사건과 관련, 일본에 귀화(1989년)후 종신형 판결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의 남성이 “테러리스트”등으로 보도되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총액 2천2백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소송에서 총 300만엔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체별로는 <サピオ>를 발행하는 소학관과 집필자에 150만엔, <アエラ>를 발행하는 아사히신문사에 50만엔, <마이니찌신문>과 <선데이마이니찌>를 발행하는 마이니찌 신문사에 70만엔, <フォカス>를 발행하는 신조사에 30만엔이 각각 선고되었다.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로 2001년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법원에서 종신형의 판결을 받았었고, 문제가 된 기사는 200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보도되었다.

각 신문과 주간지는 사건의 개요, 원고가 이탈리아에서 기소된 사실, 신병인도를 둘러싼 일본과 이탈리아 양 정부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

피소된 언론사들은 원고의 기소전력이나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견해를 보도한 부분은 진실

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도 그것을 가지고 바로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 상급심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 기사의 진실성을 부정했다.

이에 <サピオ> 집필자는 7월 14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3년 7월 22일자) □

범죄자에게 3억원 상당의 취재대가를 제공한 데일리미러지, 보도실천강령 위반 논란

영국에서는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한 사람이 한 대중지에 자신의 체험을 제공해 12만5천파운드(약3억원)의 보수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범죄보도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며 PCC도 이에 대해 보도실천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4년 전 절도 목적으로 자택에 침입한 16세의 소년을 총살한 혐의로 체포된 토니 마틴 씨는, 지난 7월 28일 가석방 직후 보수 지불을 조건으로 대중지인 데일리 미러와 독점인터뷰 계약을 체결, 29일자 지면에 7면에 걸쳐 그의 체험 내용을 게재했다.

또 민영 텔레비전방송국인 ITV도 출연료를 지불하고 마틴 씨에 취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보도실천강령에는 사회적 관심이 아주 높지 않는 한, 보도기관이 취재를 위해 범죄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PCC는 데일리 미러 등의 행위가 실천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무부에서도 범죄자가 취재, 보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데일리미러의 피어즈 모건 편집장은 “마틴 씨의 체험은 사회적 관심사”라고 주장, 취재방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3년 8월 5일자) □

뉴욕타임즈, 옴부즈맨 제도 도입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즈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사를 검증할 ‘옴부즈맨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빌 켈러 편집주간이 7월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의 일련의 기사 날조·조작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옴부즈맨은 독자로부터 들어오는 불만에 대응하고 취재를 검증하게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칼럼도 집필하여 게재하게 된다. 실시기간은 1년 예정이며 계속 여부는 1년 후 결정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즈는 옴부즈맨 제도 외에도 정확한 기사작성과 보도윤리에 관한 기자교육을 담당할 책임자와 기자의 고용과 승진 등을 감독하는 책임자 등 2개의 직위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신문협회보』, 2003년 8월 5일자) □

영국정부, 프라이버시법 제정 거부

영국 하원의 문화·미디어·스포츠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프라이버시법 제정 등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영국정부는 이날 이 법의 제정을 거부했다.

조웰 문화·미디어·스포츠장관은 “자유로

운 보도는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결한 것이며 자율규제가 최선의 규제시스템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유럽인권규약을 비준한 후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됐으며, 특별위원회는 올해부터 보도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심의해 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보도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프라이버시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으며 언론발전처리위원회(PCC)의 크리스토퍼 메이ер 위원장은 “PCC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위원회 구성상 언론인보다 일반인의 위원수가 많아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PCC와 신문·방송계가 협력하여 집단적 과열취재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PCC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의 원칙은 지지하지만 판단이 언론 측에 관대하다”고 지적, “독립성과 권한강화를 위해 행동강령의 개정, 벌금형의 도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문협회보』, 2003년 7월 1일자) □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미디어 소유규제완화’ 법안 부결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이 2003년 6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미디어 소유규제완화 법안을 부결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법안에는 신문-지상파 TV방송국의 상호소유규제 철폐, 외국기업에 의한 보도기관의 주

식보유 제한완화 등이 포함되어있다.

2002년부터 계속된 심의에서 야당-노동당(ALP) 등은 미디어의 과점화를 우려,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현행법은 TV방송사업자가 주요도시의 신문사의 주식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과 외국기업에 의한 TV방송국의 15% 또는 주요지의 2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심의에서 특히 신문-지상과 TV방송국의 상호소유규제철폐에 반발한 ALP는 주요 도시 일간지의 약 3분의 2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루퍼트 머독 씨가 네트워크 TV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리처드 알스턴 통신·정보산업·예술부장관은 “법안의 부결에 의해 미디어기업은 성장과 확대의 기회를 거부당해, 경비절감과 서비스 삭감 이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3년 후반에 다시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협회보』, 2003년 7월 15일자) □

일본방송계, 방송윤리 자율기구 통합 후, 불만신청 급증

일본 방송계는 방송윤리의 자율적인 규제강화를 위해 기존의 3개 위원회 기능을 통합, 일원화한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약칭=BOP, 방송윤리기구)를 지난 7월 1일 발족시켰다.

BOP는 종래의 '방송프로그램위원회',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C)',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청소년위원회)'등 3

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받은 사무국 체제를 정비하여 각 위원회를 담당하는 조사역을 증원하는 한편 시청자 담당자도 2명을 증원, 창구를 일원화했다.

시청자 담당창구는 상시 4인 체제로 하고 총괄 책임자를 두어 전화나 팩스, 우편, BOP의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들을 정리하여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했다.

시청자 담당창구가 일원화되자 시청자들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에 관한 의견(요망, 불만을 포함)이 급증, 지난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 동안 915건이나 접수되었다. 7월 2일 하루동안 만도 16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창구일원화 이전인 지난 5월 한달 동안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에서 접수한 의견(1일 평균 21건)의 약 7.5배나 된다.

발족 후 약 3주 동안 들어온 내용을 분류해 보면, ①방송의 전반적인 문제와 프로그램에 관한 것 32.7% ②청소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것 16.4% ③BOP의 역할 등에 관한 문의 8.7% ④인권,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것 4.6% ⑤기타 정신적 고통 등에 관한 것이 37.6%로 나타났다.

인권, 프라이버시 등에 분류된 의견에는 '프로그램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항의', '사건 보도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 관한 의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BOP는 민간방송연맹과 NHK가 1969년 5월에 설치한 '방송프로그램 향상위원회'와 1997년 5월에 설립한 BRC의 기능을 통합하여 제3자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방송계가 자율규제체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BOP는 민방 20개사와 NHK로 구성되었으며 연간 운영비는 3억5백만엔이다.

(『신문연구』, 2003년 8월호)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지가 바랍니다.

신청인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면담을 건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220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이 해 성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3. 7. 1.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노대통령-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 제하의 기사 (2003년 6월 1일자 5면)

내 용 :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성 홍보수석비서관이 언론사 사주들과 노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안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해성 수석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언론사 오너들 즉, 사장이나 회장들과

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며 “그런데 공직사회가 지켜보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청와대 관계자들은 “최근 정무수석실과 홍보수석실 안에서 언론과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사주와의 대화는 노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한겨레 2003년 6월 11일자 5면 『“노 대통령 - 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이 사건 기사의 요지는 신청인 청와대 이해성 홍보수석이 대통령과 언론사주들과의 면담을 주선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청인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국정홍보 및 언론정책을 집행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론사 사주들과의 면담을 건의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노 대통령이 방일중인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사회가 지켜보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언론사주와의 대화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

신청인 이해성이 언론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인 양 곡해해 합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마치 과거 권력처럼 언론과 밀월관계를 맺고자 하는 언론관을 가진 것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보는 6월 11일자 5면 『“노 대통령-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이라는 기사에서, 이해성 홍보수석이 노 대통령의 언론사주들과의 면담을 건의했으나 노 대통령이 거부해 청와대 안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이해성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에게 언론사 사주들과의 면담을 건의하거나 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6월 11일자 5면 『“노 대통령-언론사주 회동 주선하려 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해성 홍보수석이 언론사 사주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여 청와대 안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해, 이해성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과 언론사 사주들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이 없고 노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해성 수석은 자신이 “공직사회가 지켜보고 있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003년 7월 10일까지 5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반론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노대통령-언론사주...”)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7월 8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재정경제부가 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226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김 진 표)

피신청인 : 머니투데이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3. 7. 4.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 『카드사 'ABS·CP발행 제한' 비상』 제하의 기사 (2003년 7월 2일자 6면)

내 용 :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산담보부증권(ABS)과 기업어음(CP)을 자기자본의

10배 수준으로 제한하고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할 경우 카드사들은 자산을 사별로 최대 7조원까지 축소하거나 대대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머니투데이 7월 2일자 6면 『카드사 ‘ABS·CP발행 제한’ 비상』 제목의 기사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들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였으나, 재정경제부는 동 기사 내용과 관련한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신청인은 SK글로벌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켰으며, 대규모 증자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기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머니투데이 7월 2일자 6면에 『카드사 ‘ABS·CP발행 제한’ 비상』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들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재정경제부는 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새로이 규제하는 내용의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보 7월 2일자 6면 『카드사 ‘ABS·CP발행 제한’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카드사의 자금조달을 새로이 규제하는 내용의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머니투데이 금융면에 2003. 7. 19.까지 상자 기사로 게재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머니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7월 17일자 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청와대가 추진중인 ‘공무원 패널단’이 공무원 조직 내 별도의 사조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232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문 희 상)

피신청인 : 조선일보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3. 7.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조선일보 : 『공무원 패널단 회원가입 권유』 제하의 기사 (2003년 6월 17일자 3면)

내 용 : 노무현대통령의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과 관련, 정부는 '개혁조직'으로 4~5월부터 부처별로 업무혁신팀을 운영하는 것 외에 4~5급 공무원들을 뽑아 '주니어 보드제' (중간 관리자 모임)를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비공개리에 가칭 '공무원 패널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업무혁신팀은 해당 부처의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노 대통령은 13일 '국가 개조', '문화 개혁', '(대통령에)줄을 서라'는 등의 표현과 함께 개혁조직을 거론, "(중국)문화혁명시대의 홍위병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중략)

가입신청자는 이메일을 통해 수락 동의서를 보내게 되어 있다. 박 수석의 이메일을 받은 한 공무원은 "이메일 발송대상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 내부에 별도의 사조직을 만들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조선일보 2003년 6월 17일자 3면 『공무원 패널단 회원가입 권유』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노 대통령의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처별 업무혁신팀 운영 외에 '주니어 보드제'를 구성하고, 청와대는 별도로 비공개리에 '공무원 패널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무원 패널단'은 '국민 참여마당' 홈페이지의 국민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데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해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개리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추진하는 '공무원 패널단'은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과는 전혀 무관하며, 정부 정책이나 부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별도의 사조직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중재대상 기사를 통해 일반 독자로 하여금 노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이 행정 각 부처의 업무혁신에 비공식적으로 개입하여 공무원을 사조직화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어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지난 6월 17일자 3면 『공무원 패널단 회원가입 권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 대통령의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비공개리에 '공무원 패널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추진하는 '공무원 패널단'은 '부처 내 공식·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과는

무관하며, 정부 정책이나 부처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별도의 사조직이 아니며, 청와대 '국민참여마당' 홈페이지의 국민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데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해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개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7일자 3면 『공무원 패널단 회원가입 권유』 제하의 기사에서 “노 대통령의 ‘부처 내 공·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 발언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공무원 패널단’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공무원 패널단은 부처 내 공·비공식 개혁주체조직 구축과는 무관하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국민제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데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여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2003년 7월 21일자 2면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사진식자 24급 고딕체 크기로 하고 본문은 본문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조선일보 : 『‘공무원 패널’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7월 21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서울 모 구청에 재직시, 승진을 위해 구청장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서울중재233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국민일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3. 7. 1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국민일보 : 『“구청장 돈 받고 승진·보직변경”』 제하의 기사 (2003년 6월 14일자 18면)

내 용 :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 (부장 검사 김필규)는 13일 서울시 모 구청장 A씨가 승진 대가로 직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A씨의 6개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6월 구청장 선거가 끝난 직후 직원 김모 씨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김씨 외에 11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직후인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 다른 자치단체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11명의 공무원 역시 대부분 승진했거나 좋은 보직 또는 상급단체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은 국민일보 2003년 6월 14

일자 18면 『“구청장이 돈 받고 승진·보직 변경”』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2000년 6월 당선된 모 구청장 A씨(가관 신문에는 L씨, 인터넷에도 L씨)”,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 다른 자치단체로 옮긴 직원 김모씨” 등으로 이니셜을 사용하여 익명 보도를 하였으나, 보도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독자들은 직원 김모 씨가 신청인을 지칭하고, 모 구청장 A씨(가관신문 L씨, 인터넷에도 L씨)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신청인이 승진의 대가로 3,000만원을 A구청장에게 주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신청인은 중재대상 기사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지는 2003년 6월 14일자 18면에 『“구청장이 돈받고 승진·보직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2000년 6월 구청장 선거가 끝난 직후 직원 김모 씨가 서울 모 구청장 A씨(가관L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3,000만 원을 건넨 직후인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위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과장·왜곡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본보는 당사자인 김○○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기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6월 14일자 18면 『“구청장이 돈받고 승진·보직변경”』 제하의 기사에서 모 구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보도하면서 2000년 6월 구청장 선거가 끝난 직후 서울

모구청장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넨 직원 김모 씨가 2001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김○○ 씨는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국민일보 2003년 7월 25일자까지 7면 하단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정정보도문)는 중재대상기사의 중간제목(12명에 수천만원씩...)과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국민일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7월 22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팔복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폭행사건 신고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03전북중재8

청 구 명 :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팔복파출소 (소장 임 중)

피신청인 : 전라일보

중 재 부 : 전북중재부

접 수 일 : 2003. 7. 1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전라일보 : 『“파출소 조사 과정서 경찰관이 폭

행-폭언”』 제하의 기사 (2003년 6월 27일자 4면)

내 용 :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책임질 민생치안의 최일선 보루인 파출소에서 한 시민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부상을 당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순찰차를 이용, 파출소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문을 열어주던 경찰관이 재차 문을 닫아버리는 순간, 다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략)

이로 인해 김씨는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차량 문에 끼여 타박상을 입었고 이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부상을 입었다면서 항의하자 옆에 있던 최모 부소장이 “피병을 부리는 당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씨는 부상여부를 증거로 삼기 위해 사진촬영을 하는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고개를 들어라, 옆으로 누워라”는 등 7차례에 걸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씨는 “경찰이 피해를 입은 자신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당시 실내마차에 있던 한 택시기사의 진술만 들은 후 사건조서를 상호 폭행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후략)

신청인 주장

신청이유 : 신청인 팔복파출소는 전라일보 2003년 6월 27일자 4면 『“파출소 조사과정서 경찰관이 폭행-폭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중재를 신청한다.

피신청인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제보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신청인을 마치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경찰관인 것처럼 표현하여 성

실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를 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구독자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해 불신을 가져오게 하였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본사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본지 지난 6월 27일자 4면의 『“파출소 조사과정서 경찰관이 폭행-폭언”』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본지는 ‘순찰차서 내리던 40대 시민’, ‘경관이 문닫아 정강이 부상’, ‘항의하자 “무고죄 고소”으뜸장’ 등 기사에서 전북북부경찰서 팔복파출소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폭언하고 협박(으뜸장)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지연출동에 대해 항의하고 이 경장이 순찰차 문을 닫아 김씨가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경찰은 김씨의 폭행사건 접수시 즉각 출동하였고, 경찰관에 의해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은 김씨가 꾸며낸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접수했던 고소를 취하하고 파출소를 방문하여 파출소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모 부소장이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김씨가 경찰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고 파출소직원이 7차례에 걸쳐 사진촬영을 하면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며 당시 김씨가 진술하는 피해부분을 증거로 삼기위해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부위 2차례만을 본인 승낙하에 사진촬영하였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는 없음이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같은 장소에 있던 한 택시기사의 진술만 들은 후 상호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진술내용이 틀려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김씨가 주장했던 경찰관의 폭언·폭행 및 부상부위와 경찰관의 으름장 등은 김씨가 꾸며낸 허위 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김씨의 허위주장임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관의 폭언·폭행 그리고 인권침해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실제적 진실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당사는 이렇게 사실과 달리 왜곡보도하여 전북북부경찰서 팔복파출소 직원 여러분과 전북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부제목 : “조사과정서 시민에게 폭행·폭언

한적 없다”

• 내 용 : 전라일보가 지난 6월 27일자 4면 『“파출소 조사과정서 경찰관이 폭행-폭언”』 제하의 기사에서 김모 씨(48)가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팔복파출소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김모 씨가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는 김모 씨도 인정하고 경찰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상처부위에 대한 사진 촬영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얘기는 김모 씨의 주장일 뿐이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전라일보 2003년 7월 26일자 4면에 게재하되, 제목활자크기는 14 포인트로, 부제목활자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순찰차서 내리던...)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크기는 동 기사의 본문크기와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전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3년 7월 26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판결 1

검찰의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언론기관의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3. 7. 11.자 판결(2001가합66203)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3년 7월 11일 보도당시 서울 지방검찰청 특수1부 소속 검사 11인이 조선 일보사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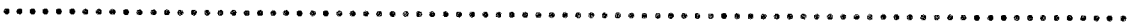
재판부는 “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감독원에 범죄 혐의자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형식의 계좌추적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점, 검찰의 수사과정 및 그 결과는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검찰의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언론기관의 문제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언론기관으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조선일보가 2001년 9월 10일자 제 1면 『검찰 무영장 계좌추적 확인』이라는 제목 하의 기사와 제3면 『법원 안 거치고 금감원서 대행』이라는 제목 하의 기사 등을 통해 “서울 지검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 편법적으로 금융감독원 장에게 수사협조의뢰를 하여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고 과거 불법이 없었던 검찰(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또 불법 계좌추적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및 인권 보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 사 건 : 2001가합66203 손해배상(기)
- 원 고 : 1. 이 ○ ○
- 2. 박 ○ ○
- 3. 홍 ○ ○



- 4. 지 ○ ○
- 5. 이 ○ ○
- 6. 김 ○ ○
- 7. 문 ○ ○
- 8. 이 ○ ○
- 9. 이 ○ ○
- 10. 유 ○ ○
- 11. 김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우 식

- Ⅲ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대표이사 방 상 훈
2. 이 ○ ○
3. 윤 ○ ○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조선일보사건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루, 김 태 수

변론종결 : 2003. 3. 21.
판결선고 : 2003. 7. 11.

주 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9.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1면 기사 게재 부분에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위 제2항 기재 기간 안에 위 정정보

도분을 게재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각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모두 검사들인데,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원고 박○○은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이하 서울지검 특수 1부라 한다)의 부장검사, 원고 홍○○은 서울지검 특수 1부의 부부장검사, 원고 이○○, 지○○, 이○○, 김○○, 문○○, 이○○은 각 서울지검 특수 1부의 검사이고, 원고 이○○, 유○○, 김○○은 2000. 7.경부터 2001. 6.경까지 서울지검 특수 1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다가, 2001. 6.경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된 검사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은 피고 조선일보의 정치부장이며, 피고 윤○○은 피고 조선일보의 정치부 소속 기자이다.

나. 이 사건 기사 보도 전의 상황

(1) 서울지검 특수 1부에서는 주가조작 등 금융거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의뢰라는 형식으로 범죄혐의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사하여 서울지검 특수 1부에 이를 통보하여 왔다.

(2) 서울지검 특수 1부 소속 검사인 원고 이○○은 2001. 2. 22. 금융감독원에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소외 GET 주식회사 주식의 주

가조작 혐의자 7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의뢰하였다.

(3) 한나라당 소속 이성현 의원은 2001. 9. 9. 서울지검 특수 1부 이모 검사가 G기업 주식 주가조작 혐의자 7명의 계좌추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의뢰 형식으로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공개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보도

(1) 피고 윤○○은 '검찰 무영장 계좌추적 확인'이라는 큰 제목과 그 아래 '금감원 업무협조방식 사용...본지, 공문 단독 입수, 주가조작혐의 7명 조사 의뢰 요청, 불법 없다던 정부 주장 거짓 드러나'라는 소제목으로 한나라당 소속 이성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영장 없이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고, 이는 검찰이 영장 없이 계좌추적을 하는 것으로서 불법'이라는 내용의 별지 2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1. 9. 10.자 조선일보 제1면에 별지 2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피고 윤○○은 또 '법원 안 거치고 금감원서 대행'이라는 큰 제목과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이라는 소제목으로 '검찰이 법관의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에 업무협조라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의뢰하고 금융감독원은 업무효율을 위하여 이에 응하여 계좌추적을 대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우회하는 것으로서 편법이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 3 기재 기사를 작성하였

고, 피고 조선일보는 2001. 9. 10.자 조선일보 제3면에 별지 3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계좌추적과 관련된 제반 규정

(1) 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압수, 수색에 관한 영장발부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제4호에 "재정경제원장관과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 거래 및 불고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횡령, 무자원입금기표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 출자자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금융감독원의 증권·선물조사업무 규정 제9조 제1항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범죄 혐의 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금융정보의 조사를 요청하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사하여 검찰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2, 3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들이라 한다)에 서울지검 특수 1부 소속 검사들이 금융실명 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 편법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사협조의뢰를 하여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고 과거 불법이었다던 검찰(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또 불법 계좌추적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및 인권보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작성, 게재함으로써, 마치 적법절차의 준수와 인권보호를 생명처럼 여겨야할 검찰

이 법률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또 금융감독원장을 통한 계좌추적이 없다고 하던 검찰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었고, 이로 인하여 서울지검에서 금융 및 경제사범을 전담하는 특수 1부 소속 검사들이었던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피고 조선일보는 이 사건 기사들을 게재한 당사자로서, 피고 윤○○은 이 사건 기사들을 취재, 작성한 자로서, 피고 이○○은 이 사건 기사들의 작성 및 게재에 관여한 자로서)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조선일보에게 정정보도문의 발송 및 그 불이행시에 대비한 간접강제의 이행도 함께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들 및 검찰이 금융감독원장에 업무협조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사중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들의 의견표명 내지는 비판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도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고, 아울러 사실 적시와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구별, 의견 또는 논평 표명의 경우에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의 판별에 있어서는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문 기사 가운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로 된 부분에 대하여 거기서 사용된 어휘만을 통상의 의미에 좇아 이해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해 부분 전후의 문맥과 기사가 게재될 당시에 일반의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지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부분이 간접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타인에 관한 특정의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과 함께 그 전제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사들에 관하여 보면, 별지 2

기재 기사는 ① '검찰 무영장 계좌추적 확인'이라는 큰 제목과 그 아래 '금감원 업무협조방식 사용...본지, 공문 단독 입수, 추가 조작혐의 7명 조사의뢰 요청, 불법 없다던 정부 주장 거짓 드러나'라는 소제목 부분, ② 한나라당 소속 이성헌 의원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1부 이모 검사가 G기업 주식주가조작 혐의자 7명의 계좌추적을 금감원에 협조 요청한 공문을 공개하였다는 부분, ③ 위와 같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법관의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 이런 의혹을 부인하던 검찰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부분,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검찰의 계좌추적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 ⑤ 이성헌 의원이 공개한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 부분, ⑥ 이성헌 의원이 위 공문이 발견됨에 따라 금감원을 이용한 불법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지 3 기재 기사는 ① '법원 안 거치고 금감원서 대행'이라는 큰 제목과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이라는 소제목 부분, ② 검찰의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조를 통한 계좌추적으로 인권보호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법 수호기관인 검찰이 관련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며, 검찰은 이런 계좌추적을 부인하여 왔다는 부분, ③ '금융실명법 있으나 마나'라는 소제목으로 위와 같은 검찰의 계좌추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다

는 부분, ④ '무너진 사생활·인권보호'라는 소제목으로 위와 같이 검찰이 영장 없이 금감원을 통하여 계좌추적을 한다면 사생활 및 인권보호는 완전히 무너지고 법은 장식물로 전락한다는 부분, ⑤ 금감원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외부기관이 요청한 계좌추적을 수행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를 인용한 부분, ⑥ '영장주의 법규 비웃듯 우회·편법, 실무자끼리 협조...결재도 잘 안 받아, 금감원서 뒤탈 대비 공문서 보관'이라는 중간 제목 부분, ⑦ '안드러난 사례 더 많을 듯'이라는 소제목으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금감원에 대한 계좌추적 건수에 대한 통계 및 도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 별지 2 기재 기사의 ① 제목 부분 중 '검찰 무영장 계좌추적 확인'이라는 큰 제목과 그 아래 '금감원 업무협조방식 사용...본지, 공문 단독 입수, 주가조작혐의 7명 조사외뢰 요청'이라는 소제목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불법 없었던 정부 주장 거짓 드러나'라는 소제목 부분은 검찰(정부)이 과거 금감원의 업무협조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 이성헌 의원이 검찰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계좌추적 협조 요청 공문을 공개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검찰의 과거 주장은 거짓이고, 검찰이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 불법이라는 의견표명 내지는 비판이며, ② 내용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③ 내용 부분 중 위와 같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법관의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이는 과거 이런 의혹을 부인하던 검찰의 태도와는 다르다는 부분은 위

에서 본 사실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이며, ④ 내용 부분은 계좌추적에 관한 법규를 해석하는 의견표명이고, ⑤, ⑥ 내용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며, 별지 3 기재 기사의 ① 제목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② 내용 부분 중 검찰은 과거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을 부인하여 왔다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며, 검찰의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으로 인권보호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 법 수호기관인 검찰이 관련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계좌추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라는 부분은 위에서 본 사실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 내지는 비판이고, ③, ④ 내용 부분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관의 영장주의 원칙은 검찰의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추적으로 유명무실하여졌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사생활 및 인권이 보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표명 내지는 비판이고, ⑤ 내용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며, ⑥ 중간 제목 부분 중 '실무자끼리 협조...결재도 잘 안 받아, 금감원서 뒤탈 대비 공문서 보관'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고, '영장주의 법규 비웃듯 우회·편법' 부분은 위에서 본 사실들을 전제로 한 의견표명 내지는 비판이며, ⑦ 내용 및 도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이다.

다. 그런데 우선 위에서 적시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에서 본 의견표명 부분은, 서울지검 특수 1부에서 주가조작 등 금융거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계좌추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수사협조의뢰라는 제목으로 범죄혐의자

의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담당 부서는 금융정보를 조사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1부에 이를 통보하여온 사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1부 소속 검사인 원고 이○○은 2001. 2. 22. 금융감독원장에게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소외 GET 주식회사 주식의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계좌추적 및 조사를 의뢰한 사실, 한나라당 소속 이성현 의원은 2001. 9. 9. 서울지방검찰청 특수 제1부 이모 검사가 G기업 주식 주가조작 혐의자 7명의 계좌추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수사협조의뢰 형식으로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공개한 사실을 등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융기관종사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 아닌, 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감독원에 범죄 혐의자의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형사소송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형식의 계좌추적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점, 검찰의 수사과정 및 그 결과는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에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검찰의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언론기관의 문제 제기는 널리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언론기관으로서의 정당한 비판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기사들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경진
판사 최석규
판사 권기만

〈별지1 정정보도문〉

조선일보는 2001. 9. 10.자 신문 1면에는 '검찰 무영장 계좌추적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제3면에는 '법원 안 거치고 금감원서 대행'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감독원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이른바 '수사협조의뢰'는 관계 법규에 의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정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일보는 법원의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담당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끝.

〈별지2기사 생략〉



판결 2

대표적인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수인 원고는
공인으로서 세미나에서 행한 그의 발언은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된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30.자 판결(2002가합54191)

사실개요

서울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2003년 5월 30일 성공회신학대학교 김동춘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크숍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양분되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시점에서 개최된 것이고, 피고의 보도내용은 문화관광부의 산하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분된 여론 중 일방의 의견만이 공격적으로 개진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정당성 또는 국가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볼 것이며, 원고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적 존재인 원고가 위크숍에서 행한 발언은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보도한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조선일보가 2001년 9월 26일자 1면에 『윤진기에 타격 가하는 깡패방식 언론운동 필요』라

는 제목하의 기사 외 여러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한국언론재단 주최 위크숍에서 언론운동의 방향으로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윤진기에 타격을 가하는 등 ‘깡패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라는 내용 등을 보도하자 원고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

사 건 : 2002가합54191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김 동 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택수, 차현환
피 고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1
대표이사 방상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김태수

변론종결 : 2003. 5. 16.

판결선고 : 2003. 5. 30.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 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

값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않은 '조선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우측 상단부분에 '2001. 9. 26.자 오보에 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특호 고딕체 활자로, 그 아래에 별지 1. 정정보도문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14급 명조체 활자로 각 게재하라.

3. 만일 피고가 위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일 금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공회신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고, 피고는 일간지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피고는 2001. 9. 26.자 조선일보 1면에서 "윤전기에 타격 가하는 깡패방식 언론운동 필요"라는 제목 아래 별지 2.기사 목록의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4면에서 "사주 소환 맞춰 총력투쟁 조선일보 불매운동 추진"이라는 제목아래 별지 2. 기사목록의 제2.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각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고, 2001. 9. 27.자 조선일보에서 "언론재단은 비판언론 저격수 양성소 - 깡패방식 언론운동 관련 한나라. 이사장 퇴진 요구"라는 제목 아래 별지 2. 기사목록의 제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언론재단은 정권 하수인인가"라는 제목 아래 별지 2. 기사목록의 제4기재와 같은 사실(이하 이 사건 제4기사라 한다)을, 8면에서 "깡패식 언론운동 야당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2. 기사목록의 제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5기사라 한다)를, 같은 면에 "언론재단 워크숍 발언록"이라는 제목 아래 별지 2. 기사목록의 제6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6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2. 명예훼손의 성립

가. 판단기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인이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 1기사 중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에서 언론운동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충격을 주는 것, 깡패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라고 한 부분, 이 사건 제2기사 중 "이 워크숍에서는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깡패방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도 등장했다"라고 한 부분, 이 사건 제4기사 중 "토론에 참가한 어떤 사람은 언론운동방향을 묻자 '충격을

주는 것, 깡패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한 부분 및 이 사건 제6기사 중 원고의 발언 부분은 각 사실의 적시이고, 이 사건 제3기사 중 “지난 6월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워크숍에서 조선·동아일보 등 비판언론에 대해 ‘깡패방식의 언론운동’ 등이 거론된 것과 관련” 부분과 “정부산하기관인 언론재단의 워크숍에서 ‘(신문사)윤전기 타격’ 운운한 것을 보면” 부분 및 제5기사 중 “국회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도 ‘대학교수와 언론종사자가 나서서 윤전기에 타격 깡패방식 과격해지면 어떤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라며 개탄했다”라고 한 부분과 “권철현 대변인은 ‘조폭들이 날뛰다고는 하지만 대학교수까지 나서서 ‘깡패방식’ ‘윤전기에 타격’ 운운한 것은 이 정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한 부분 역시 원고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회문화관광위 소속의원 및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발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들에서 “원고가 위 워크숍에서 언론운동의 방향으로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등 ‘깡패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보도하여, 이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폭력적인 방법에 의한 언론운동을 주장했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대학교수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들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들로서 진실이고 기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당시 “과거에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에 대하여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등 타격을 가하는 행동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해서 분노를 표출하여 언론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을 뿐 피고의 보도와 같이 “깡패방식의 언론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보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보도는 허위 사실 보도라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의 3, 갑 4호증, 을 제1호증, 증인 임○○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한국언론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2001. 6. 22.~23.까지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연대, 언론노조 등 언론시민운동단체 책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언론단체 간사연수’(이하 이 사건 워크숍)를 개최하였고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사전배포자료 없이 소외 강○○가 현장에서 직접 받아 적는 방식으로 속기록을 작성하였다.

(2) 당시 워크숍 현장에는 녹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 강○○는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요약하여 기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축약 및 생략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워크숍에 초청강사로 참석하여, 2001. 6. 22. '시민운동과 언론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뒤이어 소외 최○○, 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4) 소외 강○○가 작성한 이 날 세미나요약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3.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연을 하였고, 소외 임○○이 원고에게 '전체적인 언론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큰 흐름이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것 같아 아쉽다. 또 언론운동에는 동의하지만 연대합시다 만으로는 안일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임○○에게 별지 4.과 같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깡패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충격을 주는 것, 깡패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운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제도권내에서 언론운동을 하는 이들이 하는 조선일보 취재거부는 기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닌가 하는 자각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재단법인은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서, 2001 국정감사에서 소외 정병국 의원의 제출 요구에 따라 위 워크숍의 운용결과 및 예산집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언론시민단체 연수 결과보고 및 정산'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기사들을 작성하였다.

(6) 위 워크숍이 열릴 때인 2001. 6. 경은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론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격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 판단

(1) 공공성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 바,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워크숍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론이 양분되어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던 시점에서 개최된 것이고, 피고의 보도내용은 문화관광부의 산하단체인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분된 여론 중 일방의 의견만이 공격적으로 개진되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정당성 또는 국가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볼 것이며, 원고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수로서 공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적 존재인 원고가 위 워크숍에서 행한 발언은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보도한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진실성 또는 상당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날 워크숍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피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언론사의 기자 등이 주된 참석자였고, 워크숍의 목적은 언론개혁의 방향과 노선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모색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데 있었던 점, 원고는 위 워크숍에서 행한 강연에서 언론과 시민운동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지금까지 시민운동은 언론과의 연계에 의하여 크게 성장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배제된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언론운동을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소외 임○○으로

부터 언론운동의 방향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지 않은가 하는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언론운동을 해야함을 강조한 점, 위 워크숍의 발언내용에 관하여 당시 속기업무를 담당 한 소외 강○○의 기록 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 워크숍을 주관한 소외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위 강○○의 기록을 기초로 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까지 한 점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워크숍에서 별지 4의 위 강○○ 속기내용과 같이 '깡패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다. 충격을 주는 것, 깡패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화로 분노를 표출하고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원고가 깡패방식의 언론운동은 과거의 방식으로 이를 지양해야한다고 발언했다는 취지의 증인 임○○의 증언 부분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기사는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주 경 진
판사 민 성 철
판사 최 석 규

<별지1 정정보도문>

- 대제목 : 2001. 9. 26.자 오보에 관한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지는 2001. 9. 26. “윤전기에 타격가하는 깡패방식 언론운동 필요”라는 제목 하에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가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한 ‘시민사회단체워크숍’에서 “윤전기에 타격을 가하는 깡패방식의 언론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다. 이날 김동춘 교수가 강연한 내용은 언론문제란 사회구성원들의 알권리의 문제이며, 언론개혁이란 기업의 언론지배, 정보불평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발언기회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김동춘 교수는 “과거에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에 대해 윤전기에 모래를 뿌리는 등 타격을 가하는 행동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항의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전화를 해서 분노를 표출하여 언론에 충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지2 기사 생략>

<별지3 원고의 강연내용 속기부분 생략>

<별지4 원고의 답변내용 속기부분 생략>



일본 판결

'살인피의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하라

원고 : 甲野太郎(의학교수, 후생성 에이즈연구반 주임연구원)

피고 : 주식회사 新潮社. 동사 대표이사.

乙川二郎(변호사, 혈우병환자)

동경지법 1996(7)제13877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2001. 7. 30. 민사 제36부 판결. 일부인용. 항소(항소기각)

주 문

1. 피고 신조사는 원고에 대해 3백만엔 및 이에 대한 1996년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 이자를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신조사에 대한 그 밖의 청구 및 피고 乙川二郎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등분하여 그 9를 원고, 나머지를 피고 신조사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 할 수 있다.

사실개요

본 건은 원고가, 피고 신조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週刊新潮」 96년 3월 7일호, 3월 21일호, 4월 21일호의 "에이즈 약해(藥害)로 '녹십자'의 살인 피의자들", "원흉은 혈우병(血友病)의 권위", "대량살인의 피의자들", "혈우병의 대권위 '甲野一郎'이 에이즈 약해로 얻은

이익" 등의 제목 아래, 원고가 에이즈바이러스로 오염된 혈액제제를 계속 사용했다(3월 7일호), 형사재판에 회부될 당연한 범죄자이며, 부패한 학자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흉악범죄로 인식돼야만 한다(이상 3월 21일호), 환자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라는(4월 25일호) 등의 기사를 게재해 명예와 명예감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고 신조사 및 기사의 정보제공자인 乙川二郎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판결결과를 광고로 게재할 것을 청구한 사안이다.

쟁점에 대한 판단

명예 및 명예감정훼손에 해당하느냐(쟁점(1)), 성립조각사유가 있느냐(쟁점(2))의 두 가지 점에 대해 본 건 각각의 기사를 순차적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I. 본 건 기사1에 관하여

1.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쟁점(1))

(1) 본 건 기사1은 원고가 ①가열제Ⅷ인자제제(加熱第Ⅷ因子製劑)의 긴급수입에 관한 에이즈연구반의 결론을 유보하도록 억지로 왜곡했다 ②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기술이 뒤떨어져 있는 독실파를 도와주기 위해 치료기간을 지연시켰다 ③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적시하고 있다.

본 건 기사1을 본 일반독자로서는 원고가 이러한 적시사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건 기사1은, 혈우병의 치료, 연구의 전문가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기사이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명예훼손 성립의 조각사유 유무 (쟁점(2))

(1) 진실성, 상당성의 입증대상

원고에 대한 보도 내용의 각 사실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본 건 기사 게재 당시 피고 신조사가 갖고 있던 정보를 근거로 피고 신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진실성에 관하여

(가)부당한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 유보에 관해서는 전기 제3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트라베놀사가 81. 5. FDA에 가열제Ⅷ인자제제(헤모필T)의 승인을 신청했다.

②NHF는 83. 1. 14. 혈우병환자를 에이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발표했다.

③FDA는 83. 3. 21. 헤모필T의 제조, 판매를 승인했다.

④NHF는 83. 5. 11. 에이즈의 감염을 우려하여 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투여를 중지하는 일

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를 했다.

⑤원고는 83. 7. 18. 에이즈연구반 회의에서 소외 I가 에이즈대책으로 가열혈액제제의 긴급수입을 제안하자, 가열제Ⅷ인자제제에는 단백질의 변성에 의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⑥83. 7. 18. 당시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의문이 널리 퍼져 있었으나 가열에 의해 에이즈바이러스가 사멸되는지의 여부는 불명했다.

⑦83. 9. 14. 혈액제제문제소위원회에서는 가열제Ⅷ인자제제에 관해 임상실험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없었다. 84. 3. 29. 제출된 답신보고서에서는 일본의 혈우병환자에게 있어 비가열제Ⅷ인자제제 사용과 관련된 에이즈전파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결론으로 보충요법의 주체가 비가열제Ⅷ인자제제 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⑧미국에서는 85. 5. 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제조가 금지되었다.

⑨후생성은 초법규적 조치에 의한 긴급수입은 좋지 않다고 판단. 긴급수입을 하지 않았으며 85. 7.까지 승인되지 않았다.

(나) 이상의 인정사실 외에 원고가 오랫동안 혈우병환자의 치료에 종사한 전문가이며 당시 에이즈에 관한 한 일본 내 제1인자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에이즈반의 결론이 긴급수입의 유보로 바뀐 이유는 앞에서 인정된 것과 같은 당시의 의료실태 등이 큰 요인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원고가 가열제Ⅷ인자제제의 안전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을 반대한 것은, 혈우병치료의 전문의로서 그 자체가 각별히 불합리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부당한 목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에 반대한 것은 진실이나, 그 반대가 부당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결국 그 점에 관한 본 건 기사1의 기재부분은 진실성의 증명이 없다.

(라) 남은 문제는, ①일본 국내에서의 가열제Ⅷ인자제제에 대한 임상실험을 녹십자 때문에 지연시켰다 점, ②녹십자에서는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 ③녹십자는 원고가 임상실험을 늦춘데 대한 보답으로 원고의 사적인 재단에 거액의 금전을 기부했다는 점등이 진실인가라는 점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실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원고가 녹십자 때문에 임상실험을 늦췄다는 것이 진실인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다른 두 가지 사실은 임상실험 지연사실을 원인으로 한 결과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가 녹십자를 위해 실험을 늦췄다는 진실성의 증명이 없는 경우, 다른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피고 신조사의 진실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3) 상당성에 관하여

(가) 피고 신조사가 본 건 기사1의 게재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조사가 갖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검토한다.

전기 제3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신조사는 본 건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갖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에이즈연구반원 소외 D는 피고 신조사의 S기자의 취재에 응해, 에이즈연구반 제2회 회의에서 반원들의 대세가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쪽으로 기울었으나 원고가 갑자기 큰 소리로 반대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에 압도되어 더 이상 원고의 의견에 반대하는 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②83년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I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신조사가 이를 입수했다. I파일에는, 에이즈는 환자의 혈액, 정액을 매개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있으며 가열제Ⅷ인자제제의 사용을 추진했을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트라베놀, 카터의 진출에 의한 국내 메이커의 타격”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 “안전성 시험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면 국내 메이커의 타격을 줄이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각 사의 매상고에서 점하는 Ⅷ인자제제의 비율”, “안전성시험의 기간단축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있다.

③녹십자는 83년 당시 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제조량에 관해 50%를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

④피고 신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고와 각 제약회사간의 관계를 취재했다.

(a)녹십자가 원고의 본 건 재단법인 설립 때 1천만엔을 기금으로 냈으며 스톡홀름의 학회에 출장할 때 여비와 체류비로 약 1천2백만엔을 주었다는 정보를 녹십자 홍보부과장 P로부터 입수했다.

(b)녹십자는 당초 개발예정이던 액상(液狀)가열에 의한 가열제Ⅷ인자제제의 제품이 되지 않자, 트라베놀사에 대항하기 위해 “건조가열”로 전환했으나 다른 외국 제약사보다 개발이 뒤쳐져 있었다. 녹십자가 건조가열 제법을 개발한 것은 83년 9월, 안전성실험, 독성실험 등을 끝낸 것은 84년 1월이었다.

⑤결과적으로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며,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을 늦춤으로써 다수의 혈우병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변론취지).

⑥피고 신조사가 이상과 같은 취재결과와 원고의 언동을 종합, 원고가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에 반대한 것은 녹십자를 포함한 국내메이커를 위한 것이었으며 실험조정을 했을 것이라고 믿은 데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자신의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 제약회사로부터 함께 4천3백만엔의 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알게 된 피고 신조사가 금전의 수수와 에이즈연구반 내부에 있어서의 원고의 행위를 결부시켜 생각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가 있다.

⑦결과적으로 본 건에서는,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증이며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 유보로 다수의 혈우병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인식이 본 건 기사1 게재 당시 피고 신조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원고가 긴급수입에 반대한 것을 비판하고 본 건 기사1에 게재된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표현활동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신조사에게는 본 건 기사1의 게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 성립의 조각사유가 인정되며, 피고 신조사는 원고에 대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Ⅱ. 본 건 기사2에 관하여

1. 명예훼손,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여부 (피고 신조사에 관해)

(1) 본 건 기사2에는 소외 E의 발언부분에서 원고가 약해(藥害)에이즈의 흑막이며, 10년 정도의 실험에 처해질 당연한 범죄자라는 논평이 있다. 또 피고 乙川 발언부분1에서는 ①원고는 살인, 살인미수로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

시하고, ②살인, 살인미수가 무리라면 상해치사,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되어야 한다, ③살인죄가 된다면 대량살인에 해당되어 사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이 기재되어있다.

(2) 우선 소외 E의 발언을 인용한 논평에 대해 검토한다.

83년 3월 21일호를 보면 “에이즈약해 대범죄에 피해자 급부금이 15만엔이라니”, “이해와 타산으로 대량살인이 저질러졌다”는 제목으로 대량살인의 피의자라는 설명문이 곁들여진 원고의 얼굴사진이 게재되었다. 또한 데스크는 “부패한 관청과 기업, 학자가 꾸며 낸 전대미문의 흉악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기사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소외E 및 피고 乙川의 발언들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 건 기사2의 게재행위에 의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3) 피고 乙川의 발언부분1을 인용한 논평에 대해 검토한다.

발언부분1 중 ①살인, 살인미수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의 적시는 본 건 기사 게재 당시 이미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②살인, 살인미수가 무리라면 상해치사, 적어도 업무상과실치사로는 죄를 물을 수 있다. ③살인죄라면 대량살인에 해당되어 사형도 될 수 있다는 논평부분은, 앞의 (2)와 같이 전후의 문맥, 지면의 구성으로 보아 인용사실 그 자체를 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일반독자에게 주고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해야만 할 것이며 피고 신조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명예훼손 및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여부 (피고 乙川에 관해)

(1) 피고 乙川의 발언부분1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원고가 살인, 살인미수

로 고발되었다는 부분은 앞의 1에서와 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은 살인죄라면 대량살인에 해당되어 사형도 될 수 있다는 부분. 피고 乙川은 그러한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T는 반대의 증언을 한다.

그러나 T의 증언은 구체적인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피고 乙川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도 없어 책임이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3) 세 번째로, 원고에 대해 상해치사, 적어도 업무상과실치사로는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기사화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검토해 본다.

일반적으로 잡지기사의 편집권과 정보의 취사선택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으며 피취재자는 발언내용이 그대로 잡지에 게재되리라고는 예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피취재자가 언론사측에 대해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발언행위와 그 발언을 취재자료로 편집된 기사의 공표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사회적 평가와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정보제공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취재에 대한 발언이 취재 당시의 정보제공자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하게 부당했을 뿐 아니라, ②정보제공자가 그의 발언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도록 미리 출판사와 뜻을 맞추고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본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발언부분은 증거에 의하면, 기자로부터 전화로 원고가 기소되는지, 기소된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될 것인지 라는 관점에서 가정 하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점, 피고 乙川 자신도 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사용을 계속하고 있던 혈우병환자로서 에이즈 감염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 혈우병환자단체의 회장대행으로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겪어왔다는 점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그로서는 에이즈연구반의 반장이었던 원고가 83년 7월에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을 해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아니었으며, 긴급수입에 반대한 원고에 대해 적어도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피고 乙川이 처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현저하게 상당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 乙川은 당시 많은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신청이 쇄도했던 점으로 미루어 발언의 일부가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있었겠지만 발언내용이 그대로 인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리라고 추인(推認)된다.

그리고 본 건 전증거를 검토해 보아도 피고 乙川이 그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하도록 미리 피고 신조사와 뜻을 통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乙川은 본 건 기사2중 그의 발언부분1과 관련, 원고에 대해 명예 및 명예감정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명예 및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조각사유의 유무 (피고 신조사에 관해)

(1) 원고가 ①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사용중지를 1주일만에 뒤집은 살인피의자, ②10년의 실형에 처해질 당연한 범죄자, ③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사용중지를 하지 않은 행위가 대량살인에 해당되어 사형도 될 수 있다고 한 논평이 허용된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 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공정한 논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① 원고가 사용중지를 1주일만에 뒤집은 점, 사용중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앞의 (1)과 같은 논평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② 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혈우병환자가 에이즈에 걸려 사망자가 나온 것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바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살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중지로 사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판단한다.

③ 전기 제3법원이 인정한 사실 및 증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 미국방역센터는 82. 7. 16자 질병주보에서 에이즈바이러스가 혈액제제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82. 12. 10자에서는 비가열제Ⅷ인자제제로 치료를 받은 혈우병 A 환자가 에이즈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b. 원고는 82. 11. 23. 동우회 회합에서 미국, 유럽 헌혈자에는 간염 외에도 중대한 병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일본의 헌혈에서 얻은 혈액을 재료로 비가열제Ⅷ인자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c. 미국 트라베놀사는 비가열제Ⅷ인자제제의 원료혈장 제공자의 일부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는 이유로 동제제를 회수했다. 소외는 에이즈연구반 제1회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

d. 원고는 83. 6. 18자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에이즈는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혈액제제로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수입혈액을 60도로 10시간 가열하여 바이러스가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싶다. 원인이 불명하므로 아

무튼 경계태세만은 취해두겠다라고 발언했다.

e. 원고는 그가 치료하다가 사망한 혈우병 B 환자가 에이즈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④ 이상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바이러스에 의한 에이즈 감염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건에서 나타난 증거로 명백해진 당시의 원고의 언동과 본 건 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혈우병환자들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그렇다고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용중지방침을 뒤집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살인, 대량살인으로 논평하는 것은 공정한 논평의 영역을 일탈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⑤ 한편 원고가 혈우병치료의 1인자이고 혈우병환자가 비가열제Ⅷ인자제제를 계속 사용하던 끝에 사망한 현실을 직시한다면, 설령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중지의 결론을 뒤집은 일이, 당시의 의료수준으로 보아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다수의 사망자가 생긴 일을 가지고 살인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피고 신조사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에이즈바이러스 양성(陽性)이 곧바로 에이즈발병으로 이어진다고 인식되어있지 않았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원고를 살인과의자로 논평한 것은 공평성을 일탈했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Ⅲ. 본 건 기사3에 관하여

1. 명예훼손 및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여부(피고 신조사에 관해)

본 건 기사2와 같이 피고 乙川 발언부분2, 3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혈우병의 대권위 ‘甲野一郎’이 에이즈로 얻은 이익”이라는 큰 제목, 甲野 씨가 “혈우병환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얻어 낸 ‘이익’이란 어떤 것이었나 등의 리드부분, 업계 “등치기”등의 전후문맥, 구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피고 신조사가 간접적으로 당해 기재내용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의사인 원고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명예훼손 및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여부(피고 乙川에 관해)

피고 乙川은 그의 발언부분3에 대해 피고 신조사가 확인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추인될 수 있으며 발언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인용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피고 신조사와 의사를 통했다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3. 명예 및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조각사유의 유무(피고 신조사에 관해)

①진실성에 관한 판단 ▲본 건 기사3에서는 원고가 1983년 당시 녹십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본 건 재판법인 설립에 있어 원고는 다른 제약회사로부터도 똑같이 기금을 받았다.

당시는 의사나 대학에 대한 기부는 업계 전체의 관례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녹십자를 위해 특별히 이익을 도모할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편의를 봐주고 그 보답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본 건 기사3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②상당성에 관한 판단 ▲피고 신조사는 녹십자가 기금으로 1천만엔, 해외출장여비로 1천2백만엔을 원고에게 주었다는 사실 외에, 카터사, 화혈연(化血研), 일본장기(臟器), 트라베놀사등이 원고가 관계하고 있는 재단과 연구기관 등에 1천만엔 이상씩을 주었다는 정보를 얻고 있었다.

또한 후생성이 공표한 I파일에는 가열제Ⅷ인자제제 사용의 고려사항으로 “트라베놀, 카터사의 진출에 의한 국내메이커의 타격”, “안전성시험기간의 고려가 가능하면 국내메이커의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의 매상고에서 점하는 Ⅷ인자제제의 비율”, “안전성시험의 기간 단축 가능성”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상의 사실들에 대해서는 원고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피고 신조사가 생각했던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며 원고가 녹십자 창설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정보 등을 근거로 가열제Ⅷ인자제제의 긴급수입에 반대한 원고의 행위에 대해 녹십자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생각하여 본 건 기사3을 게재한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신조사에는 본 건 기사3에 게재된 사실에 대해 진실 또는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명예 및 명예감정훼손 책임은 없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IV. 본 건 기사4, 5, 6에 관하여

1.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여부 ▲①본 건 기사4는, 원고가 혈우병환자를 희생시키면서 녹십자를 구제했고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에이즈

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해서 원고를 살인피의자로 게재. ②본 건 기사5는, 원고가 녹십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에이즈바이러스로 오염된 혈액제제의 사용을 계속, 피해를 확대한 원흉이라고 지적. ③본 건 기사6은, 혈우병 환자를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은 원고의 행동은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해야 할 의사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간지에 얼굴사진과 함께 이상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 원고의 입장에 놓인 일반인도 인격 또는 인격적 평가를 침해당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 건 기사4, 5, 6의 내용은 제목, 표현방법을 종합해서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써 명예감정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조각사유의 성립여부 ▲원고를 살인피의자로 논평하고 있다. 살인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그래도 상관없다면 행위를 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는 혈우병환자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를 살인피의자라고 믿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으며 피고 신조사는 원고에 대해 명예감정훼손에 대한 책임을 저야만 한다.

V. 본 건 기사7에 관하여

1. 명예감정훼손의 성립여부 ▲①본 건 기사7은, 원고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의(敵意)를 들어내는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이 성격에 대한 부정적 지적

을 받은 일반인은 인격적 평가를 침해받았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해석되나 원고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격적 비판은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②피고 신조사는, 원고가 어떤 환자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의를 갖고 대하고 취재 카메라맨에게도 달려드는 양면성을 드러낸다는 등 여러 사례들을 증언을 통해 취재하고 이 취재결과를 근거로 논평을 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VI. 쟁점(3)에 관하여

1. 손해액에 관하여 ▲원고를 '살인피의자'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명예를 결정적으로 저하시키고 부정한 점, 60만부의 판매부수를 가진 전파력이 큰 주간지에 3회에 걸쳐 게재하여 많은 독자가 읽게 했으며 잡지판매로 상당한 이익을 올린 점, 쌍방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3백만엔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며 이 판단을 좌우할만한 증거는 없다.

2. 손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에 관하여

▲원고는 판결결과를 신문지상에 광고로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사가 게재된 후 5년이 지났고 그 사이 원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 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회적 평가도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에 더해 판결결과를 광고로 게재하도록 명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판례타임즈』, 1118호 pp182~209.

번역 : 한동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독일 판결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한 비판적 표현행위는 인신공격이 아닌 한 의견발표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연방헌법재판소 2002년 12월 17일자 결정 -
1 BvR 755/99, 1 BvR 756/99
해당조문: 기본법 제5조 1항

판결요지

1. 보도자료 또는 독자편지를 근거로 신문에 공표하는 것도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된다.
2. 표현행위의 전제사실에 대한 진실여부의 확인 및 개별적 사안에 대한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고려한 결과, 표현행위가 왜곡된 가치평가로서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헌법상의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이다.
3.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면, 예컨대 교사로서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안에서만 그 인격권에 대해 부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소원자인 신청인은 그가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정보에 관련된 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원심 제1심에서의 원

고 직업은 교사이다. 헌법소원자는 원고가 가르쳤던 4학년 어린이들의 교육책임 담당자이고 헌법소원자 2는 교육책임 이외에 학부모 대변인직을 맡고 있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몇 명의 학부모들은 원고의 교육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고 원고가 다른 학교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었다. 그 이유로서는 원고가 외국인에 대해 행한 적대적인 발언과 학생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학부모저녁모임까지 열렸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 후 1991년 10월 2일 Flensburg에 살고 있는 소수의 덴마크 국민을 위해 발행되는 덴마크신문 "Flensburg Avis"에 교사의 터키 학생에 대한 고질적인 적대적 수업방식 및 외국인 혐오를 비판하는 기사가 게재됐다. 그 기사에서는 학교, 헌법소원자 4 그리고 학교교장이 언급되었고, 원고의 이름은 빠져있었다. 한편 그 기사는 독일어로 번역되어 학교의 칠판에 부착되었다.

10월 4일 헌법소원자 및 그 밖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그 날 짜로 항의서한을 상세하게 작성해 해당 교무 위원회에 보냈다. 항의서한에서는 "H씨(=원

고)는 터키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전파했으며,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교육자로서 학급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위와 같은 비난의 원인이 된 원고의 여러 가지 행동방식 및 언행을 여러 면에 걸쳐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10월 5일자 <Flensburg Avis>에는 다시 한번 변호사가 상세하게 언급한 불만사항이 기사로 게재되었다. 또한 덴마크의 한 방송사 역시 같은 주제를 보도하였다. 이에 해당학교 교장은 10월 7일자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지문에서 원고가 맡았던 수업을 즉시 두 명의 다른 교사가 맡도록 조치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외국학생이 적은 다른 학교로 교사를 전근시키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월 10일 교무위원회는 변호사의 항의서한에 대해 원고가 여러 가지 교육적 상황에 적절치 못하였고 특정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체로 변호사의 비판들은 중요한 관점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그 후 1991년 10월 4일자 및 7일자 편지 그리고 10월 17일자 편지가 광고지 “Moin-Moin”의 편집진에게 전달되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헌법소원자 및 그 밖의 학부모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바이다.

“Moin-Moin”은 10월 17일자에 “학부모가 교사를 쫓아내다”라는 제목 하에 이러한 문제와 사건에 대해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내용은 대부분 변호사가 작성한 편지에 나타난 비난 및 학교 교장이 보낸 통지문을 신문사가 제공받아 그것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기사내용에서 학교의 이름은 공개되었지만 원고는 이름의

첫 시작 알파벳으로 표시되었다. 그 외에 “교무위원회도 관계되다”라는 특이한 제목 하에 1991년 10월 10일자 편지도 눈에 띄게 게재되었다. 그 후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우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한편 첫 번째 보도 후, 원고는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 때문에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여 1992년 7월 2일자 결정에 따라 휴직하였다.

원고는 취소청구, 위자료청구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잠정적인 휴직으로 발생된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소득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청구를 헌법소원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근무불능을 야기한 질병이 자신에게 제기된 중대하고 정당치 못한 비난, 특히 부정적인 신문보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자에게는, 원고가 터키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전파하고, 또한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의 신체를 만졌다는 표현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상급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표현행위가 인신공격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지방법원은 헌법소원자에게 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및 위자료지급을 명하였고, 상급지방법원은 헌법소원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시이유는 헌법소원자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1991년 10월 4일자 변호사 작성서한이 신문에 제공된 결과 그 편지 안에 포함된 명예훼손 표현이 일반에게 공표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자는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미 편지가 제공되기 전에 헌법소원자의 자녀가 있는 학급에서 수업할 의무를 면제받았고, 헌법소원자는 자신들의 행동방식이 정당한지를 특별히

검토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근무불능은 전문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신문이 발간됨으로써 야기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헌법소원자에게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소원자는 기본법 제5조 1항 1문 및 제14조 1항 1문을 근거로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헌법소원을 통해 항변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였다.

판결이유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의 범위가 갖고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미 설명했다(BVerfGE 85 S. 1 [14] = AfP 1992 S. 53; BVerfGE 90 S. 241 [247 ff.] = AfP 1994 S. 126; BVerfGE 93 S. 266 [294]; 94 S. 1 [8f.]; 97 S. 125 [148 ff.] = AfP 1998 S. 184; BVerfGE 97 S. 391 [398, 403 f.] = AfP 1998 S. 386; BVerfGE 99 S. 185 [196 f.] = AfP 1999 S. 57과 비교하시오). 이와 같은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명백히 이유 있는 것이다.

1. 상급지방법원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1991년 10월 4일자 변호사의 서한을 신문사에 제공한 행위는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의 의견발표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 기본권이 보호하는 것은 가치평가이지만, 사실의 언급도 여론 형성을 위해 제3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된다(BVerfGE 90 S. 241 [247 f.] = AfP 1994 S. 126과 비교하시오).

상급지방법원은 변호사 서한에 포함된 주된

내용을 가치평가로, 그리고 단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소원자가 사실을 전파하는 한, 사실도 기본권규범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근거로 독자들은 기술내용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서한에서 요약해 놓은 비난들에 대해 증거가 되는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상급지방법원은 편지의 주도적인 내용을 가치평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요약해 놓은 것을 가치평가로 보았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4면에 걸쳐서 원고에 관한 사실의 주장을 공표한 것이고 이는 거의 전부가 학부모들이 그의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었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표현된 것을 요약해 보면, 원고가 터키인을 외국인으로서 혐오한 것을 포함하여 인종차별적인 사고를 전파했으며, 그 외의 내용으로는 원고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들을 신체적으로 만졌다는 것이고, 이는 가치평가에 대한 것 외의 사실의 주장에 관한 것인데, 사실의 주장은 증명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것들의 내용은 특히 사실성을 갖고 있다. 주된 내용은 실제로 개별적인 증거들을 요약하여 다시 전달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제3자의 진술에 근거한다고 하여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특히 행위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었는데, 말하자면 교사가 말한 것이 인종차별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로서 교사는 학급을 적절히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가치평가는 사실의 핵심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으므로 평가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된다.

표현행위를 가치평가 또는 사실의 주장으로 분류하는 일은 의견발표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법률적인 평가를 할 때에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BVerfGE 61 S. 1 [7 f.] = AfP 1982 S. 215; BVerfGE 99 S. 185 [196 f.] = AfP 1999 S. 57, 과 비교하시오). 사실을 주장했기 때문에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표현행위에 대한 진실여부도 판가름된다(BVerfGE 97 S. 391 [403 f.] = AfP 1998 S. 386; BVerfGE 99 S. 185 [201] = AfP 1999 S. 57과 비교하시오).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BVerfGE 54 S. 208 [219]과 비교하시오).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법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은 특별한 요건, 이른바 조사할 때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준수했는가이다. 가치평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의의부와는 관계없이 인신 공격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만 표현행위가 제한된다(BVerfGE 85 S. 1 [16 f.] = AfP 1992 S. 53과 비교하시오).

이와 같은 원칙은 변호사서한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문기사를 평가할 때도 적용되고, 상급지방법원은 그러한 결과를 헌법소원자의 경우에도 고려하였다. 신문에 공표되는 것은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된다. 이 규범은 표현된 것을 전파하고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의 것을 보호한다(BVerfGE 7 S. 198 [210]; 97 S. 391 [398] = AfP 1998 S. 386과 비교하시오). 표현된 것을 변형하고 따라서 전파수단을 자유로이 결정할 표현행위자의 권리도 보호된다(BVerfGE 54 S. 129 [138 f.]; 93 S. 266 [289]; NJW 1991 S. 2339 f.).

2. 상급지방법원은 민법 제823조 1항을 적용할 때에 의견발표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의

미와 범위를 오해하였다. 상급지방법원은 표현행위를 부당하게도 인신공격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로 인하여 부당한 헌법상의 기준에 맞추어졌으며, 특히 행해져야 하는 행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의 기본권은 기본법 제5조 2항의 법률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 한계에 민법 제823조 1항이 귀속된다(BVerfGE 82 S. 272 [280] = AfP 1990 S. 192; BVerfGE 97 S. 125 [148] = AfP 1998 S. 184). 일반법률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해야 할 일이고, 그 해석과 적용시에 법원은 의견발표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고려하여야만 한다(BVerfGE 7 S. 198 [205 ff.]; 101 S. 361 [388] = AfP 2000 S. 76과 비교하시오). 기본권이 충돌할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그 충돌을 해결해야만 하는데, 기본권충돌은 민사법원이 기본권의 효력을 표현행위의 의미를 밝힐 때, 표현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또는 법익들과 조정을 할 때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평가했을 경우 그리고 판결이 기본권의 효력을 오해한 것에 기초하여 내려진 경우에 존재한다(BVerfGE 97 S. 391 [401] = AfP 1998 S. 386과 비교하시오). 상급지방법원은 자신의 판결을 절대적으로 변호사서한에서의 주된 역할을 하는 문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항의서한에서 근거를 대기 위해 기술된 실제의 사건들은 대부분 신문에 공표할 때에 제공된 것들인데, 상급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주된 문장들이 교사에 대한 실제적인 비난들을 요약하여 만들어진 것인 한, 그것을 인신공격의 범위에 넣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표현행위를 평가하여 인신공격으로 본 것은 부적절하다. 민사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는 의견발표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혐오의 의미를 좁게 이해한다. 설득력 있고, 과도하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비판은 그것 자체로는 그 비판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전혀 충분치 않다. 표현행위에 있어서 논란이 객관적이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전면에서 드러날 경우에만 인신공격이 존재함을 인정한다(BGHZ 45 S. 296 [306 ff.]; BVerfGE 93 S. 266 [294, 303]).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변호사서한에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행위를 원고에게 중단하라는 객관적인 요구임을 편지의 내용에 의하여 그리고 그 내용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의미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사실들이 밀바탕에 깔려 있다. 학교내부에서의 노력이 성과가 없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그들의 요구를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헌법소원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교장은 헌법소원자가 일부분은 옳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들어주었는데, 학급으로부터 교사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한 사실이 그것이다. 변호사가 작성한 편지는 그 문체를 살펴 볼 때 객관적인 토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순전히 인격의 무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급지방법원은 신문사에 제공됨으로써 기사화 된 것에 대해 그것만으로 혐오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표현행위에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그 진실을 밝히고 개별적 사안의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행해진 결과 표현행위가 왜곡된 가치평가로서 인신공격으로 판단되었다면 이는 헌법상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것이다(BVerfGE 82 S. 272 [281] = AfP 1990 S. 192; BVerfGE 93 S. 266 [294]; NJW 2000 S.

1859).

표현행위를 가치평가로 절대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소원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데, 진실의 존재는 그 표현행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일지라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내적인, 사적인 또는 개인간의 신뢰의 면에 관계되지 않고 사회적인 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허용된다(BVerfGE 80 S. 367 [373 f.]; 99 S. 185 [196 f.] = AfP 1999 S. 57과 비교하십시오, NJW 1997 S. 2669; NJW 2000 S. 1859 [1860]; S. 2191; S. 2413 [2415]). 다툼이 있는 사건은 해당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 직업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면, 말하자면 직업환경과 연결하여 (원고의) 인격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원고의 사회적 면에 대해 말할 때에는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인격권에 대해 부정적인 제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그 경우란 사회적 한계를 확정시킬 때이다(BVerfGE 35, S. 202 [234 f.]; 97, S. 391 [406] = AfP 1998 S. 386; NJW 2000 S. 2413 [2414]). 이는 예견할 수 있는 중대한 건강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형량 시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변호사서한에서 제기된 비난들은 1991년 10월 17일에는 원고의 업무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에서도 알려진 것들이었다. 헌법소원자의 자녀들이 속한 학급에서 원고를 멀어지게 하였지만 다른 학교로 교사를 전근시키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신문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았는데 어느 학교인지 표시된 것은

형량 시에 고려되었다.

형량할 때에 헌법소원자가 그 상황에서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었다. 하지만 헌법소원자가 신문사의 정보 제공자로서 신문사 스스로는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행해지지 않았다.

일반에게는 사건들이 이미 알려졌으나 사건의 세세한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해당 신문기사는 그 지역 일반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학교에서의 어떤 교사의 교육행위, 즉 외국인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행태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이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BVerfGE 66 S. 116 [150]; 68 S. 226 [232]). 이럴 때에는 과도한 형태로 표현된 비판도 다른 영역에서와는 달리 인용된다(BVerfGE 60

S. 234 [241]; BVerfGE, AfP 1991 S. 735 =NJW 1991 S. 3023 [3025]과 비교하시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형량과 확인은 부당하게 행해진 결과로서 인신공격으로 판단된 것이다. 항소심판결은 이러한 하자에 기초한 것이다. 표현행위를 헌법상 정당하게 판단하고 의견발표의 자유와 원고의 인격권간의 형량을 적절히 한 경우라면 소기각의 가능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항소심판결과 같은 토대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기본법 제5조 1항 1문이 인정한 헌법소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기본권침해는 헌법재판소법 제95조 1항 1문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출처: AfP 34. Jahrgang Heft 1 - 2003, SS. 41 -43

번역: 손원선(한국디지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영국사례 1

**총리는 빈번하게 풍자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인
공인에 해당하므로, 공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신문사의 권리는 막을 수 없어**

불만신청

대사관 직원인 Mishcon de Reya 씨는 2003년 1월 27일자 Independent지에 실린 시사만평이 편파적이고 경멸적인 내용으로서 보도실천강령 제13조(차별)를 위반했다며 이스라엘과 Ariel Sharon을 대신하여 PCC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은 기각되었다

문제의 만평은 이스라엘 총선거 하루 전, 이스라엘의 Gaza시 공격 이틀 후에 게재되었다. 그 만평에는 이스라엘 총리 Ariel Sharon이 “왜 그래요? 당신은 전에 아기에게 키스하는 정치가를 결코 본적이 없나요?”라고 말하면서 유아를 먹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배

경에는 “샤론...샤론에게 한표를...한표를”이라고 방송하는 헬기가 있고, 탱크와 불타는 파편들은 일반적인 전장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만평가는 만평의 밑바닥에 그가 암시하려고 한 Francisco Goya의 그림 “Saturn devouring one of his children(자신의 아이를 탐식하는 농업의 신)”을 연상할 수 있도록 “고야 이후”라는 말을 포함시켰다.

신청인은 그 만평이 반유대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천강령 제1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기를 먹는 Sharon 씨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blood libel”을 암시하고 있고, 그밖에 신학적인 이유로 그들이 피해

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다른 부연설명도 있었다. 결국 그 만평은 분명히 “blood libel”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Sharon 씨의 인종과 종교에 편파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는 그 만화가 반유대주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부정했다. 그는 어떤 유대교 상징이나 이스라엘 기장도 없고, “blood libel”의 어떤 암시도 없다고 항변했다. 다만 그 만평이 Gaza시 공격은 3일 후의 이스라엘 총선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한 수많은 기사와 편지를 연속해서 게재했으며 그 중에는 그 만화가 반유대주의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의 다른 측면에 있는 저명한 유대인의 글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림 속의 아기는 이스라엘 총리가 무자비하게 탐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언론의 자유는 너무도 중요하므로 인종주의로 고발당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의견 기사를 게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만화가 유대인의 상징이나 이스라엘 기장을 포함하고 있느냐 여부는 논점과 무관하고, Sharon 씨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써 'blood libel' 과 유대인인 그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기가 이스라엘 선거단을 의미한다는 신문사의 반박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시도라고 말했다.

평결

PCC는 그 만평이 반유대주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백여 건의 불만신청이 접수된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리고 PCC가 만평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불만신청을 통해 신문사가 실천강령 제13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PCC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실천강령 제13조는 무엇보다도 개인을, 특히 개개인의 인종과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경멸적인 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입안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만평이 유대교 신앙을 전반적으로 비난한다고 느꼈을 지도 모르지만, 실천강령은 대중전체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에 관한 불만신청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만평에 있어서 Sharon 씨는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정부의 수장이자, 신문사가 명백히 의도적으로 풍자한 정책 정당 지도자로서 만평의 주제로 선택되었다. 총리와 대통령은 그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만평에 자주 등장한다.

위원회는 만평을 사용해 국가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풍자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신문의 재량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지 결정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신청이 실천강령 제13조에 위배되는지 심의하였고, 만평이 Sharon 씨의 인종과 종교를 편파적이거나 경멸적으로 묘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불만신청을 기각한다.

실제로 이 불만신청은 만평이 'blood libel'을 암시한다는 주장과 관계가 있고, 많은 독자

들도 이렇게 추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신문사가 게재한 다른 보도를 통해 그렇지 않은 독자와 논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런 견해와 그 밖의 다른 이유를 근거로 판단해 보건대, 만평이 'blood libel'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당사자와 불만신청을 제기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자체로 실천강령 위반이 발생했다고 결론짓기에는 불충분하다.

위원회는 만평을 게재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대한 신문사의 답변을 검토했고, 그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만평가는 Gaza시 공격이 일종의 소름끼치는 선거운동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이들을 먹어치우는 Saturn의 광기를 그린 Goya의 그림을 떠오르게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해명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유사한 사건이나 정치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Sharon 씨에 대한 풍자나 만평이 그의 인종이나 종교에 특히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Goya의 이미지나 자신의 아이들을 먹는 Saturn의

신화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반유대주의적인 것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이것은 예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희생시켰다고 비난받은 다른 정치가들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다.

신청인들은 만평에 유대인의 상징이나 이스라엘의 기장이 없는 것은 논점과 무관하다고 말했고, 이미 유대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을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적대적 이미지와 연결시켜 묘사하는 것은 실천강령 제13조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이미 만화 속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Sharon의 종교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만평가의 답변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는 신문사

가 빈번하게 풍자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인 공인에 해당하므로, 실천강령 내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인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신문사의 권리를 막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사사만평이 'blood libel'을 직접 가리킨다고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다. 신문사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정당했을지도 모를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신문사의 해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게재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문사에게 게재한 내용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해석을 기대하고 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방식의 보도실천강령 해석방법은 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

Sansbury가 The Advertiser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수용했다.

문제의 기사(제목: Constable who shot knifeman cleared)는 총격 사건과 피살자의 부검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 사건 직전에 있었던 사살된 남자와 가족 간의 신랄한 다툼과 그 와중에 피살자가 10대인 딸아이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욕설을 그대로 게재했다. 이 사실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미성년자인 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곧 위원회에 제출된 의학적 소견을 포함한 일체의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듯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심각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다.

Sansburys 가족은 사건과 연루된 가족의 사생활과 감정이 침해되었다며, 그리고 검서관련 보도가 검시결과 발견된 것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신문평의회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The Advertiser지는 Sansburys 가족에게 보낸 답장에서 그들의 비탄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언론으로서 중요한 공익 문제에 대해 보도하는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기사내용은 검시

호주사례 1

경찰총격에 의한 피살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살자 가족 내부의 다툼에 관해 언급한 것은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

호주신문평의회는 경찰에 의해 사살된 시체의 부검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Valerie, Edward 그리고 Kerri

관의 보고서에서 구체화되고
검시 법원에서 제시한 증거를
정확하게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가족 싸움에 대한 언급
은 죽기 전 몇 시간 동안 그
남자가 품었을 마음의 동요상
태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신문평의회는 이런 점에서
Advertiser의 보도가 기술적으
로는 정확하다는 점을 인정하
지만 그 남자의 딸에 대한 욕
설을 게재한 것은 검시결과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위해 필수
적인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
로 그 기사는 공정하지도 않고
균형을 잃은 기사라고 판단했
다. 신문평의회는 그 근거로서

검시관은 마약복용, 폭력, 투옥,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사체의
내력을 제출하였고 신문사로서
는 그 남자 딸의 신원을 확인
시키지 않고서도 그의 정신상
태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내력
을 인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기사내용에서는 이런 사
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신문평의회는 대체로
검시를 포함한 공개재판의 방
청 내용을 보도할 신문사의 권
리는 지지하지만 이번 사건에
서는 소수의 사생활과 감정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
는다고 결론지었다. □

호주사례 2

“아시안 갱단”이란 단어의 사용은 기사작성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불만신청은 이유 없어

호주신문평의회는 Perth지역
유홍 나이트클럽에서 두 갱단
사이의 싸움 중 발생한 21세 청
년의 사망사건에 관한 West
Australian지의 연재기사를 상대
로 제기된 불만신청을 기각했다.

신문사는 수 차례에 걸쳐 경
쟁조직인 M'Bros와 Spider
Boys는 “아시안 갱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일당

(Unity Party) 대표인 신청인은
갱의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중국인이거나 베트남인으로서
아시안계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만 아시안이란 단어의 사용은
“인종 비방과 인종 차별을 초
래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사는 당의 대표인 Eddie
Hwang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
감하지만, 그런 단어들의 사용을

절제하기 위해 공공의 중요한 문
제와 관련 있는 사실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는 동
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Hwang 씨는 “bikie
gangs”을 “유럽인 갱단”으로
지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지 신문사에게 물었고, 신문사
는 bikie gangs의 일반적인 연
상은 오토바이(motorbikes)이지
유럽계가 아니며 “아시안 갱
(Asian gangs)”의 일반적인 연
상은 아시안계라고 반박했다.

신문평의회는 인종이나 태생
국을 언급함으로써 쉽게 확인
될 수 있는 집단의 범죄를 다
루는 보도기사의 어려움을 인
정했다. 또한 주 정부와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M'Bros와 Spider
Boys 갱들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찰총장인
Michelle Roberts와 경찰국장인
Barry Matthews는 둘 다 극단
적인 폭력을 만끽하던 청년들
을 묘사하기 위해 “아시안 갱”
이란 단어를 사용한 점도 지적
했다.

결국 신문평의회는 주 정부
와 경찰 두 곳에서 “아시안”이
란 꼬리표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베트남인이든
지 중국인이든지, 인용기사에서
“아시안”이란 단어의 사용은 적
절했다고 판단했다. □

언론과 법

언론소송과 판결

"인터넷 상 비난글 순수논평판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일 인터넷에 지방의회 의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면장 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게시물 내용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떤 표현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게시물 내용과 어휘,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사회적 배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고,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제작년 9월 강원도의 한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의회 의장이 안하무인으로 마을 대표들을 유치원생 다루는 식으로 연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화일보, 2003. 7. 3.

'대전법조비리' 보도기자 4명 슈죄

대전지법 형사4단독 손철우 판사는 20일 99년 1월 이른바 '대전법조 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대전MBC 기자 고모(43)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MBC 기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모 변호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도 근거로 삼은 자료

의 입수경위와 보도 결정경위, 충분한 취재 여부, 자료의 기재 내용, 보도사 사용된 어휘들의 일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3. 6. 20.

박지원 씨, 언론사상대 4억 손배소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월드컵 회장사업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모 일간지와 3명의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 전 실장은 소장에서 "피고는 지난 6월 14일자 신문 '박지원씨에 2억 쫓

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이 2000년 5월 원고가 월드컵 회장사업권자였던 C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관공협회중앙회장으로 임명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본인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씨도 검찰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측은 "기사 작성 이전에 검찰 및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충분히 취재를 했으며, 사실에 바탕을 해 기사를 쓴 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박 전 실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03. 6. 25.

이해찬 '동아'에 10억 손배소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19일 굿모닝시티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 발행인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같은 당의 신계륜 의원도 이날 "사흘 전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오마이뉴스, 2003. 7. 21.

'홍위병 논란 시민단체'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언론탄압을 위한 홍위병으로 묘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은 정치적 상황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공개토론에 부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며 “당시 언론사주 사법처리와 비판언론 죽이기에 시민단체가 홍위병식으로 동원됐다는 한나라당의 기자회견이 진실이라는 증명은 없지만 조선일보가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조선

일보 반대시민연대는 제작년 7월 정부의 언론 세무조사와 관련, 한나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을 ‘검찰, 친여매체, 외관단체는 한통속’, ‘홍위병식으로 비판언론 죽이기에 동원’ 등으로 표현하고 이를 조선일보가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한겨레, 2003. 7. 21.

노 대통령, 김문수의원·4개 선촌 상대 30억 손해소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근 청와대가 향후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제기된 첫 민사소송 사례여서 정부의 언

론정책과 관련돼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 동안 근거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 씨 소유 용인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 씨 소유 거제국립공원 내 토지 특혜 의

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원, 언론사는 각 5억원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 진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2003. 8. 13.

MBC상대 명예훼손 소송·동아일보, 고법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1일 동아일보사가 “자사의 주식투자에 대해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화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싼 이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표현으로 동아일보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역할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언론사의 특수성에 비춰 언론사 주식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언론기관으로서 주어진 역할 범위 안에서의 정당한 보도”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2001년 <문화방

송>이 <9시 뉴스데스크>에서 ‘싼 이자 재테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가 지난 1996년 언론사라는 힘을 이용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겨레, 2003. 8. 22.

청와대, <동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민정수석 명의 로 <동아>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문재인 수석은 6월 18일자 <동아> 기사(‘청와대 입 단속’)와 관련 “민정수석실이 ‘언론대책반’을 가동중인 것으로 보도했으나, 언론대책반을 구성하거나 가동한 적이 없다”며 “‘언론대책반’

이란 군사정권 시절 권력이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보도지침을 시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보도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목적 아래 청와대 직원들의 입막음에 나서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미 지난 18일자

에서 ‘한 출입기자의 빗나간 저널리즘’이란 제목으로 취재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상적인 국정비판을 넘어서 회사와 개인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외눈박이 취재 및 보도행위’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아쉽다”고 문제의 기사를 꼬집은 바 있다.

연합뉴스, 2003. 7. 21.

인터넷기법, 기자 구속영장 신청에 항의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8일 경찰이 한 총련의 미군 훈련장 기습시위를 취재한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비난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경찰이 국민의 알 권리에 입각해 취재활동을 벌인 ‘민중의 소리’ 기자 이용남(현장 사진작가)

씨를 강제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도를 넘어선 언론탄압행위”라면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연행과 구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기자협회는 “포천경찰서는 대학생 시위를 현장에서 취재한 방송사와 통신사 기자에 대해서도 미군이 제

공한 사진을 토대로 판독작업을 벌여 소환수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의 취재기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태도는 언론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으므로 취재기자 소환 계획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2003. 8. 9.

서해교전 보도 왜곡 시비 MBC, 월간조선에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 부장판사)는 22일 문화방송(MBC)이 “지난해 서해교전 보도와 관련해 왜곡된 기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MBC의 서해교전 보도 태도에 대해 쓴 기사는 ‘원고가 서해교전에 대한 잘못

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월간조선의 보도는 언론 매체 상호간의 정당한 ‘비평’의 범위 내에 속한 만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이 국민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보도 태도의 정당성, 객관성에 대한 자유롭고 폭넓은 비평이 허용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10월 “월간조선 8월호가 ‘MBC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호도함으로써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편파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2003. 8. 23

“조폭신 것처럼 과장 보도” 여순환 씨 명예훼손소 패소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7월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여순환(49) 씨가 “조직원폭력배가 아님에도 마치 조폭인 것처럼 허위, 과장보도를 해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13억원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에서 2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은 여씨의 구속영장 혐의내용을 적시하거나 조폭이라는 인상을 받게 하는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나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로비

의혹 등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여씨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므로 기사의 주요 부분은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3. 9. 4.

‘조선 색깔시비’ 비판 대법원 승소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주·반민족’ 행태를 비판했다가 거액의 소송을 당한 언론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정지환 〈시민의신문〉 취재부장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정 부장은 월간 〈발〉 기자로 있던 1998년 12월, 〈월간 조선〉(11월호)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장이던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한 논문을 트집잡아 ‘마녀사냥식 사상검증’을 벌이자 〈발〉에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하는 특집을 실었다. 문제가 된 기사는 ‘병리학적 심리분석-조선일보 왜 극우반공 집착하나’와

‘집중해부/조선일보의 친일행각’ 등 두 쪽지.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이 해방 이후 반공폭력plex로 이어졌다”는 것이 기사의 뼈대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월간 조선의 기자 세 명은 정 부장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겨레 2003. 8. 27

“송신팜 특혜의혹 제기 명예훼손” 이기명 씨, 조중동 상대 6억 소송

노무현 대통령의 후임회장을 지낸 이기명 씨는 8일 “‘팜 거래에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4억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 대해 각각 2억원 등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도, 로비를 벌이거나 특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마치 비리에 연루되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5월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씨가 자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팜 2만여 평을 팔 때 청와대를 엮고 실버타운 건축 인허가 조건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2003. 9. 9.

민연련, 조선닷컴에 손해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연련)은 자신의 글이 조선닷컴(www.chosun.com)에 무단으로 올려져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지법에 냈다.

민연련은 소장에서 “민연련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시민연대)는 조선닷컴에 글을 기고한 적에 없는데도 피고들은 조선닷컴에 5월 16일 시민연대 결의문, 성명서, 선언 참가자 명단 등을, 5월 24일 민연련 성명서 〈신군부의 독재

에 부역한 언론인은 사죄하라〉 등을 마치 원고가 기고한 것처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민연련은 “이로 인해 민연련과 시민연대가 2000년 9월 조선일보 기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놓고서 마치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닷컴은 지난 5월 ‘조선일보 못 참겠다’ 코너에 민연련·시민연대의 자료를 올렸다가 6월초부터는 ‘퍼온글’이라

는 말머리를 붙였다. 이후 시민연대가 발간하는 ‘주간 안티조선’ 등의 자료는 ‘게시판 링크’로 연결, 독자들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준석 조선닷컴 인터넷뉴스부장은 “민연련과 시민연대측이 공식적으로 항의해 온 적은 없었고 이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는 관련 기사를 보고서 ‘퍼온글’ 형식으로 바꾸었다”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3. 9. 3.

현대차노조, 조선일보 상대 ‘손해소’ 제기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현구)는 5일 올해 임단협 과정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지법에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임금 인상액과 연봉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노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7건의 기사에 대해 건당 3천만원씩 모두 2억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또 이 회사 문도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혐의로 3-4개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에 대해 추가 제소 및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3. 9. 5.

<2003년도 정기세미나> 개최



위원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속초 컨벤션호텔에서 <2003년도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가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양삼승 변호사가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이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언론중재제도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언론소송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유

용한 제도이므로 조속히 정간법을 개정, 피해구제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개정안 중 손해배상청구까지 중재대상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의견도 있었다. 신문매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 정간법이나 개정안에 영상매체의 방송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등 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그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매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7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내부 회계감사'가 있었다.

신동식(서울제4중재위원), 최중현(경기중재위원) 감사는 사무처가 제시한 제반 증빙서

류와 예산집행자료 등을 근거로 회계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행예산 모두 적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물품 및 사무실 예치보증금, 퇴직적립금 등 자산도 적정하게 관리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중재위원 위촉

8월말 임기 만료된 중재위원 후임으로 9월 1일, 총 47명의 위원들이 새로 위촉됐다. 임기는 2006년 8월 31일까지 3년 간이다.

(재)신임 중재위원 명단

- 서울제1중재부 : 조용구 이종욱 오욱환
- 서울제2중재부 : 송영천 변희석 주길치
- 서울제3중재부 : 윤재운 노항기 양삼승
- 서울제4중재부 : 신명중 신찬균 박봉간 전세봉
- 서울제5중재부 : 주동환
- 부산중재부 : 신우철 주대경 강은교 하선규
- 대구중재부 : 최우식* 박충선 김중수
- 광주중재부 : 김용출 허광욱 곽주홍
- 대전중재부 : 한상곤 전병무 장호순
- 경기중재부 : 조해현* 김건영 조정근
- 강원중재부 : 윤 경 김중식 이관열 정연구
- 충북중재부 : 한양식 이도영 박종규
- 전북중재부 : 신환철 권혁남 김영복
- 경남중재부 : 박성철 임경숙 김영주 김창룡
이재철
- 제주중재부 : 서송묵 현순도

* 9. 15.자 법원인사로 대구중재부의 최우식 중재부장이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경기중재부의 조해현 중재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부장 판사로 각각 전보됨. 이로 인해 공석이 된 두 중재부장은 법원행정처의 추천을 받아 10월 중 새로 위촉될 예정.

전북지방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9월 19일 전주 코아 리베라호텔 대회의실에서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전북 지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 지역의 각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남 위원(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정창남 위원(전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권혁남 위원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만약 언론이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타율적 통제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전제하면서 “지나치게 언론의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결

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 등의 외적, 타율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인터넷 매체가



폭증하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 견해,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신문이 오히려 이념 갈등이나 사회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 합의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부제소 합의를 강요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성순, 『온라인 저널리즘』, 도리, 2003.
- 이재진,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나눔, 2003.
- 한국언론재단, 『세계의 언론법제(2003 상권)』, 한국언론재단, 2003.
- 강경근, “선거법 개정과 인터넷 언론”, 한국언론재단,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8. 21.
- 강경근,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 강형철,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개최 토론회, 2003. 9. 5.
- 권혁남, “명예훼손과 언론의 대응”, 언론중재위원회 개최 토론회, 2003. 9. 19.
- 김재영, “참사보도에 매몰된 개인의 인격권”,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 김재협, “공적 기관의 반론권-프랑스, ‘매체접근 허용권’ 등 특별한 반론권 인정”, 『신문과 방송』, 2003년 7월호.
- 김재협, “비판하더라도 모멸적 표현 삼가야”, 『신문과 방송』, 2003년 8월호.
- 김재협, “언론 의혹제기, 충분히 조사해야 진실 아니어도 상당성 인정”, 『신문과 방송』, 2003년 9월호.
- 김창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과 방송, 통신 규제 제도 개편 방향”.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 규제 제도〉, 한국방송학회, KBS 개최 세미나, 2003. 9. 16.
- 김창룡, “개인의 법익과 언론자유의 대립”, 〈대전 법조사건과 한국 언론〉,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개최 토론회, 2003. 7. 10.
- 김택수, “알권리 제약, 공직자 명예만 과보호할 우려”, 『신문과 방송』, 2003년 9월호.
- 남궁협,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 방안”,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개최 토론회, 2003. 9. 5.
- 문재원, “대전 법조비리 보도 기자 구속-법조계 명예 지키려 언론 기능에 제동”, 『신문과 방송』, 2003년 8월호.
- 박미영, “언론사 손해소송 현황”, 『신문과 방송』, 2003년 9월호.
- 박형상, “대전 법조비리보도사건 판결소개”, 『방송문화』, 2003년 7월호.
- 박형상, “방송 드라마 관련 법적 분쟁(2)”, 『방송문화』, 2003년 6월호.
- 박형상, “방영금지가처분 논란을 지켜보며”, 『방송문화』, 2003년 8월호.
- 선봉희, “러시아 언론법제의 현주소”,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 송종길, “전쟁취재보도의 한계와 문제점”, 『관훈저널』, 2003년 여름호.
- 안상운, “대통령의 언론소송 피해구제인가 언론탐압인가”, 언론인권센터 개최 토론회, 2003. 8. 22.
- 안상운, “몰래카메라는 범죄행위, 압수는 법원 권한”, 『신문과 방송』, 2003년 9월호.
- 안상운, “언론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현황”, 〈언론평해 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개최 토론회, 2003. 9. 4.
- 양삼승,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정간법 개정과 언론포해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언론중재위원회 개최 세미나, 2003. 8. 28.~2003. 8. 30.

- 오양호, "취재원 강제 수사는 최후수단이어야", 『신문과방송』, 2003년 9월호.
- 유재천, "정부와 언론의 관계", 〈정부와 언론〉, 관훈클럽, 언론학회 개최 세미나, 2003. 4. 11.~12.
- 윤성옥, "방송금지가처분 소송", 『방송문화』, 2003년 6월호.
- 윤재운,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기자통신』, 2003년 7월호.
- 윤재운, "사건의 두 얼굴", 『기자통신』, 2003년 8월호.
- 이승희, "해외 인터넷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소송절차",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 이승선, "명예훼손으로 인한 광고소송에서 '의견'의 보호법리에 관한 연구: 의견광고 판례를 중심으로", 『광고연구』, 2003년 가을호.
- 이승선, "방송금지가처분제도와 언론자유 : 현실과 쟁점",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개최 토론회, 2003. 6. 24.
- 이용성, "언론중재위 기능 대폭 강화해야 한다", 〈언론 피해 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개최 토론회, 2003. 9. 4.
- 이용성, "정기 간행물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전국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향신문사 주최 토론회, 2003. 6. 26.
- 이재진, "외국의 오보와 손해소송", 『신문과방송』, 2003년 9월호.
-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언론중재』, 2003년 여름호.
- 장호순,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정간법 개정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 방향〉, 언론중재위원회 개최 세미나, 2003. 8. 28.~2003. 8. 30.
- 전관석, "언론의 공익적 기능인가? 개인의 명예인가?", 『기자통신』, 2003년 7월호.
- 정길화,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극복을 위한 시론",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개최 토론회, 2003. 6. 24.
- 정용준, "방송·통신 융합 시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 규제 제도〉, 한국방송학회, KBS 개최 세미나, 2003. 9. 16.
- 정윤식,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 규제 제도〉, 한국방송학회, KBS 개최 세미나, 2003. 9. 16.
- 조은기, "2003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바람직한 방송방향 정책",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개최 토론회, 2003. 7. 14.
- 주동환, "공인도 피해구제 신청은 정당", 『신문과방송』, 2003년 9월호.
- 주동환, "정간법 개정운동의 방향과 전략", 〈언론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개최 토론회, 2003. 8. 5.
- 최경진, "정치인비리 오보의 원인", 『신문과방송』, 2003년 9월호.
- 최영묵, "참여정부의 방송법 개정 방향", 〈언론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개최 토론회, 2003. 8. 5.
- 한영학, "일본 재판원제도 입법화와 언론 규제", 2003년 9월호.

On-Line 중계상당실

Q 000 9시 뉴스 프로그램은 소설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00대학교 00병원에 전 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000입니다.

9월 6일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던 미숙아 사망에 대한 보도는 전부 허위입니다. 마지 한편의 소설 같습니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000'이라는 미숙아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주치의를 맡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부모는 치료를 중지하고 데려가겠다고 매일 찾아와서 소리치르고 울고 한답니다. 어머니의 눈물만큼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퇴원시켜 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보호자와 합의 하에 자의퇴원 시키는 것은 형사처벌(살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9월 6일 9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이 아이를 병원에서 강제 퇴원시켜 다음날 사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퇴원한 적이 없으며 9월 9일 현재 아직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병마와 끈질기게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지 의사들은 돈이 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환자를 쫓아낸다고 일반화시켜 매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도 많이 당해와서 그다지 마음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마저 버린 그 아이를 이렇게 맘 고생해가며 밤을 새우고 치료하고있는 의사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 부모에게 버림받고 방송에서 살해당한 그 아이가 병원에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R 말씀하신 보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보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저

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도의 내용으로 보아 '병원 측이 아이를 퇴원시킨 것'이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더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는 해당 병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 담당 의사가 직접 거론되는 보도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에 관해서는 담당 의사가 중재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래도 되지...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기사가 찾아와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나서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면에 저의 실명을 게재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문들의 경우, 특히 좋지 않은 내용의 기사에서는 실명을 거론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사는 동의 없이 취재원의 실명을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R 해당 보도내용에 있어 귀하의 발언 내용이 왜곡되었다거나 기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실명이 게재

되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있었다면 이는 정정정보나 반론보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 위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뉴스에서 유명인 등의 사건보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화면상 모자이크 처리되고, 힘없는 사람은 얼굴에 웃옷을 뒤집어쓰는 등의 방법으로 보도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불량식품이라고 판명된 제품이나 업체에 대해 실명으로 정확히 보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회사 등으로 이니셜로 처리하여 보도하는 것이 옳은 보도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취재원의 익명 처리여부 및 초상의 모자이크 처리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실명이나 초상을 방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도 사실이지만 공익의 목적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 방송사의 불공정한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


안녕하십니까? 모 방송사의 아침 방송내용이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여 우리 가족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되었습니다.

방송내용에서는 아파트 중간소음 문제를 다루었는데 아래층 아주머니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방송하고 워킹 인터뷰라고 내보낸 내용은 우리 아파트도 아니며, 인터뷰 요청조차 없이 마치 우리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내용도 조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졸지에 아래층 사람을 못살게 만드는 파렴치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다나 반론보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방송에서 내보냈던 인터뷰는 바로 워킹 주인의 인터뷰가 아니었다는 사실 등을 보도를 통해 밝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아닌 다른 방법은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OOO 뉴스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상담**

저는 울산 진해해수욕장에서 OO펜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오전에 OOO방송국 기자 및 촬영팀이 진해해수욕장을 촬영하러 왔다가 집이 깨끗하고 좋다고 하시면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여 취재를 허락하였습니다.

취재 중 담당 기자는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펜션이란 이름이 무엇이며, 방은 몇 개가 있으며, 가격이 얼마인지, 또한 청소년들이 숙박하는 경우도 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솔직하게 펜션 영업은 사업자 등록은 없지만, 청소년은 숙박시키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방은 14개이며, 가격은 저희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로 성수기, 비수기 정찰제로 받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기자 및 촬영팀은 집이 좋다며 명함까지 받아가면서 “뉴스에서는 가족들끼리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숙박업이라고 홍보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8일 저녁 7시 뉴스OOO OO편에 보도된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집을 배경으로 기업화된 민박으로서 청소년 혼숙을 시킨다, 방은 20개인데 예약이 8월 말까지 완료가 되었다, 또한 성수기 때 바가지를 씌운다는 등, 아주 형편없는 사치 숙박업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9시 O 뉴스에 재차 방송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 집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중앙방송을 통해 전국에 보도가 되었다면 서울중재부에, 지역에만 방송되었다면 해당지역 중재부에 중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재신청과는 별개로 법원에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실명보도에 관하여

며칠 전 '검찰직원 모 계장 구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경우인데 그런데 저의 경우는 실명과 나이, 소속까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언론사 임의대로 실명을 보도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실명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문이 실명을 보도하여 본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해야하는지?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단체에서 담당자 업무와 관련하여 왜곡·과장보도가 있을 경우에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신청은 업무담당자 명의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소속기관 단체장 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시장, 군수 등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도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었다면 중재신청은 해당 기관의 명

의로 해야 합니다.

업무 담당자는 해당 개인이 직접 언급되었고, 그 부분에 한정하여 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자의 이름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동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보도라면 해당 동사무소의 명의로 중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시장, 군수 등 상급기관 역시 적합한 당사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저는 한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얼마 전 교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지방 일간지에 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학교장 행정실장 폭행' 제하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기사내용에는 폭행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제목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해당 언론사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정보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신문사가 기사내용과 달리 상기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사내용 중 실제 학교명(A 초등학교로 표기)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그 지역에 A 초등학교는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본인임이 우회적으로 명시되어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욕설과 모욕을 당하여 퇴직을 얼마 앞 둔 저와 가족들이 심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사의 제목에서 본인이 교직원을 폭행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론보도 청구를 우선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초상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며칠 전 모 일간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주간지의 특집 기사와 동사 인터넷신문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기사는 취업난을 다룬 내용이었으며, 게재된 사진은 제가 약 1년 반전에 모 회사에 입사시험을 보던 때의 사진으로, 제 얼굴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진의 입수경로를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사진을 공개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사진촬영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2. 사진속의 회사에서 면접을 본 것은 사실이나, 기사의 내용과 민감성을 고려해 볼 때 독자들이 해당 사진을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은 명백한 신문사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사진으로 인해, 저는 현재 소속된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3. 기사내용 중에는 사진이 기사내용과 무관하다는 언급 또는 사진의 촬영시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진의 공개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하더라도 고의적이었다고 판단되며, 문제의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책임자와 통화한 결과, 오래 전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는 신문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관련 제재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반드시 어떠한 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초상이 신문상에 게재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 보여집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또한 보도에 사용된 귀하의 초상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히는 정정보도가 게재되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동의 없이 나간 기사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저희 가정에 사건이 있었는데 한 지역신문이 아직 범인의 윤곽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상착의나 차량 같은 세세한 정보를 보도해 피해가 생겼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전혀 동의도 없었고(질문도 없었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등 신문상의 내용을 듣고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신문에 게재해 범인 검거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시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범인이 그 보도내용을 보았다면 도피할 우려까지 생겼습니다. 저희에게는 전혀 상의 없이 그것도 해결되지도 않은 내용을 신문에 게재해서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우선 배포된 신문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과 빠른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저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희 위원회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재업무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간의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업무

•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보도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보도문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을 할 때는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신청서양식은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지방사무소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FAX나 인터넷 홈페이지(www.pac.or.kr)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중재신청의 종류

• 반론보도청구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자신의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

허위보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매체에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

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형사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자신의 결백을 추후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신청기간

•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중재부의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중재심리

• 중재심리는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

는 중재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 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중재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중재기일에 해당 중재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변호사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의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재기일에 중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및 합의간주된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간주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권에 의한 중재결정 및 중재불성립결정

•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중재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중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또한 중재부는 중재에 적합치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합니다.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중재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취하 및 취하간주

• 중재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재기일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아도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신청은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5개의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 75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중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5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법, 선거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

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하고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언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되,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한다)와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⑦ 중재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어야 한다.

③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중재사건의 대상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

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⑧ 중재위원회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중재위원회 위원의 수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8조 제6항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제7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청구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 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상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법을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

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반론보도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2차 중재기일출석요구서

와 함께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새로운 중재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기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결정문 등)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 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정 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하는 때에는 중재결정문 또는 중재불성립결정문을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

고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중재부는 법 제18조 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등본을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⑥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⑦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

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 송 법

- 제70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반론보도청구권은 당해 방송이 행하여진 날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 ② 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사업자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 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⑤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방송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심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 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5항 및 제6항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

나. 제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다.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찾아가기: <http://www.pac.or.kr/>

언론중재위원회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정정보도)
상담: (02)725-0050
<http://www.pac.or.kr>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비용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드립니다.
- 언론중재 신청기간은 보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청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중재신청이 접수되면 14일(직권 중재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중재를 해 드립니다.
-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중재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언론중재위원회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국 15개 중재부)



언론중재위원회

상담: (02)725-0050, (02)732-6031

<http://www.pac.or.kr>